

연구자료
ODA연구 2012-04-058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함께사는 대한민국, KOICA와 함께합니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

9 788964 691021
ISBN 978-89-6469-102-1



2012

연구보고서 04-058

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한국국제협력단

2012 연구보고서 04-058

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저자

조 한 슬

(E-mail : hscho@koica.go.kr)

▶ 주요 경력

-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상임연구원(현)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 주요 연구실적

-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 및 시사점, 「KOICA 정책포커스」 8호, 2011, 한국국제협력단

본 연구보고서는 ‘KOICA 연구 중기전략 : 2011~2015’에 따라 기획된 글로벌 공공재 분야 범위연구(Scope Study)로, 국제사회에 누적된 개발협력 접근법 및 경험, 그와 연관된 개발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제공하고, 2015년까지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연구전략과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차

약어	vi
국문요약	1
Executive Summary	4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글로벌 공공재 분야 개발협력 접근법 및 논의 필요성 개괄	 13
1.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의 등장 배경	13
1)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필요성 대두	13
2) 가속화된 세계화로 인한 문제 등장	14
2. 글로벌 공공재 분야 개발협력 접근법 및 논의 필요성	17
3.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22
 제3장. 글로벌 공공재 개관	 24
1. 글로벌 공공재 정의	24
1) 공공재의 정의	24
2)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	25
2. 글로벌 공공재 공급의 문제점	27
1) 소비자 및 공급자 불일치	28
2) 무임승차문제	28
3) 국가별 기대이익과 비용의 상이성	29
3. 글로벌 공공재 개념 정립 및 분류의 필요성	29

제4장. 글로벌 공공재의 분류	31
1. 글로벌 공공재의 유형별 분류	31
1) 지식생산 및 전파	32
2) 인권	32
3) 전염병 퇴치	32
4)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33
5)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34
6)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35
7) 통신	36
2.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방식에 따른 분류	38
1) 단일국가의 노력으로 공급 및 문제해결이 가능한 글로벌 공공재 ...	38
2) 모든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	39
3. 글로벌 공공재 분야 ODA 현황 분석	42
 제5장. OECD DAC 회원국 글로벌 공공재 정책 및 현황 분석	 49
1. 국가별 글로벌 공공재 정책 및 지원 현황 분석	54
1) 스웨덴	54
2) 스위스	62
3) 영국	69
4) 프랑스	79
5) 노르웨이	85
6) 네덜란드	95
7) 미국	100
8) 일본	106
9) 핀란드	113
2. 평가 및 시사점	122
 제6장. 한국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 및 현황	 125
1.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분석	125
2. 글로벌 공공재 정책 분석	127

제7장. 효과적인 글로벌 공공재 정책 도입 및 이행을 위한 과제	130
1. 국제사회의 과제	130
1) 글로벌 공공재 전담 국제체제 마련	130
2) 자원마련 메커니즘 구축	131
3) 다자원조와 글로벌 펀드를 통한 지원 확대	132
4) 정책일관성 확보	133
5) 통계 개선	133
2. 한국의 과제	134
1) 정책기관	134
2) 실행기관: KOICA를 중심으로	135
제8장. 결론	137
참고문헌	139
별첨 1. 글로벌 공공재 관련 CRS 코드	151
별첨 2. KOICA 2010년도 글로벌 공공재 사업	153

표 목차

[표 1] 기후변화 취약 국가 순위	20
[표 2] 선행연구 글로벌 공공재 선택 분야	31
[표 3] 글로벌 공공재 관련 CRS코드	36
[표 4] 공급 방식별 글로벌 공공재 예시	42
[표 5] DAC 회원국의 글로벌 공공재 정의별 ODA지원 비율	45
[표 6] DAC 회원국의 글로벌 공공재분야 ODA 지원 현황(1995~2009년) ...	46
[표 7]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48
[표 8] OECD DAC 회원국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 분석	50
[표 9] 글로벌 공공재 분석 대상 문서	50
[표 10] 스웨덴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55
[표 11] 스웨덴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56
[표 12] 스웨덴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57
[표 13] 스위스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63
[표 14] 스위스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64
[표 15] 스위스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65
[표 16] DFID 글로벌 공공재 지원 비율	70
[표 17] 영국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71
[표 18] 영국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72
[표 19] 영국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73
[표 20] 프랑스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80
[표 21] 프랑스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81
[표 22] 프랑스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82
[표 23] 노르웨이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86
[표 24] 노르웨이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87
[표 25] 노르웨이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88
[표 26] 네덜란드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96
[표 27] 네덜란드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97
[표 28] 네덜란드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98
[표 29] 미국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101

[표 30] 미국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102
[표 31] 미국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103
[표 32] 일본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107
[표 33] 일본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108
[표 34] 일본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109
[표 35] 핀란드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114
[표 36] 핀란드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115
[표 37] 핀란드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116
[표 38] OECD DAC 회원국 글로벌 공공재 지원 비율	121
[표 39] 국가별 주요 글로벌 공공재 정책	123
[표 40] 한국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2006~2009)	125
[표 41] 한국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2006~2009)	126
[표 42] 한국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126
[표 43] 2010년 KOICA 시행 글로벌 공공재 주요 사업	135

그림 목차

[그림 1] 결핵 환자 발생률(2009년)	18
[그림 2]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계지도	19
[그림 3] 기후변화 취약성 분포도	20
[그림 4]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	27
[그림 5] 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1995~2009년)	47

약어

약어	정식명칭	한글명칭
ADA	Austrian Development Agency	오스트리아 개발기구
AECID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스페인 국제개발협력기구
AfT	Aid for Trade	무역을 위한 원조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호주국제개발기관
BMZ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독일연방 경제개발협력부
BTC	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벨기에 기술협력청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공동농업정책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CIDA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캐나다 국제개발기구
CPCJF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Fund	범죄예방형사사법 펀드
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원조목적코드
DFID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국제개발청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G20	Group of 20	G20
GAVI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sation	세계백신면역연합
GCCI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	글로벌 기후변화 대책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EEREF	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글로벌 에너지 효율성 및 신재생 에너지 펀드
GFATM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
GHI	Global Health Initiative	글로벌 보건 대책

Gp-RHCS	Global Programme for Reproductive Health Commodity Security	생식보건 관련 글로벌 프로그램
HDI	Health and Development Initiative	보건과 개발 이니셔티브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
JOGMEC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MDG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NEXI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일본수출투자보험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DAC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개발원조위원회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감축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스위스 개발협력청
SECO	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스위스 경제사무국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DCP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유엔마약통제프로그램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유엔아동기금
UNODC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청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국문요약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의 심화로 시간과 공간이 축약되어 전 세계적으로 물적·인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교류확대 등 순기능과 함께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전염병 확산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한편, 상호의존의 심화로 경제위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글로벌 도전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렇듯 세계화는 전지구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고려와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개발협력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반대측에서는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으로 인한 혜택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게도 동일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지원에도 부족한 개발협력 재원을 사용하여 글로벌 공공재를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협력 재원을 사용하여 그리고 개발협력의 시각을 담아 글로벌 공공재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는, 첫째, 글로벌 공공재의 비공급으로 인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더 큰 영향과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며, 둘째, 개발도상국은 스스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셋째,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지원이 빈곤감소에 훨씬 효과적이며, 넷째,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을 사용한 개발협력 사업 수행 시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는 전지구적 접근을 통한 공동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ODA 성과보존 차원에서도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범위연구로서 현재까지 누적된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국제적 개발담론, 개발협력 접근법 및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동 연구보고서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 개발협력 접근법 및 논의 필요성과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 개괄하였으며, OECD DAC 회원국과 한국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 현황 및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 수행은 심층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추가적으로 KOICA 내부 보고회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었다.

분석 결과, OECD DAC 22개 회원국 중 9개국이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전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9개국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에서 크게 4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글로벌 공공재 전담 국제기구 창설의 필요성 강조, 다자원조와 글로벌 펀드를 통한 지원 확대, 정책일관성 확보, 재원마련 메커니즘 구축이 그것이다. 한편, 9개 국가의 글로벌 공공재 세부 섹터별 정책 및 실행현황 분석 결과, 각 세부분야의 지원 비중의 차이가 국가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OECD DAC 22개 회원국 중 글로벌 공공재 정책을 가진 국가는 9개국뿐이나, 글로벌 공공재에 포함되는 5개의 세부 섹터의 일부를 중점지원분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는 19개국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한국은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정책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2항에만 글로벌 공공재 관련 사항이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이나 전략은 아직 부재한 한계가 있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과 한국국제협력단의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에도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글로벌 공공재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서 글로벌 공공재 정책의 수립 및 도입을 위한 조치가 정책기관과 실행기관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다자원조는 글로벌 공공재 관련 지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다자원조 전략 수립 시 글로벌 공공재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동 연구보고서는 효과적인 글로벌 공공재 정책 도입 및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과제와 향후 심화연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국제사회의 과제

- 글로벌 거버넌스 또는 글로벌 공공재 전담 국제체제 마련
- 다자원조와 글로벌 펀드를 통한 지원 확대
- 글로벌 공공재 정책과 다른 개발정책, 개발 이외의 다른 정책간의 정책일관성 확보
- 재원마련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이행 노력
- 글로벌 공공재 관련 통계 구축 및 개선

한국의 과제: 정책기관

-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발협력 정책 도입
- 다자원조 지원 정책과 정책일관성 등의 관련 정책 수립
-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통계 개선, 재정마련,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준비

한국의 과제: 실행기관

-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발협력 실행 정책을 도입
- 글로벌 공공재 관련 지표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사업간 정책일관성 확보
- 글로벌 공공재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분야 동시 지원 고려

향후 심화연구 과제

- 글로벌 공공재 5대 세부 섹터별 연구
 - 공정무역체제 구축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상대적으로 파급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분야 관련 연구
 - 부산총회에서 다뤄진 지식공유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지식생산 및 전파 분야 연구
 -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전염병 퇴치에서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을 활용한 개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연구
-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물 부족, 분쟁 취약국 등 글로벌 도전과제로서 해결이 필요한 분야 연구

Executive Summary

Whil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form the basis of globalization and have enabled every country to maintain ever-closer inter-relationships by promoting the increased exchange of goods and migration of people, it has also led to many unwanted, negative side effects. The world is now faced with a greater risk of worldwide pandemic outbreak, as well as an increased risk of global financial and economic crises resulting from the intensified level of international mutual-dependency, as well as the risk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spreading. Globalization, in other words, entails numerous tasks that call for a concerted global response,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new considerations of how to handle and distribute global public goods.

While globalization has certainly increased the need for new discourses on global public goods,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should be handled as par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still remains a subject of some debate. Those who oppose the incorporating of global public goods in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int out that it is unfair to use the limited financial resources originally ear-marked to assist the development of poor countries in order to support the provision of global public goods whose benefits will accrue not only to developing, but also developed, countries.

There are many arguments, however, in support of incorporating global public goods into the scop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irst, the shortage of these goods disproportionately disadvantages the developing countries more than it does developed countries. Second, developing countries lack the requisite financial and other resources needed to secure global public goods. Third, support for global public goods is much more effective in alleviating

poverty across the world. Fourth, global public goods themselves provide a useful framework in how to handl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hich ultimately promotes the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Since the issue of global public goods can be most effectively solved by a pan-global approach, it is necessary and natural to consider and support the development and allocation of these goods in order to maintain the achievement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hat has been provided thus far.

In light of these arguments, this scope study, which is primarily focused on the global public goods,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introduce international development discourses,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relevant cases, while in addition also proposing the aims and tasks for future research on the subject.

This research report therefore outlines the approaches and discourses on global public goods and summarizes the definitions and types of these goods. It also reviews the contributions of Korea and other member-states of the OECD DAC to the development and policies of global public goods.

The study is largely based upon an in-depth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lso involves the internal briefings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s well as interviews with related actors.

The analysis shows that nine of the 22 DAC member-states have recognized the need for pan-global, concerted efforts for various issues arising in the course of globalization and, furthermore, have sought to counter them with related policies. There are four common patterns characterizing these nine member-states' policies on global public goods. First, they all emphasize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dicated exclusively to the handling the issues of global public goods. Second, they all recommend increasing the

levels of multilateral aid and support through global funds. Third, they all emphasize the need for policy coherence in development related to global public goods. Lastly, they all propose new mechanisms for securing the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An additional analysis of the different sectors and practices, which these nine countries' policies target, revealed that different countries have focused on different sectors or areas of global public goods to a differing extent. Furthermore, while only nine of the 22 DAC member-states have officially adopted policies on global public goods, 19 DAC countries were, in fact, providing support for more than one sector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overlap with areas of global public goods provision.

With the exception of a mention in Article 3, Section 2, of the (2010) Basic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outh Korea does not actually have an official policy or specific strategy on global public goods. Provisions for global public goods are equally lacking from the Policy on Advanc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Basic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Sector (2011~2015), designed by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well as from the KOICA's Advancement Plan (2010~2015). Accordingly, all policymaking bodies and executive agencies must themselves consider establishing and adopting specific policies on global public good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distribution of these goods. In addition, as multilateral assistance occupies a particularly important place in the provision of global public goods, South Korea needs to consider and make room for global public goods when designing its strategy for multilateral assista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report proposes the following for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effective policies on global public goods by both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s well as some of the tasks for future research on the subject:

Task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 Developing an international system for handling global governance or global public goods;
- Expanding support for global public goods through multilateral assistance and global funds;
- Ensuring policy coherence in policies on global public goods, development, and other economic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 Making efforts to construct a mechanism for securing th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 Collecting and improving the statistics and data on global public goods.

Tasks of South Korea (policymaking bodies):

- Adopting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for global public goods;
- Develop relevant policies, such as policy coherence and multilateral assistance, to ensure the effective supply and management of global public goods;
- Making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discourses concerning the statistics on, financial resources for, and global governance of global public goods.

Tasks of South Korea (executive agencies):

- Adopting and implementing the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for global public goods;
- Developing and implementing guidelines concerning global public goods to ensure consistency among different development projects;
- Considering simultaneous support for other areas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complement global public goods.

Tasks for future research:

- Detailed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five sectors of global public goods:
 - Research on subjects related to international financial stability and a

free and open trade system, such as fair trade, since it could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on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 Research on knowledge generation and dissemination, from the knowledge-sharing perspective discussed at the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held in Busan;
- Research on how to develop policies on crime control and peace building, communicable disease eradication, global commons and sustaina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global public goods.
- Research on global issues, including energy security, food security, water shortage, dispute-prone regions and territories, and so forth.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서 세계화의 확대 및 심화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지구적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가령 국제무역분야에서 국가간 교역상 문제, 환경 분야에서 기후변화, 황사현상, 보건·위생·질병 분야에서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하 HIV)로 인한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이하 AIDS) 등의 문제, 국제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금융 위기의 전파, 국방·안보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들은 각국별 정책 이니셔티브만으로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하여 국제적인 협조와 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간 규칙, 협정, 협약이나, 이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구와 질서, 개별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게 될 경우 글로벌 공공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공공재가 적정 규모로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야말로 상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국제무역, 국제금융을 비롯한 상기의 제 분야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와 정도의 글로벌 공공재들이 국제경제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공공재의 경우 소비의 비경합과 비배제성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무임승차 국가의 존재와 함께 일반적으로 과소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공공재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기존의 또는 새로운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고 활용하면서 얻거나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비용은 각국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경우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러한 글로벌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주요 강대국들이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운영하여 왔다. 자유무역체제의 창설과 유지, 기축통화의 공급, 최종적인 대부자로서의 역할, 개발도상국·최빈국에 대한 원조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면서 해당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무형, 직·간접의 이익은 단지 해당 주요 강대국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사회의 여타 모든 국가에게도 이익을 발생시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선진국 주도로 운영되어 온 기존의 글로벌 공공재 공급구조는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거나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적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통상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시장의 구축은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통상시스템의 경우 선진국은 무역자유화가 개발도상국에 이득이라는 압박을 주면서도, 자신들의 취약부문인 농업, 섬유, 서비스 인력시장은 보호하는 선진국들의 이중적 태도가 비교우위에 의한 글로벌 경제의 재편을 휘방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발전과 참여를 저해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금융시장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규제가 충분하지 않음이 증명되었고, 단기성 투자자금이 전체 거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은 개발도상국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일관성의 측면을 고려한 글로벌 공공재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

환경과 공중보건 등과 관련된 글로벌 공공재의 경우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개발도상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개발협력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의 경우 HIV·AIDS 치료제와 같은 의약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거나, 기후변화에 대비할 여력이 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다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이 아닌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선정된 분야의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섹터의 개발정책과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반영한 글로벌 공공재의 논의가 필요하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성과보존 차원에서도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염병 퇴치와 관련된 원조는 모든 공여국과 협력국 전체의 전지구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글로벌 공공재이다. 그런데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공여국의 개별적이고 국지적인 접근을 통한 원조가 제공되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해당 원조 활동이 제공된 특정 지역에 단기적인 효과만을 가져왔을 뿐, 지구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급속도로 확산되는 전염병의 특성상 개별적, 국지적 접근을 통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지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공재의 공급으로 인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인프라 시설이나 역량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¹⁾,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공공재가 아닌 다른 분야의 ODA 지원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듯 세계화의 확대 및 심화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글로벌 공공재가 부상하게 되었고, 글로벌 공공재의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개발협력 측면의 접근과 범지구적 차원의 참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현재까지 누적된 글로벌 공공재 관련 국제사회의 담론, 개발협력 접근법 및 경험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글로벌 공공재 범위연구가 기획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2011~2015년 ‘KOICA 연구 중기전략’에 따라 기획된 글로벌 공공재 분야 범위연구(Scope Study)로, 2015년까지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연구전략과 연구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및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KOICA)의 정책 수립에 글로벌 공공재 측면의 시각 및 접근법을 적용하여,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ODA의 효과성 제고 및 성과 보존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이러한 재화 및 서비스는 글로벌 공공재의 보완재로 볼 수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범위연구로서 현재까지 누적된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국제적 개발담론, 개발협력 접근법 및 경험을 개괄하고, 향후 연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계획된 연구이다.

이에 동 연구보고서는 2장에서 글로벌 공공재 분야 개발협력 접근법 및 논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 후, 3장에서는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 특성 등을 명확히 하고, 4장에서 국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재의 실제 유형들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세계적 차원에서의 글로벌 공공재에 관하여 그 특성과 실제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5장과 6장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 회원국과 한국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 현황 및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7장에서는 효과적인 글로벌 공공재 정책 도입 및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8장에서 향후 글로벌 공공재 분야 연구 주제 및 과제를 소개하면 본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심층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추가적으로 KOICA 내부 보고회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었다.

제2장. 글로벌 공공재 분야 개발협력 접근법 및 논의 필요성 개괄

1.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의 등장 배경

1)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필요성 대두

현대적 의미의 국제원조는 전후 냉전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시작되었는데, 미국과 소련의 동서냉전 시대에서 원조는 개발도상국을 각자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²⁾ 구체적으로 미국은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사람들의 생활 수준 향상이 공산진영으로부터의 위협 방지와 안전보장 확보로 연계된다는 인식 아래 원조를 적극 활용해왔는데, 이는 원조 제공의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며 찾아온 냉전체제의 종말로 인해, 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더불어, 1960~70년대 근대화 이론에 기반한 개발방식과 인간의 기본적 요구에 대한 접근법을 통한 지원과 수원국의 국가 생산기반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발방식³⁾도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199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원조 피로’ 현상이 급증하게 되었다.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을 강조한 패러다임이었다. 당시 새롭게 제시되었던 다른 하나의 패러다임은 세계은행을 비롯한 원조공여기관에서 ‘빈곤감소’에 초점을 둔 개발이었다.

2) 윤선영 2011, p. 9.

3) 개발도상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진적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다. 세계은행과 IMF에서 추진한 구조조정정책(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SAP)이 대표적인 예로, 정부역할의 축소하고 공기업 민영화 추진, 경쟁적 시장 경제의 기반 정비를 추진하였다.

4) 윤선영 2011, p. 10.

2) 가속화된 세계화로 인한 문제 등장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로 등장한 글로벌 공공재적 시각은 세계화의 심화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전지구적 도전과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정보통신, 교통의 발달은 세계의 시간과 공간의 축약을 가져오며, 이러한 축약은 결과적으로 세계를 오그라들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게 만드는 데, 이러한 현상을 세계화라고 정의할 수 있다.⁵⁾ 이러한 세계화가 1990년대에 들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전지구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⁶⁾ 시간과 공간의 축약으로 물질·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전염병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상호의존의 심화로 경제위기,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글로벌 도전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 분야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추진되면서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글로벌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란 시장의 범지구적 확대와 동시에 단행되는 무차별적인 개방을 통한 경제적 의미의 국경 상실, 그리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과 국민경제에 대한 보호가 아닌 시장 경제적 작용에의 전면적인 의존으로 정의될 수 있다.⁷⁾ 즉, 상품의 자유로운 국가간 거래는 물론이고 생산을 위한 자본투자뿐만 아니라 증권 및 외환거래에 있어서도 국경에 의한 제약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⁸⁾

그러나 경제적 세계화는 일부 국가에 성장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성장에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본격화된 세계화는 세계 금융시장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한 원인

5) 세계화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Held & McGrew는 세계화를 ① 먼 곳의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것, ② 시간과 공간의 축약, ③ 상호의존의 심화, ④ 세계의 오그라들, ⑤ 전지구적 통합과 지역 간 권력구조가 재구축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황의서(2011)는 세계화를 “정보화시대에 경제, 사회, 문화, 지식, 정보 및 공통 문제 해결 등의 분야에서 인간의 생활권이 정치적 국경을 넘어 확대되려는 경향”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Held & McGrew 2000, p. 3; 황의서 2011)

6) 본 연구보고서에서 전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글로벌 도전과제로 지칭하였음을 밝혀둔다.

7) 황의서 2011, p. 50.

8) 김준현 2005, p. 170.

이 되었다. 2008년 발생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된 것이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위기 전파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금융의 세계화는 각국 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을 넓혔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 서로 투자 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과 직접 관련된 주택저당증권과 채권담보부증권의 부실이 이에 투자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미국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초국적 금융기관들은 담보 혹은 자본준비금을 확충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금융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그 결과, 2008년 9월에 본격화된 미국의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각 국가별 주식시장의 주가가 대규모로 거의 동일한 변동 폭을 보이면서 폭락했다.⁹⁾

이렇듯 세계의 금융시장에는 독점적이고 민주적인 권력 기관, 최종 대부자, 국제적 규제 기관, 국제안전망 등 그 어느 것도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다¹⁰⁾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국제적 규제, 규제기관 및 국제안정 등의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또한 금융위기의 전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전파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은 보호무역 장치들을 도입하여 무역 거래를 경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에 따라 국제무역에도 규제가 필요함이 밝혀졌다.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인데, 경제적 세계화가 초래한 세계무역과 투자 붐은 환경문제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역은 수송에 기반을 두는데, 현재의 수송수단의 대부분은 화석연료에 의해 움직이므로 세계무역의 증대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기후변화를 가속화 시켰다. 또한 무역장벽 제거와 더불어 수송수단의 발달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들이 전례 없는 규모로 사용되는데 일조했고, 수출을 위한 현금작물 생산이 토양침식, 지나친 방목, 사막화, 수자원 고갈, 화학오염, 종(種)다양성 상실, 산림벌채, 토양약화 등 지탱 불가능한 생태파괴를 야기하고 있다.¹¹⁾

9) 2007년 10월 초를 기준으로 2008년 10월까지 세계 주가의 변화폭을 보면, 그 폭락 정도가 미국 S&P 500은 약 -29%,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약 -36%, 유럽 지역은 약 -32%, 아메리카 대륙은 약 -30%를 보이는 등 각 지역 별로 큰 차이 없이 유사하게 폭락하였다.(황준성·윤여협 2009, p. 29.)

10) 황준성·윤여협 2009, p. 41.

11) 황의서 2011, p. 48.

세계화의 가속으로 인해 전염병 문제도 지구적 도전과제로 대두되었다. 그 이유로 첫째, 세계화와 함께 인적·물적 교류의 규모, 속도, 범위가 빨라지고 넓어지면서, 전염병의 확산도 급속히 이뤄지고, 예측도 불가능해지며 빠른 대처가 어려워졌다. 둘째, 세계화는 도시화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다시 전염병 발생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0년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1도 상승하면서 열대성 전염병이 만연하고 17억 명이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¹²⁾ 셋째, 전염병으로 인한 위험은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 확산은 경제적 마비를 초래하고 사회질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재화, 정보, 사람들이 더욱 밀접하게 세계경제와 통신 네트워크로 통합되면서 전염성 질병도 개별국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과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여 지역과 세계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¹³⁾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이하 사스)¹⁴⁾ 발병 당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최신호는 전 세계에서 사스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30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으며, 캐나다 토론토는 사스 발병으로 하루 3천만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J.P. 모건 증권사가 추산했다.¹⁵⁾ 또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사스 여파로 관광 수입, 소매업, 생산성 부문에서 각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었다.¹⁶⁾

이렇듯 가속화된 세계화는 전지구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고려와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12) 이상환 2008, p. 230.

13) 이상환 2008, p. 238.

14) 2002년 11월 중국 광둥의 남쪽지방에서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스 바이러스로 인해 2003년 7월까지 약 8,500명이 감염되었으며, 이 중 9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2003년 7월 5일에 WHO는 세계적 발병을 선언하였다. 2003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던 전체 8,422건의 사스 발병 중 약 90%, 그리고 전체 916명의 사망자 중 95%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이상환 2008, p.234.)

15) WHO는 사스로 인한 아시아 지역의 피해를 300억 달러로 추산했으며, 또 다른 분석은 대략 600억 달러로 추산하였다.(이상환 2008, p.235; Caballero-Anthony 2005, p.482.)

16) 연합뉴스. “사스, 中 대륙 확산세… 전세계 피해액 300억 달러”, 2003-04-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364547>

2. 글로벌 공공재 분야 개발협력 접근법 및 논의 필요성

글로벌 공공재 문제를 개발협력에서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으로 인한 혜택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게도 동일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협력 재원을 사용하여 그리고 개발협력의 시각을 담아 글로벌 공공재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는, 첫째, 글로벌 공공재의 비공급으로 인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더 큰 영향과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며, 둘째, 개발도상국은 스스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하며, 셋째,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지원이 빈곤감소에 훨씬 효과적이며, 넷째,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을 사용한 개발협력 사업 수행 시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글로벌 공공재의 비공급으로 인한 문제는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더 큰 영향과 피해를 발생한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세계화로 인한 경제위기, 전염병 확산, 기후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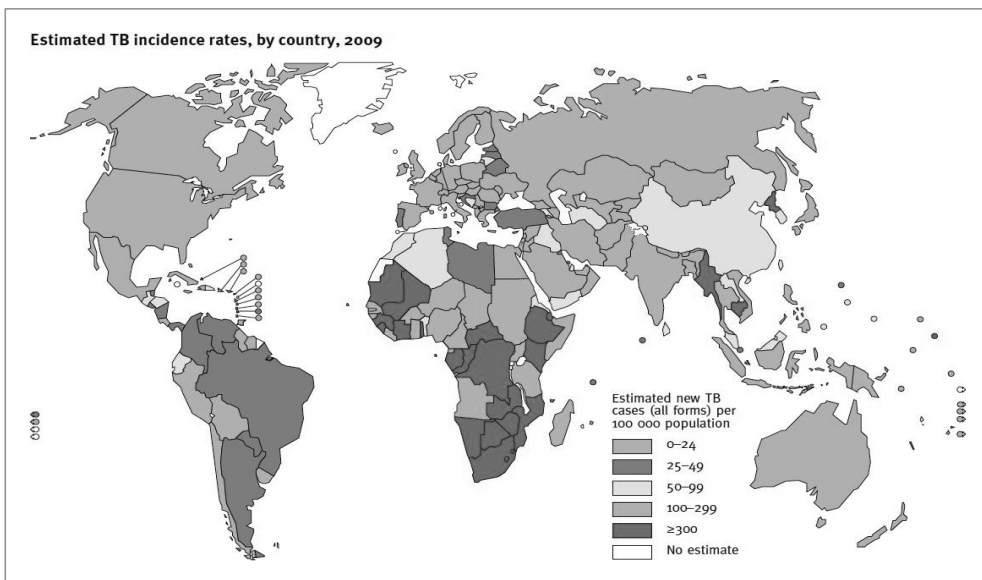
앞에서 세계화로 인해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한 국가에서 위기 발생 시 전세제로 그 영향이 파급된다는 설명을 하였다. 그런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연쇄적인 투자자금 회수로 인한 최종적 피해는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날 것이 예측되고 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도 2011년 인터뷰에서 “개발도상국이 이번 위기의 피해자가 될 것이며, 선진국에서 시작한 위기로 인해 2개월 동안 글로벌 증시에서 전세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하 GDP)의 10%인 6조 1,000억 달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위기를 초래한 미국, 유럽, 일본은 더블딥(경기 이중침체)을 피할 가능성이 있으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개발도상국들은 이번에도 선진국 위기의 영향을 받으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¹⁷⁾ 따라서 이러한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협력 차원에서 글로벌 공공재인 국제금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

17) 한국일보, 세계은행 총재 “개발도상국이 최대 피해자 될 것”... 조지 소로스 “3년 전 금융위기보다 더 위험” 2011.09.23.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109/h2011092321012122450.htm>

역체제는 개발도상국에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개발협력 차원의 접근을 통한 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염병 퇴치의 경우도 현재 개발도상국에 환자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글로벌 공공재 공급으로 인한 전염병 퇴치 시 그 혜택은 개발도상국에 가장 많이 돌아가게 된다. [그림 1]은 인구 10만 명당 결핵 환자 발생 건수를 추정하여 표시한 그림이다. [그림 1]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결핵환자도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HIV·AIDS 사망자 중 80%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HIV·AIDS로 인한 고아문제는 단순히 보건의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아프리카 사회 전반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¹⁸⁾

[그림 1] 결핵 환자 발생률(2009년)



출처: 대한결핵협회(<http://www.knt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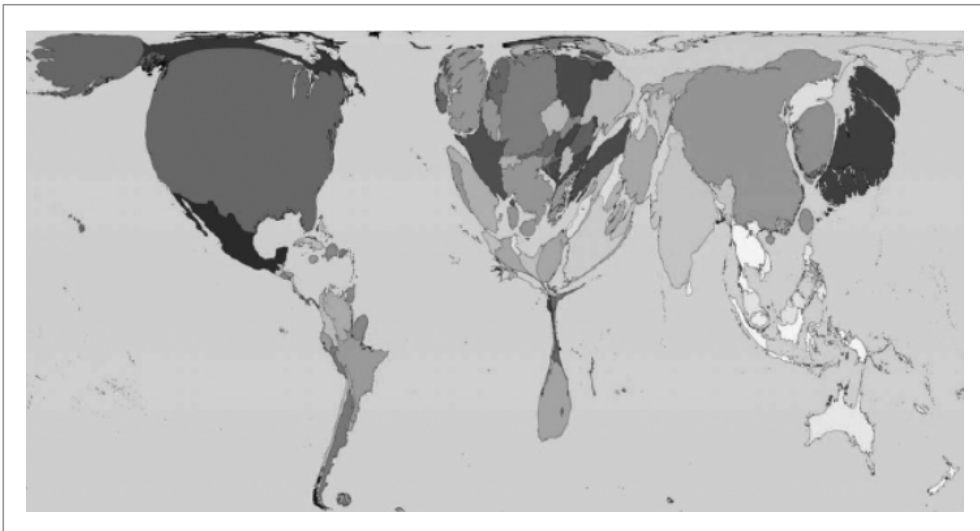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 시에도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 그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글로벌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 및 지원이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전문가도 정부가 위협적 상황에 대응할 수

18) 오충현 2010, p. 83.

있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필수적인 의료시설과 의약품이 부족한 빈국의 국민들이 선진국보다 질병 감염 우려가 훨씬 크다고 밝히고 있다¹⁹⁾.

기후변화 문제도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대처할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악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²⁰⁾ [그림 2]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국가 면적을 재편집한 세계지도로써,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짙은 색일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임을 나타내는 기후변화 취약성의 분포도인 [그림 3]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거의 없는 지역들의 기후변화 취약성이 매우 심각한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선진국들의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세계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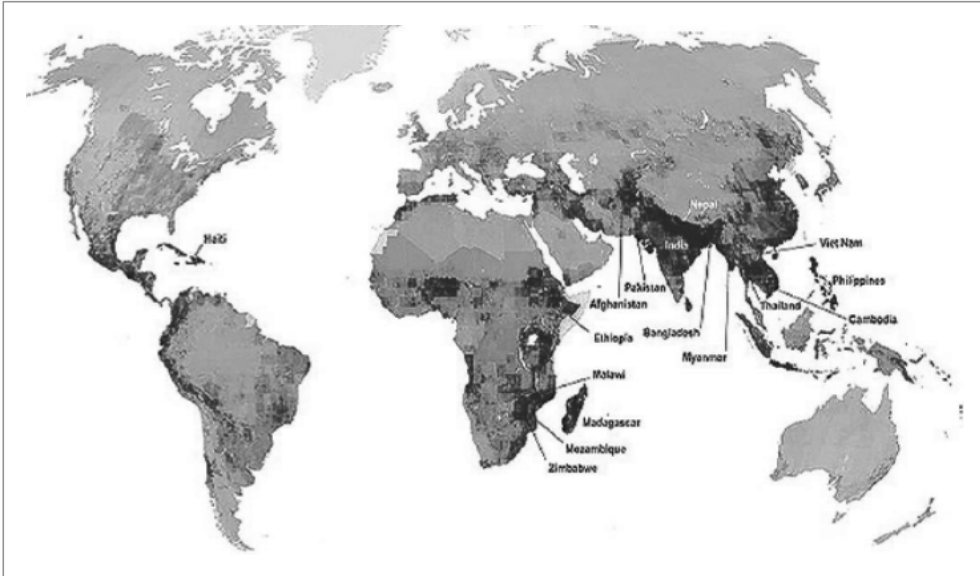


출처: World Mapper(임소영 2011, p. 13 재인용).

19) 수원일보. “선진국 플루 백신 개발도상국과 공유를” 2009년 10월 06일(화).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58>

20) 적응역량이 취약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군소도서국가들, 과밀한 인구, 해수면 상승, 폭우, 강의 범람 등 복합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메가델타(mega-deltas) 지역 등 개발도상국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이 기후변화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임소영 2011, p.12.)

[그림 3] 기후변화 취약성 분포도



출처: Maplecroft(임소영 2011, p. 13 재인용).

[표 1] 기후변화 취약 국가 순위

CRI 1990~ 2008년	국가	CRI 점수	연간 사망자수	인구 십만명당 연간 사망자수	인구 경제적 손실 (백만불 PPP)	GDP당 연간손실 (%)
1	방글라데시	8.00	8,241	6.27	2,189	1.81
2	미얀마	8.25	4,522	9.6	707	2.55
3	온두라스	12.00	340	5.56	660	3.37
4	베트남	18.83	466	0.64	1,525	1.31
5	니카라과	21.00	164	3.37	211	2.03
6	아이티	22.83	335	4.58	95	1.08
7	인도	25.83	3,255	0.33	6,132	0.38
8	도미니카공화국	27.58	222	2.93	191	0.45
9	필리핀	27.67	799	1.11	544	0.3
10	중국	28.58	2,023	0.17	25,961	0.78

출처: Harmeling 2009(임소영 2011, p. 14 재인용).

또한 독일의 비영리기관(Germanwatch)에서 발표한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²¹⁾에서도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상위 10개 국가들이 방글라데시, 미얀마, 온두라스, 베트남 등 모두 개발도상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공공재의 개발협력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개발도상국은 스스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예산 혹은 공중보건 운영체제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특허된 필수 의약품을 제공하는 재정적 수단을 확보하고 이를 모든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의약품은 저개발 국가들의 경우 고가로 책정된 사적 재화로 유지된다. 또한 식수의 경우에도 부유한 국가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충분히 제공될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므로 상당부분 공용재의 형태인 비배제적이지만 경합적인 재화로 유지된다. 이러한 예들은 저개발 국가들은 여전히 필수품들을 공적 재화로 제공할지, 사적 재화로 제공할지의 선택의 여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사적 재화에 의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점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국민들 사이에서 불평등과 사회적 부정의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글로벌 공공재의 개념은 적절한 국제적 법적 체제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능동적인 제3자가 범지구적 차원의 정치적 과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글로벌 공공재 접근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전세계의 성장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은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 사이의 1인당 소득을 수렴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시장실패는 이러한 수렴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개발도상국의 현지시장에서의 시장실패는 결과적으로 세계 성장을 둔화시키고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이번 미국 발 경제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시장실패의 경우 저개발국가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이러한 측면에서 ODA는 개발도상국의 현지시장과 글로벌 시장의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의 경우,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이유로 환경, 농업, 경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이 국가적, 지역적,

21) 기후위험지수(Climate Risk Index)는 극단적인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인적, 경제적 손실을 사용하여 기후변화 취약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글로벌 차원의 혜택을 가져오는 상품과 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여국이 도와주고, 이는 다시 공여국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²⁾

또한 개발협력 차원에서 글로벌 공공재 접근은 빈곤감소에서 효과적이다. 1990년 말부터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의 개발연구부서(Office of Development Studies)는 국제 공공재의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달성 및 빈곤 감소에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DFID (2003)은 국제 공공재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MDGs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농업연구와 국제무역 확장을 통한 빈곤퇴치가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여 빈곤을 퇴치하는 경우 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것이다.²³⁾

3.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개발협력도 양자 간 전통적 원조 방식을 넘어 글로벌 기금과 글로벌 공공재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선진 공여국들은 글로벌 기금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이미 2003년에 의회의 주도로 ‘지구적 개발정책(Policy on Global Development, PGD)’을 추진하는 기본 전략문서를 채택했다. 노르웨이는 ODA 계정과는 별도로 글로벌 공공재 지원 예산을 마련하고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의 0.3%를 배정하고 있다.²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이하 유엔)에서 발행한 Zedillo 보고서²⁵⁾는 글로벌 공공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하는데 적어도 매년 200억 달러가 요구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²⁶⁾ 스웨덴 외교부(Sagasti and Bezanson, 2001)는 2001년 글로벌 공

2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y, République Française 2002.

23) Reisen et al. 2004, p. 8.

24) 이태주 2011.

25) *Zedillo Report: Recommendations of the High-level Panel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by a Panel established by the UN Secretary General in 2000 and chaired by the former President of Mexico, Ernesto Zedillo.

26) UN 2001.

공공재의 개념, 공급의 구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출판물을 발간했다. 또한 프랑스와 스웨덴은 2003년 4월 9일 협정 체결을 통해 글로벌 공공재 연구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 연구팀(International Task Force on Global Public Goods)을 창설하였다. 동 연구팀은 국제 공공재, 국제 지역 공공재,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책입안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에 관한 정책을 개발, 권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²⁷⁾

영국국제개발청(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DFID)은 최근 국제 공공재 관련 공공지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자원 배분 우선순위 전략보고서(Strategic Review of Resource Allocation Priorities)’를 출간했다.²⁸⁾ 이 전략보고서는 2003년 3월 10일 파리에서 ‘개발효과성과 선택(Aid Effectiveness and Selectivity: Integrating Multiple Objectives into Aid Allocations)’을 주제로 개최된 OECD DAC/개발센터 공동 전문가 세미나(Joint OECD DAC/Development Centre Experts’ Seminar)에서 소개되었고, 국제 공공재에 관한 지원이 원조의 한 분야로서 새롭게 인식되고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²⁹⁾

한편, OECD DAC에서는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태스크팀(Task team)을 출범시켜, 2010년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태스크팀은 보고서(OECD DAC, 2010b)에서 글로벌 공공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일관성 확보, 정치적의지, 통계 능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ODA자금으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³⁰⁾도 존재하고 있다. Anand (2002)는 빈곤퇴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ODA자금이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나뉘어져 사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개발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구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자금은 필요성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마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ODA 재원을 사용한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을 비판하고 있다.

27) Reisen et al. 2004, p. 8.

28) http://www.dfid.gov.uk/Pubs/files/dfid_resource_allocation_main.pdf.

29) Reisen et al. 2004, p. 9.

30) Cepparulo & Giuriato 2009, pp. 2-3.

제3장. 글로벌 공공재 개관

1. 글로벌 공공재 정의

1) 공공재의 정의

공공재의 기본적 정의와 성격은 글로벌 공공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글로벌 공공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공공재의 정의와 성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공공재의 정의

공공재란 누가 공급하든 관계없이 일단 공급되면 모두가 “재화소비의 편익을 공유하는 재화”를 말한다. 즉, 공동소비(joint-consumption)가 가능하면 그 재화 및 서비스는 공공재라 할 수 있다.

(2) 공공재의 성격

공공재의 대표적인 성격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의 재화소비가 다른 사람의 재화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격을 말한다. 우리가 공공재라 부르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완전하게 비경합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원의 경우 사용자 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경합성이 일체 없지만, 일정 수를 초과하여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혼잡(congestion)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사용자의 수가 일정수준을 초과할 때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여 일인당 소비 편익이 감소하는 재화를 비순수 공공재 또는 혼잡가능 공공재라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재는 순수 공공재가 아니라 혼잡가능 공공재일 것이다.

비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재화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을 말한다. 민간재(사적재)의 경우 가격을 지불하면 소비에 참여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화소비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경우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서 항상 소비혜택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재화소비에서 그를 배제시키기가 곤란한데 이를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것이다.³¹⁾

2)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

재화 소비의 편익의 발생 및 공유의 범위가 특정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수의 국가 사이 혹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재, 즉,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에 관해서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었다. Morrissey et al.(2002)은 직접효용을 산출하고, 위험을 줄이거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재화를 글로벌 공공재의 기본 정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정의는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이나 재정에 관한 논의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Anand(2002)는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에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부분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공공재의 개념에도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³²⁾ Sandler(2001)는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에 대해 효용을 향유하게 되는 대상이 특정 연령층, 국가 등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³³⁾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를 전통적인 공공재의 정의, 즉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출발점으로 하여, 효용을 향유하게 되는 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개념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공공재의 개념을 “모든 국가, 인민, 세대에게 혜택이 확장되는 재화 및 서비스”로 정의 내릴 수 있다.

31) 최영환 2004, pp. 226-228.

32) Reisen et al. 2004, p. 12.

33) Reisen et al. 2004, p. 11.

글로벌 공공재와 동일 혹은 유사한 개념으로 ‘국제 공공재’와 ‘국제 지역 공공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제 공공재, 국제 지역 공공재는 글로벌 공공재와 유사한 개념이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³⁴⁾

(1) 국제 공공재

국제 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의 개념은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글로벌 공공재 보다 광범위한 개념에 속한다. 국제 공공재는 특정 국가가 공급한 공공재로 인한 이익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즉 2개 이상의 국가에 이익을 가져오는 재화 및 서비스로 정의된다. 그러나 글로벌 공공재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제 공공재는 효용을 향유하게 되는 지역적 범위를 기준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국제 지역 공공재,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가 가능하다.

(2) 국제 지역 공공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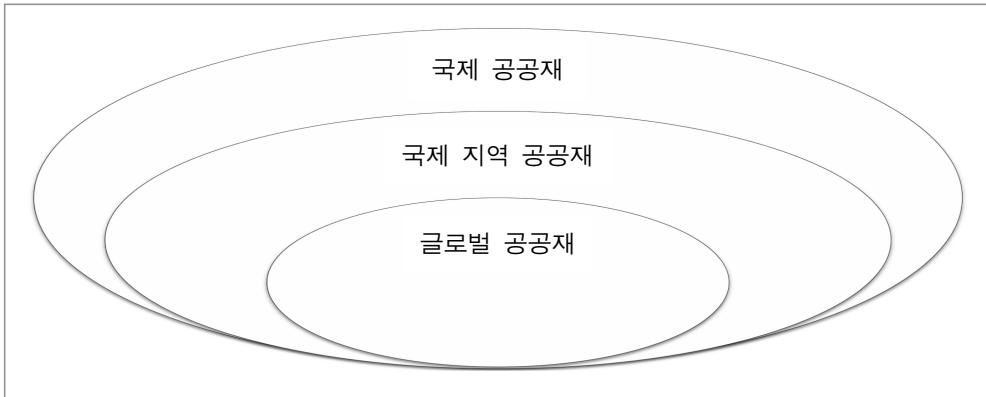
국제 공공재(Regional Public Goods) 중에서 특정 지역 내에서 공공재의 기본적인 특성인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이 온전히 작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국제 지역 공공재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공공재의 공급으로 인한 이익이 관련국가, 전 통적으로 다수의 이웃 국가들, 모두에게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화 및 서비스를 국제 지역 공공재로 볼 수 있다.

(3) 글로벌 공공재

국제 공공재 중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으로 인한 이익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로 볼 수 있다.

34) Reisen et al. 2004, OECD 2010b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 및 분류하였다.

[그림 4]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



출처: 저자작성

즉, 글로벌 공공재나 국제 지역 공공재는 모두 국제 공공재에 해당하지만, 국제 공공재 중에는 국제 지역 공공재나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공공재에 관련된 개발협력 담론을 소개하고,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획된 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기 분류에서 ‘글로벌 공공재’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비록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국제 공공재나 국제 지역 공공재도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제이므로 향후 별도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³⁵⁾

2. 글로벌 공공재 공급의 문제점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 과소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35) 글로벌 공공재 문제는 본질적 특성상 대부분이 글로벌 도전과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제 지역 공공재와 관련된 문제는 문제별 속성에 따라 글로벌 도전과제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글로벌 도전과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1) 소비자와 공급자 불일치

공공재와 글로벌 공공재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공통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 차원에서 공급이 이뤄지는 공공재의 경우, 각국 정부가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나, 글로벌 공공재의 경우 이 역할을 담당할 세계정부 혹은 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공급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으로 효과가 발생하여 소비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일반적으로 상당한 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은 현재세대가 담당하게 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현재 심각한 빈곤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제한된 자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 사용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³⁶⁾

2) 무임승차문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춘 공공재에 대해 자발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소비에 참여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재화소비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려 들지 않는다면, 이 같은 성격을 갖춘 재화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은 없다. 비경합성 그리고 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 무임승차자가 있다는 것은 재화소비에 대해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³⁷⁾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의 공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초국가적 정부(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무임승차에 기인하는 글로벌 공공재의 과소공급 경향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특정 국가의 국내에서라면 무임승차자 때문

36) Reisen et al. 2004, p. 12; Schelling, T.C. 2002.

37) 최영환 2004, pp. 226-228.

에 공공재의 적절한 공급이 방해될 경우 정부의 조정과 관리 등 개입을 통하여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나, 글로벌 공공재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각국의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강력한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임승차자의 배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은 최적량 이하에 머무는 것이 보통이다.

3) 국가별 기대이익과 비용의 상이성

최근 들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공공재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또는 새로운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고 활용하면서 얻거나,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비용은 각국별로 크게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³⁸⁾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경우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동시에 무임승차 문제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3. 글로벌 공공재 개념 정립 및 분류의 필요성

앞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국제 공공재, 국제 지역 공공재와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제 공공재 중 해당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으로 인한 이익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글로벌 공공재’라고 정의 내렸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앞에서 내린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공재를 보다 더 세밀하게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와 분류를 명확히 내리는 것은 첫째, 현재 ODA 중 글로벌 공공재 제공에 사용되고 있는 자금의 비율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학자들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글로벌 공공재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CRS를 기준으로 Anand(2002)는 3.7%가 Raffer(1999)는 25%의 ODA가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사용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둘째, 글로벌 공공재의 개념이 명

38) 자세한 내용은 4장의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방식에 따른 분류 참조

확히 정립되어야 이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기타 긴급구조나 기술지원 등에 사용되는 자원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해지며, 어떤 특정 분야에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공공재의 경우 공급을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당 재화의 공급 및 이와 관련된 의무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비용 효과적인 공급방법이나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³⁹⁾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글로벌 공공재를 유형과 공급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9) Reisen et al. 2004, p. 11.

제4장. 글로벌 공공재의 분류

1. 글로벌 공공재의 유형별 분류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 유형으로 글로벌 공공재를 분류하고 있다.

- 지식생산 및 전파(Knowledge generation and dissemination)
- 인권(Human rights)
- 전염병 퇴치(Communicable disease eradication)
-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International financial stability and a free and open trade system)
-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Crime control and peace building)
-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Global commons and sustainability)
- 통신(Communications)

글로벌 공공재와 관한 대표적인 연구들의 상기 분야의 글로벌 공공재 포함여부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선행연구 글로벌 공공재 선택 분야

	World bank(2001)	te Velde et al.(2002)	Reisen et al.(2004)	Speight (2002)	Cepparulo & Giuriato (2009)
지식생산 및 전파	V	V	V	V	V
인권			V		
전염병 퇴치	V	V	V	V	V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V	V	V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V	V	V		V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V	V	V	V	V
통신		V			V

출처: 저자작성

이 절에서는 [표 2]에 소개된 5개의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여, 글로벌 공공재의 유형을 분류해 보고, 동 연구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선정할 유형에 대해 정리하겠다.

1) 지식생산 및 전파

선행연구에서 새로운 지식생산 및 전파를 통한 공유를 글로벌 공공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동 연구보고서에서도 CRS 코드에서 교육 연구, 의료 연구와 같은 모든 연구 분야를 지식생산 및 전파에 포함하였다.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CRS 코드 16061번)과 관련하여서는, 도서관과 박물관 건축은 공급으로 인한 혜택이 지역적으로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라는 측면보다 보존의 측면이 더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CRS 분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제외시켰다.

2) 인권

Reisen et al.(2004)는 인권보호, 양성평등, 여성의 역량강화와 관련된 지원을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하였다. 반면, Cepparulo & Giuriato(2009)는 인권 및 여권 향상으로 인한 효과는 기본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분야는 글로벌 공공재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특정 지역의 인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문제 해결로 인한 혜택은 특정 지역에서 향유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도 인권 분야는 글로벌 공공재에서 제외하였다.

3) 전염병 퇴치

교통수단의 발전 등으로 인해 무엇보다 인적 교류 등이 빈번해지면서 전염병 확산은 이제 전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전염병 퇴치로 인한 혜택은 전세계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볼 수 있다.⁴⁰⁾ 따라서 이를

40) 그러나 전염병 퇴치로 인한 혜택은 개발도상국 국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게 된다.

예방, 관리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공공재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CRS 코드 중에서는 전염병 관리에 해당하는 12250번과 HIV·AIDS를 포함한 성병대책에 해당하는 13040번이 전염병 퇴치와 관련된 지원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말라리아와 결핵과 관련된 지원의 경우 발생 및 전염 가능 범위가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공재에서 제외시켰다.⁴¹⁾

4)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국제경제와 관련된 분야를 글로벌 공공재의 하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World Bank(2001)와 te Velde et al.(2002)의 경우 국제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나, Speight(2002), Reisen et al.(2004)와 Cepparulo & Giuriato(2009)는 포함시키고 있다. World Bank(2001)와 te Velde et al.(2002)가 국제경제 관련 분야를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CRS 코드 상 하나의 핵심 분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CRS코드의 경우 경제 및 재정정책과 관련된 CRS 코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유무역시스템 구축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국가간 교역 규모가 증대되면서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마찰과 분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차원에서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통상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이 필요로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반영한 국제통상시스템의 구축이야말로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라 할 수 있고, CRS분류도 통상정책, 행정 관리(CRS 코드: 33110), 다자간무역협상(CRS 코드: 33140)을 관련 분야로 파악하여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할 수 있다.

41) 동 연구보고서의 연구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말라리아와 결핵 등 다른 질병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님을 밝혀둔다.

국제경제 안정성과 관련된 분야의 경우, 금융시장의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간 연계는 금융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금융시장의 과실은 곧바로 이웃나라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되었다. 따라서 금융 규제를 조율하고 전세계 모든 나라가 그들의 금융정책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세계적 차원의 관리체계야말로 글로벌 공공재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제안정성과 관련된 금융 정책 및 행정 관리(CRS 코드: 24010), 중앙금융기관(CRS 코드: 24020) 역시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하였다.

한편, Reisen et al.(2004), Speight(2002), Cepparulo & Giuriato(2009)는 경제 및 재정정책과 관련된 분야로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15110), 공공부문 재정관리(15111)를 꼽고 있다. 그런데 이 분야의 경우 경제 및 재정정책 이외에도 공공정책, 전자 정부 등 다른 분야도 포함되어 CRS 코드가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분야는 글로벌 공공재에서 제외하였다.

5)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MDGs와는 관련이 없지만 중요한 글로벌 공공재인 마약 통제는 개발관련 글로벌 공공재 리스트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마약 투여 및 유통으로 인한 범죄는 마약 생산국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약 퇴치를 위한 운동은 초국적 외부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CRS 코드 중 마약 관리(CRS 코드: 16063),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CRS 코드: 31165), 비농업분야 마약대체 개발(CRS 코드: 43050)은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하였다.⁴²⁾

World bank(2001)와 te Velde et al.(2002)는 평화구축과 관련된 활동도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구축 활동의 경우, 해당 활동이 이뤄지는 지역

42) Reisen et al.(2004), Cepparulo & Giuriato(2009)도 마약과 관련된 범죄통제의 경우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하고 있다.

이 안정화됨으로 인해서 이웃 근접지역의 경제까지도 안정되게 되는 외부편익을 발생 시키기는 하나, 이는 지역적인 효과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화 구축과 관련된 활동의 경우 글로벌 공공재가 아니라 국제 지역 공공재로 분류되어야 하기에, 다음 분야는 글로벌 공공재에서 제외하였다.

- 시민주도 평화구축, 분쟁예방(CRS 코드: 15220)
- 사회재합류와 소형 무기 통제(CRS 코드: 15240)
- 지뢰제거(CRS 코드: 15250)
- 농촌 개발(CRS 코드: 43040)
- 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CRS 코드: 72010)
- 재건 구호(CRS 코드: 73010)
-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CRS 코드: 15230)

6)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대부분의 환경재와 자원의 경우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된다. 최근 들어서 다양한 환경관련 문제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고, 공해(산성비, 오·폐수 유출 등) 문제도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외부비용을 부과시키면서 이 분류의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황사현상만 해도 중국 서부 내륙 등에서 발생하여 동북아 국가들을 거쳐서 멀게는 알래스카 지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기후변화의 영향 등 환경관련 과학기술 개발도 그로 인한 이익이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므로 글로벌 공공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력 발전, 지열 발전과 조력 발전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만 건설 및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공재에서 제외하는 의견도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모두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하였다.

수자원정책·행정관리(CRS 코드: 14010), 수자원보호(CRS 코드: 14015), 하천 개발(CRS 코드: 14040), 홍수방지·대책(CRS 코드: 41050), 폐기물 관리·처리(CRS 코드:

14050)는 특정 지역내의 수자원이나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국제 지역 공공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글로벌 공공재에서 제외하였다.

7) 통신

Cepparulo & Giuriato(2009)는 통신 분야를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CRS코드 중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유통(CRS 코드: 15153), 통신 정책 및 행정 관리(CRS 코드: 22010), 통신·전화(CRS 코드: 22020)를 글로벌 공공재로 파악하고 있다.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유통(CRS 코드: 15153) 분야의 경우, 지식의 전파와 관련이 있으므로 글로벌 공공재로 볼 수 있으나, 통신 분야로 분류하기 보다는 지식 생산 및 전파 분야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te Velde et al.(2002)과 Speight(2002)도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경우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통신 정책 및 행정 관리(CRS 코드: 22010), 통신·전화(CRS 코드: 22020)는 글로벌 공공재가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의 국가적 차원의 보완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선택한 분야의 CRS 코드를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글로벌 공공재 관련 CRS코드

글로벌 공공재 분야	CRS 코드	분야	World bank (2001)	te Velde et al. (2002)	Reisen et al. (2004)	Speight (2002)	Cepparulo & Giuriato (2009)	선택 분야
국제경제 안정성 및 자유무역 시스템 구축	15110	공공정책 및 행정관리			V	V	V	
	15111	공공부문 재정관리			V	V	V	
	24010	금융 정책 및 행정 관리			V	V	V	V
	24020	중앙금융기관			V	V	V	V
	33110	통상정책, 행정 관리			V	V	V	V
	33140	다자간무역협상				V	V	V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15220	시민주도 평화구축, 분쟁예방					V	
	15240	사회재합류 와 소형 무기 통제	V	V				
	15250	지뢰제거	V					
	16063	마약 관리		V	V		V	V
	31165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V		V	V
	43040	농촌 개발	V					
	43050	비농업분야 마약대체 개발			V		V	V
	72010	구호 물자지원 및 서비스	V					
	73010	재건 구호	V					
	15230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V	V			V	
인권	15160	인권 감시 및 교육			V			
	15170	성평등 조직 및 제도			V			
인류 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13010	인구정책 및 행정관리			V	V	V	
	13030	가족계획			V			
	14010	수자원정책·행정관리	V	V				
	14015	수자원보호	V	V				
	14040	하천 개발	V	V				
	14050	폐기물 관리·처리		V				
	23030	전력 생산·재생가능 자원 사용			V	V	V	V
	23065	수력 발전소			V			V
	23066	지열 발전소			V	V	V	V
	23067	태양 에너지	V		V	V	V	V
	23068	풍력 발전	V		V	V	V	V
	23069	조력 발전			V	V	V	V
	23070	생물자원 에너지	V		V	V	V	V
	23081	에너지 교육·훈련		V				
	31210	임업 정책·행정·관리	V	V	V	V	V	V
	31220	임업 개발	V	V	V	V	V	V
	31261	연료용 목재·숯			V			
	31310	어업 정책·행정·관리	V	V	V	V	V	V
	31320	어업 개발	V	V	V	V	V	V
	41010	환경정책·행정·관리		V	V	V	V	V
	41020	생물권역 보호	V	V	V	V	V	V
	41030	생물 다양성	V	V	V	V	V	V
	41040	자연문화유산 보호		V	V	V	V	V
	41050	홍수방지·대책		V				
	41081	환경교육·훈련		V				
전염병 퇴치	12250	전염병 관리	V	V	V	V	V	V
	13040	성병 대책(HIV·AIDS 포함)	V	V	V	V	V	V

지식 생산 및 전파	11182	교육 연구	V		V	V	V	V
	12182	의료 연구	V		V	V	V	V
	16061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V				
	16062	통계능력 강화	V	V	V	V	V	V
	23082	에너지 연구		V	V	V	V	V
	31182	농업 연구	V	V	V	V	V	V
	31282	임업 연구			V	V	V	V
	31382	어업 연구			V	V	V	V
	32182	기술연구 개발	V	V	V	V	V	V
	41082	환경 연구	V	V	V	V	V	V
	43082	연구·과학기관	V	V	V	V	V	V
통신	15153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유통		V		V	V	V
	22010	통신 정책 및 행정 관리					V	
	22020	통신·전화					V	

출처: 저자작성

2.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방식에 따른 분류

글로벌 공공재는 공급 방식에 따라, (1) 단일국가의 노력으로 공급 및 문제 해결이 가능한 글로벌 공공재, (2) 모든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 중, 국가별 이해관계가 같은 경우, (3) 모든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 중, 국가별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이 3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⁴³⁾

1) 단일국가의 노력으로 공급 및 문제해결이 가능한 글로벌 공공재

단일국가의 노력으로 공급 및 문제해결이 가능한 글로벌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로 소행성 충돌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해 지구 멸망이 예상되는 경우, 소행성 파괴나 경로 수정으로 인해 지구의 안전이 확보되면 이로 인한 이득은 전세계 모든 국가가 향유하게 된다. 따라서 소행성 파괴나 경로 수정을 위한 기술 개발이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한다.

43) Barrett(2007)에서 사용한 분류방법을 정리, 번역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글로벌 공공재의 경우 단일 국가, 주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소행성 파괴나 경로 수정을 위한 기술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는데, 소행성 충돌의 경우 발생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 개발에 투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 개발에 개발도상국은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한 한 국가만 개발 및 공급에 성공해도 인류 전체가 이로 인한 이득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글로벌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의 글로벌 공공재이다.

또한 Barrett(2007)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기술 개발 및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를 공급하게 될 국가의 GDP보다(일년 혹은 미래의 총GDP의 합) 작으면 강대국으로서도 해당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동기부여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상황에서 이 분류에 해당하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 이외의 국가가 공급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기 분석은 그 동안 강대국(주로 미국)에 의해 기존의 글로벌 공공재(국제경제, 무역, 정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가 공급되어 온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2) 모든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

다음으로 글로벌 공공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종류의 글로벌 공공재는 특성에 따라 국가별 이해관계가 같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국가별 이해관계가 같은 경우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 중 국가별 이해관계가 동일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전염병 퇴치를 들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화로 인해 인류의 이동이 쉬워지고, 이로 인해 전염병

의 발생은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염병(천연두, 에이즈 등) 퇴치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전염병 퇴치는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박멸되지 않고, 한 곳이라도 전염병이 퇴치되지 않을 경우 다시 발병하여 전세계로 퍼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염병 퇴치와 같은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은 조건부로 이뤄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급으로 인한 이득은 크지만, 모든 국가가 참여하지 않으면 퇴치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로 인해, 한 국가의 참여는 다른 국가의 참여라는 조건이 성립될 때에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혹은 모든 국가에서 전염병 퇴치를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국제적 재원(International financing)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2) 국가별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이지만,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국가별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의 글로벌 공공재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기후변화를 들 수 있다.

기후변화(지구온난화, 오존 파괴) 등으로 인한 피해(해수면 상승, 오존층 파괴로 인한 피부암 발생 등)는 전세계에 동일하게 나타나며, 기후변화를 방지·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한 혜택 역시 전세계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염병 퇴치의 경우 국가별로 발생하는 피해와 혜택의 상대적 양이나 크기가 달랐을 뿐 동일한 형태의 피해와 혜택이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반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여러 국가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현상은 섬으로 된 국가 및 저지대에 있는 국가에만 문제가 된다.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글로벌 공공재 공급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나,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가 국가마다 다르고, 피해를 발생시키는 책임도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⁴⁴⁾ 지원과 관련해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또 다른 특징으로 소행성 충돌, 전염병의 경우 피해가 단시일에 가시적으로 발생하나,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는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느낄 수 있어 지원이 늦게 이뤄지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소행성 충돌과 전염병 퇴치의 경우 글로벌 공공재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모든 국가가 다 손해를 입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경우 공급이 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는 국가와 이득을 보는 국가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가속화 될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이득을 보게 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도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는 국가도 발생하게 된다.

[표 4]는 공급방식에 따른 글로벌 공공재의 분류를 기준으로 각각의 글로벌 공공재 세부 섹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한 표이다. 지식생산 및 전파 분야는 연구 등의 결과를 얻는데 오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단일 국가의 투자 및 발명으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일국가의 노력으로 공급 및 해결이 가능한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하였다. 전염병 퇴치와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은 각각 분야의 해결로 인한 혜택은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고, 전세계 국가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분야로 생각되어, 모든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 중 국가별 이해관계 같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의 경우에도 이미 기존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모든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 중 국가별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로 분류하였다. 또한 인류공동 자산 및 지속가능성 분야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 중 국가별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의 대표적인 예이므로 이 분야

44) 이산화탄소 배출은 대부분은 몇몇 강대국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로 분류하였다.

[표 4] 공급 방식별 글로벌 공공재 예시

단일국가의 노력으로 공급 및 해결 가능 - 지식생산 및 전파
모든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국가별 이해관계가 같은 경우) - 전염병 퇴치 -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모든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국가별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 -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출처: 저자작성

그러나 [표 4]의 분류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며, 이러한 분류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 퇴치의 경우에도 단일국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전세계에서 동시에 전염병 퇴치사업을 실시할 경우, 단일국가의 노력으로도 전염병 퇴치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전염병 퇴치의 경우 모든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한 것이다.

공급 방식에 따른 글로벌 공공재의 분류는 각 글로벌 공공재의 특성을 잘 반영한 분류법으로, 특정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시에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글로벌 공공재 분야 ODA 현황 분석

CRS데이터는 모든 DAC회원국이 동일한 정의와 기준을 사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조의 분야별 분배 현황 등의 분석을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CRS 데이터는 실제 집행금액이 아닌 각 국가별 약정금액이 보고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회원국의 불성실한 정보제공으로 정확하지 않거나 늦게 자료가 제공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CRS코드는 총 5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3자리는 특정 섹터와 분야를 나타내는 코드이며, 뒤에 두 자리는 세부 섹터를 나타내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앞장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한 지원분야를 정리한 표([표 3]참조)도 CRS 코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이렇게 CRS코드를 사용한 글로벌 공공재 분야 분석은 해당 분야의 지원 추이 및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별 비교 분석을 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공재가 아닌 다른 지원도 글로벌 공공재 지원으로 분류되어 파악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시킨 CRS 코드에 포함되는 지원 중에는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에 반하거나 관련이 없는 지원도 같이 포함되어 보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KOICA에서 이행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점은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인류공동 자산 및 지속가능성 분야로 분류된 임업 정책·행정·관리(CRS코드: 31210)로 분류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사업은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사업이 분명하다. 그러나 어업개발(CRS 코드: 31320)로 분류된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 사업은 사업명만을 보고는 해당 사업이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방향으로 시행되는 사업인지, 아님 반대로 어족자원의 멸종에 기여하여 글로벌 공공재에 반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는 사업인지 판단할 수 없다.([별첨 2] 참조) 만약, 당 사업이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여전히 CRS코드상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지원으로 분류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염병 퇴치 사업의 경우 개별 국가의 지원은 무의미한 지원이 될 수 있음을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CRS코드를 사용한 분류의 경우 특정 국가에서 진행된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공공재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글로벌 공공재만을 별도로 관리·추적할 수 있는 통계가 따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CRS코드를 사용한 분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선행 연구들도 CRS코드를 사용한 ODA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하였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통계상의 한계로 인해, 분석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표 5]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선택한 분야에 대한 OECD DAC 회원국의 ODA 지원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어떠한 CRS코드를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하는가에 따라 지원비율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연구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선택된 CRS 코드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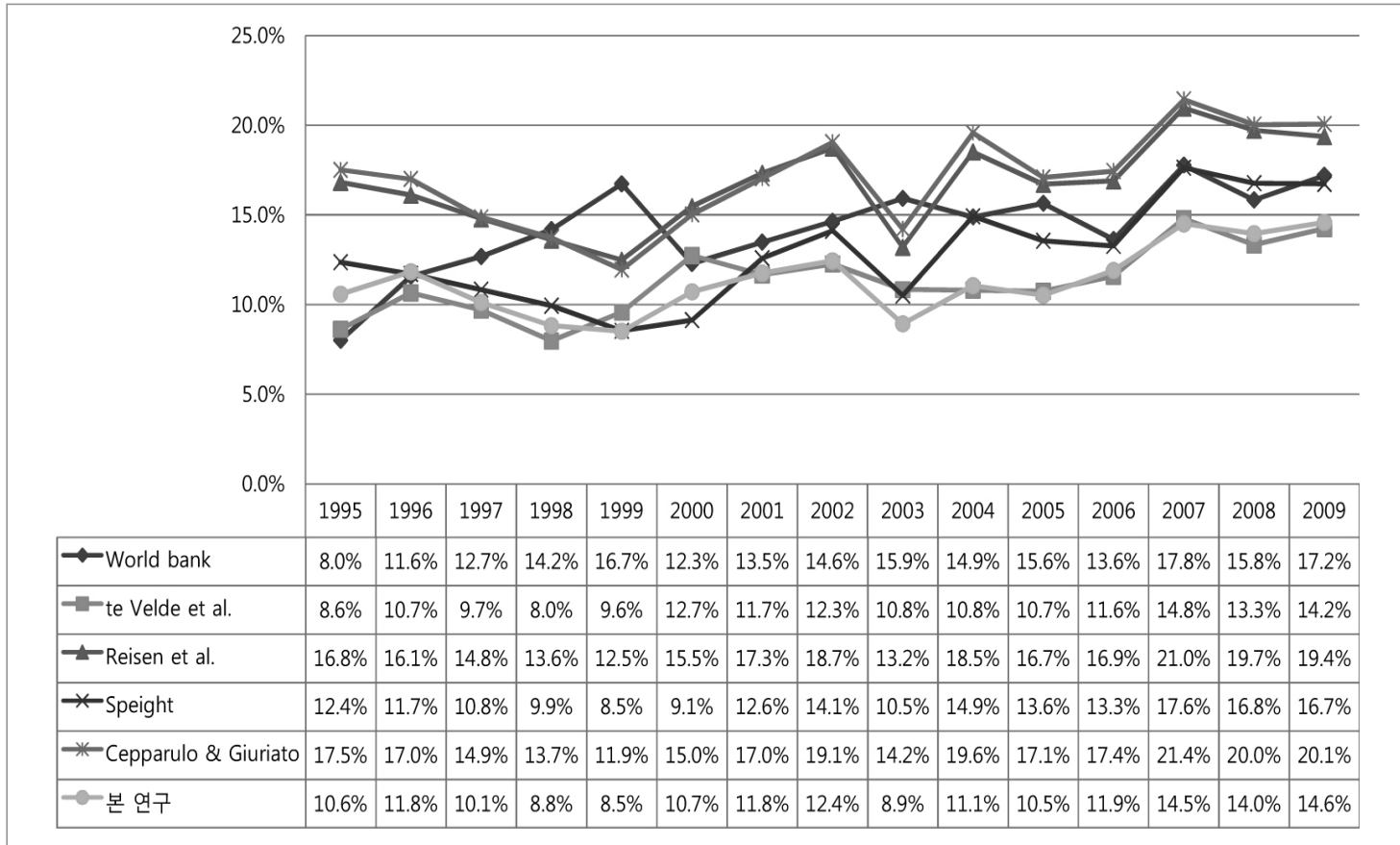
본 연구보고서에서 선택한 글로벌 공공재 분야 ODA지원의 경우, 1995년에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이 전체 ODA 지원액의 10.6%를, 2009년에는 1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폭의 변화가 있었으나, 글로벌 공공재가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2009년에는 1995년 보다 다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⁵⁾ 본 연구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선택된 분야에 대한 자세한 지원현황은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OECD DAC 회원국 전체에서 제공된 ODA 현황과 본 연구에서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한 CRS 코드에 지원된 ODA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표 6]에 따르면 2009년 글로벌 공공재에 지원된 금액은 158억 8,100만 달러로 1995년에 제공되었던 38억 8,700 달러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공공재 지원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보아,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액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통계상으로는 단순히 지원이 증가한 것만이 확인될 뿐, 이러한 증가의 원인이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관심으로 인한 것인지, 자연적 증가인지 판단 할 수 없다. 또한 세계화로 인해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는 등 글로벌 공공재 관련 문제가 급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증가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1년에 제출된 Zedillo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금액인 연간 200억 달러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액수가 글로벌 공공재 분야 ODA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5) Cepparulo & Giuriato 2009 등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공공재 분야 ODA 지원의 증가로 인해, 다른 분야 ODA지원을 축소시키는 대체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5] DAC 회원국의 글로벌 공공재 정의별 ODA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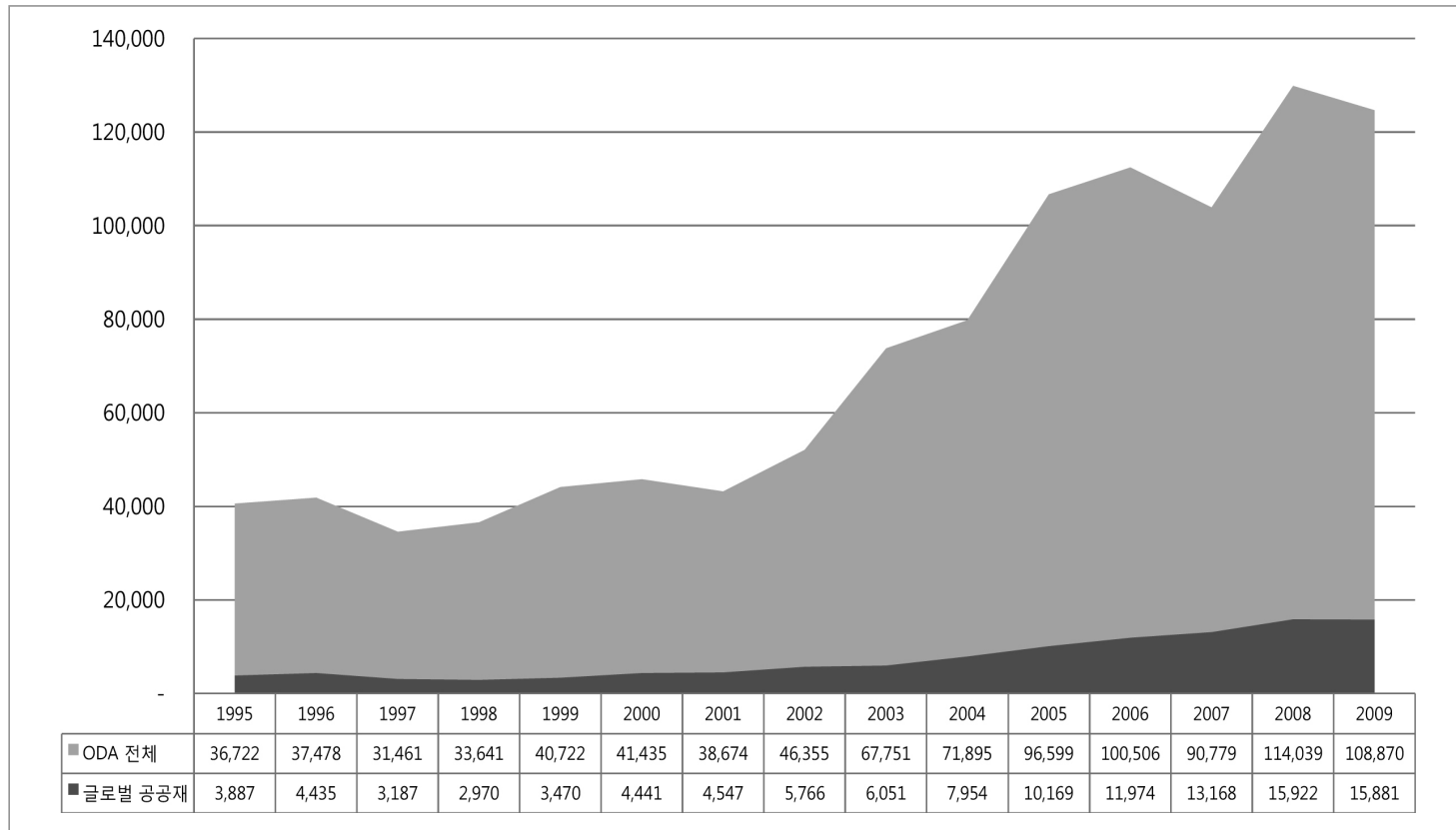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6] DAC 회원국의 글로벌 공공재분야 ODA 지원 현황(1995-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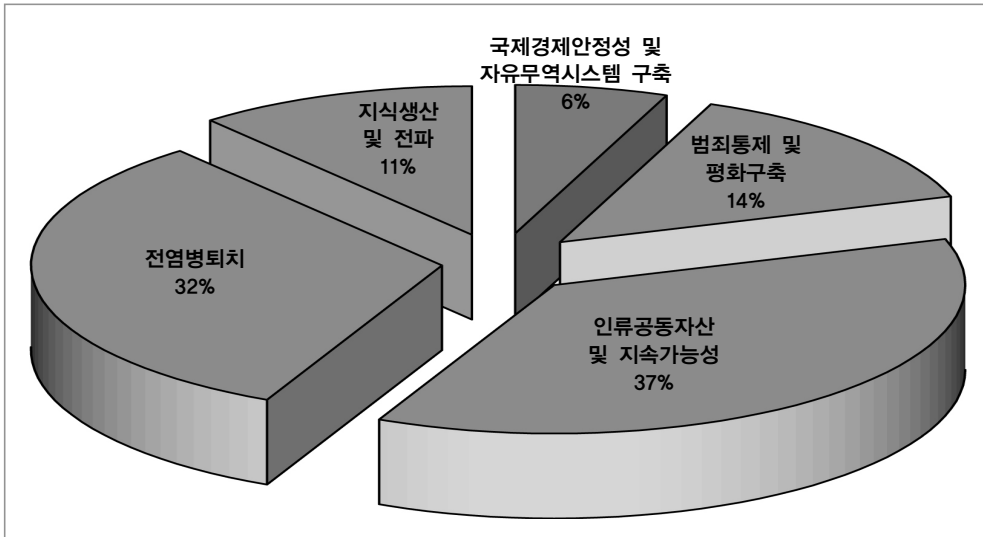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그림 5] 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1995~2009년)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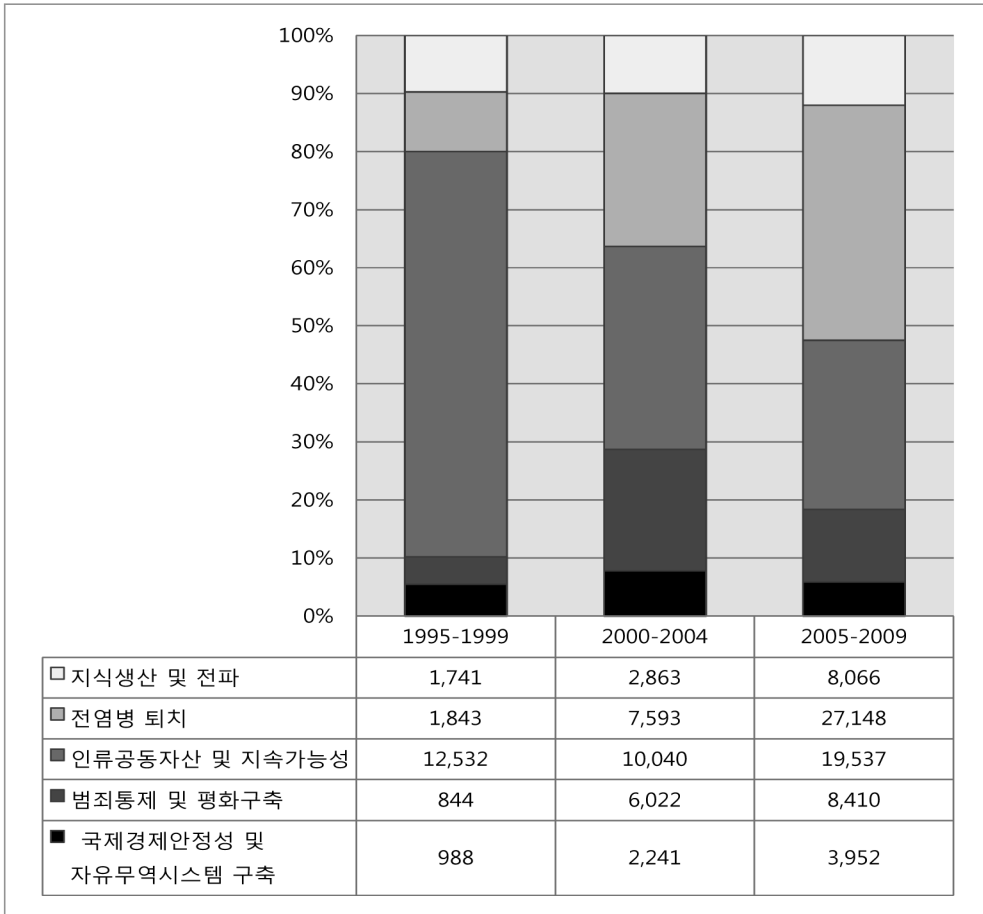
(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글로벌 공공재 지원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1995년부터 2009년에 글로벌 공공재에 지원된 ODA 중 인류공동자산과 관련된 분야에 총 37%가, 전염병 분야에 32%가,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에 14%, 지식생산 및 전파에 11%,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분야에 6%가 지원되었다.([그림 5] 참고)

분야별 지원액 비중의 경우,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을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분야의 경우 1995~1999년에는 전체 글로벌 공공재 지원의 약 70%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지원비율이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2005~2009년에는 약 30%의 지원이 이루어 졌다. 반면 전염병 퇴치 분야는 1995~1999년에는 약 10%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점차 지원 비중이 높아져 2005~2009년에는 글로벌 공공재 전체 지원의 약 40%를 차지했다.

[표 7]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제5장. OECD DAC 회원국 글로벌 공공재 정책 및 현황 분석

제5장에서는 OECD DAC 회원국의 개발협력 정책 중 글로벌 공공재 관련 정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본 후, 본 연구에서 분류한 글로벌 공공재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을 제외한 OECD DAC의 22개 회원국의 정부 및 개발원조기관이 발행한 개발협력 정책 문서와 백서를 분석하여, 글로벌 공공재 정책의 유무, 개발협력 분야에서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한 전지구적 공동대응의 필요성 인식 여부, 글로벌 공공재 관련 5개의 세부 섹터가 분석 대상 국가의 개발협력 중점 분야에 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만을 별도로 다루고 있는 연구보고서나 가이드라인, 정책문서를 발간한 적이 있는 국가를 표시해두었다.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고, 분석 대상 문서는 [표 9]에 정리하였다.

분석 대상인 OECD 회원국 22개 국가 중에서 글로벌 공공재 관련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총 9개 국가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이다. 상기 9개 국가는 글로벌 도전과제의 부상으로 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을 정책 문서에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 또한 상기 9개 국가 중 영국,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의 경우 글로벌 공공재만을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별도의 연구보고서나 가이드라인, 정책문서를 발간하였다. 독일과 아일랜드의 경우 비록 글로벌 공공재 관련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정책 문서에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대두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상기 9개국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8] OECD DAC 회원국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 분석

	글로벌 공공재 정책	공동대응 필요성 인식여부	가이드라인·연구보고서 발간	글로벌 공공재 관련 섹터 정책의 중점분야 포함 여부				
				지식생산 및 전파	전염병 퇴치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인류 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스웨덴	V	V	V	V	V	V	V	V
스위스	V	V	V			V		V
영국	V	V	V		V	V		V
프랑스	V	V	V					
노르웨이	V	V			V	V		V
네덜란드	V	V			V	V		V
미국	V	V			V			V
일본	V	V			V	V	V	V
핀란드	V	V		V		V		V
독일		V			V	V		V
아일랜드		V			V	V		V
뉴질랜드								V
덴마크						V		V
벨기에					V			
스페인				V		V		V
오스트리아								V
이탈리아					V			V
캐나다								V
호주					V	V		V
그리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출처: 저자작성

[표 9] 글로벌 공공재 분석 대상 문서

국가	분석 대상 문서
스웨덴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05). Government Communication 2005/06:204 - Sweden's Global Development Policy.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06). Together towards 2015 - Sweden's Report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6.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08). Global Challenges - Our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on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스웨덴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10). Meeting Global Challenges - Government communication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2010.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11a).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홈페이지).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11b). Global Public Goods.(홈페이지).
	International Task Force on Global Public Goods.(2006). Meeting Global challeng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National Interest.
스위스	SECO.(2010). Globalization and Global Issues: The Contribution of SECO.
	FDFA.(2011). Information Sheet SDC-SNSF Fund for Research on Global Issues. FDFA: Berne, Swiss Confederation.
	SDC.(2011).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development policy.
	SDC.(n.d.).Global public good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SDC & SECO.(2011a). Annual Report 2010: Switzerland's International Cooperation.
영국	DFID.(2008). Research Strategy 2008~2013. London, UK.
	DFID.(2009). Eliminating World Poverty: Building our Common Future.
	DFID.(2011a). Operational Plan 2011~2015 DFID Global Funds Department.
	DFID.(2011b). Operational Plan 2011~2015 DFID Research and Evidence Division.
프랑스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y, République Française.(2002). Global Public Good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uropean Affairs, République Française.(2011). Development Cooperation: a French Vision.
노르웨이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08a). Climate, Conflict and Capital: Norwegian Development Policy Adapting to Change(Report No. 13(2008~2009) to the Sorting).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08b). Norwegian Development Assistance in 2008 - Priority Areas.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09). A more ambitious Norwegian development policy.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1a). Meld, St, 14(2010~2011) Towards greener development.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1b). Towards greener development: A coherent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policy.
네덜란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0). Dutch international support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1a). Policy Agenda 201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1b). Result in Development 2009~201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1c). Letter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resenting the spearhead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네덜란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1d). Letter to parliament of 10 June 2011 from the Minister for Europea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Asylum Policy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미국	Department of State & USAID.(2010). Leading Through Civilian Power(The First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2011a) Fact Sheet: U.S. Global Development Policy(September 22, 2010).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2011b). President Obama's Development Policy and the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2011c). President Obama's Development Policy and Global Food Security.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2011d). President Obama's Global Development Policy and the Global Health Initiative.
	USAID.(2011a). USAID and the President's Global Development Policy.
	USAID.(2011b). USAID and the President's Global Development Policy.(홈페이지).
	USAID.(2011c). USAID POLICY FRAMEWORK 2011~2015.
일본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0).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ite Paper 2010).
핀란드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2007). Development Policy Programme 2007: Towards a Sustainable and Just World Communit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2011). Finland's Development Cooperation 2010.
독일	BMZ.(2001). Poverty Reduction—a Global Responsibility Program of Action 2015, The German Government's Contribution Towards Halving Extreme Poverty Worldwide.
	BMZ.(2004). Towards Halving Poverty Second Interim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Action 2015.
	BMZ.(2011). German development policy at a glance.
아일랜드	Government of Ireland.(2006). White Paper on Irish Aid.
캐나다	CIDA.(2002). Canada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A policy statement on strengthening and effectiveness.
	CIDA.(2007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07~2009.
	CIDA.(2007b). Notes for a Speech by the Honorable Josee Verner, Minist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Globalization and Economic Solidarity: Seeking a Better Balance for the Opening Luncheon of the Conference of Montreal.
	CIDA.(2010). Report to Parliament on the Government of Canad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09~2010.
	CIDA.(2011a). Report to Parliament on the Government of Canad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10~2011.
	CIDA.(2011b). 2010~2011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캐나다	CIDA.(n.d.). Securing the Future of Children and Youth: CIDA's Children and Youth Strategy.
	CIDA.(n.d.). Stimulat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CIDA's Sustainable Economic Growth Strategy.
	CIDA.(n.d.). Increasing Food Security: CIDA's Food Security Strategy.
뉴질랜드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10). Currents: The Year in Review.
뉴질랜드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11).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Statement: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덴마크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2010a). Freedom from Poverty Freedom to Change: Strategy for Denmark's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2010b). Priorities of the Danish Government for Danish Development Assistance: Overview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2011~20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2011). Priorities of the Danish Government for Danish Development Assistance: Overview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2012~2016.
스페인	AECID.(n.d.). AECID brochure NIPO:502-09-058-9.
	AECID.(2011a). Economic Growth to Reduce Poverty.
	AECID.(2011b).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AECID.(2009). 2009~2012 The Master Plan of the Spanish Cooperation Main Guidelines.
오스트리아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ustrian Development Agency.(2011). Report 2009 Austri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ustria(2010).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n Development Policy 2010~2012.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ustrian Development Agency(ADA).(2011). Accra Agenda for Action Report on the Austrian Action and Implementation Plan 2009~2011.
	Austrian Federal Chancellery.(2003). Federal 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2002), including its Amendment(2003).
호주	AusAID.(2006). Australian Aid: Promoting Growth and Stability. AusAID, Canberra, Australia.
	AusAID.(2011a). An Effective Aid Program for Australia Making a real difference-Delivering real results.
	AusAID.(2011b). Annual Report 2010~011. AusAID, Canberra, Australia.
벨기에	Belgian Development Agency.(2011). Annual Report 2010.
	Belgian Technical Cooperation(BTC).(n.d.). Belgian Development Cooperation takes up the challenge: 8 Projects of 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탈리아	Italy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1). 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룩셈부르크	Luxembourg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Lux-Development).(n.d.). Lux-Development brochure.
포르투갈	
그리스	

주: 저자, 발행 년도, 문서제목만 간략하게 정리하였으며, 정확한 문서 정보는 참고문헌 참조.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영문자료 부족으로 분석 불가.
출처: 저작작성

1. 국가별 글로벌 공공재 정책 및 지원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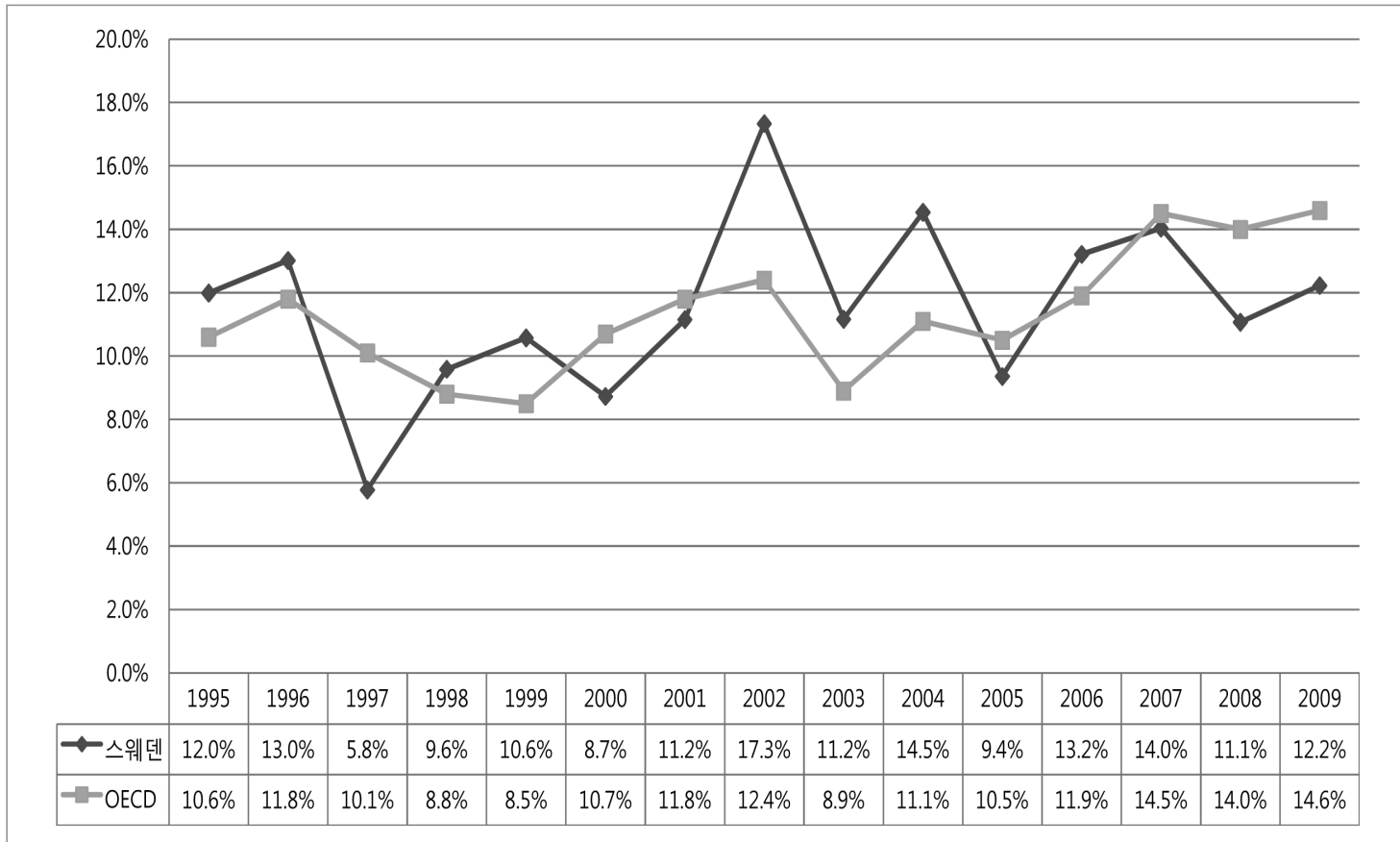
1) 스웨덴

(1)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표 10]을 보면 스웨덴의 전체 ODA 지원액에서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7년에는 5.8%를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하여 2002년에는 17.3%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다시 9.4%로 하락하는 등 변동이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OECD DAC 회원국의 글로벌 공공재 지원 평균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09년에는 전체 ODA 지원액의 12.2%에 해당하는 4억200만 달러를 글로벌 공공재에 지원하였다.([표 11] 참조)

분야별로 살펴보면([표 12] 참조) 1995~1999년에는 글로벌 공공재 중 인류공동 자산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 60%가 넘는 지원을 하여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 졌으나, 2005~2009년에는 지식생산 및 전파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이(약 40%) 이루어지고 있다.

[표 10] 스웨덴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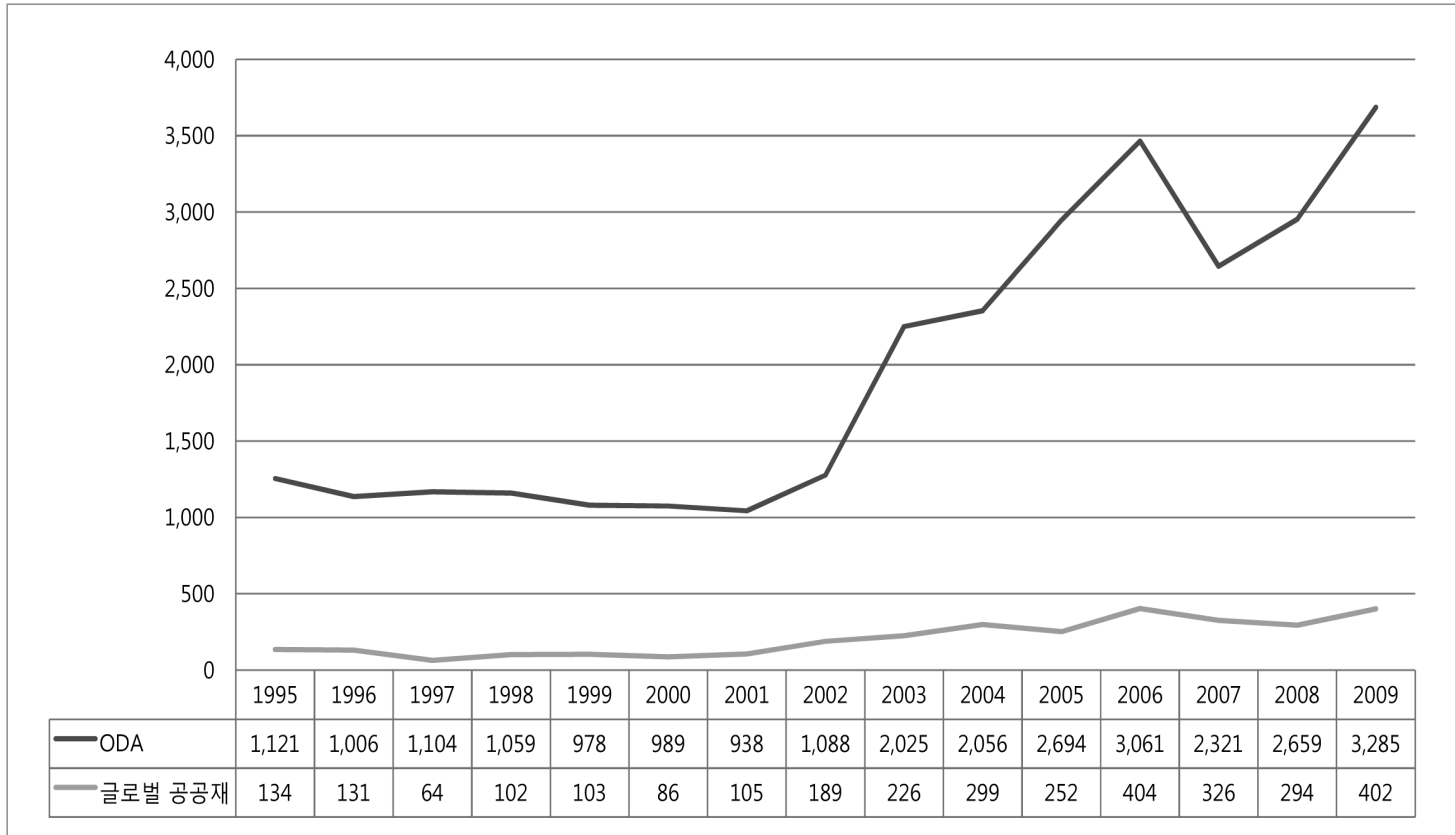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11] 스웨덴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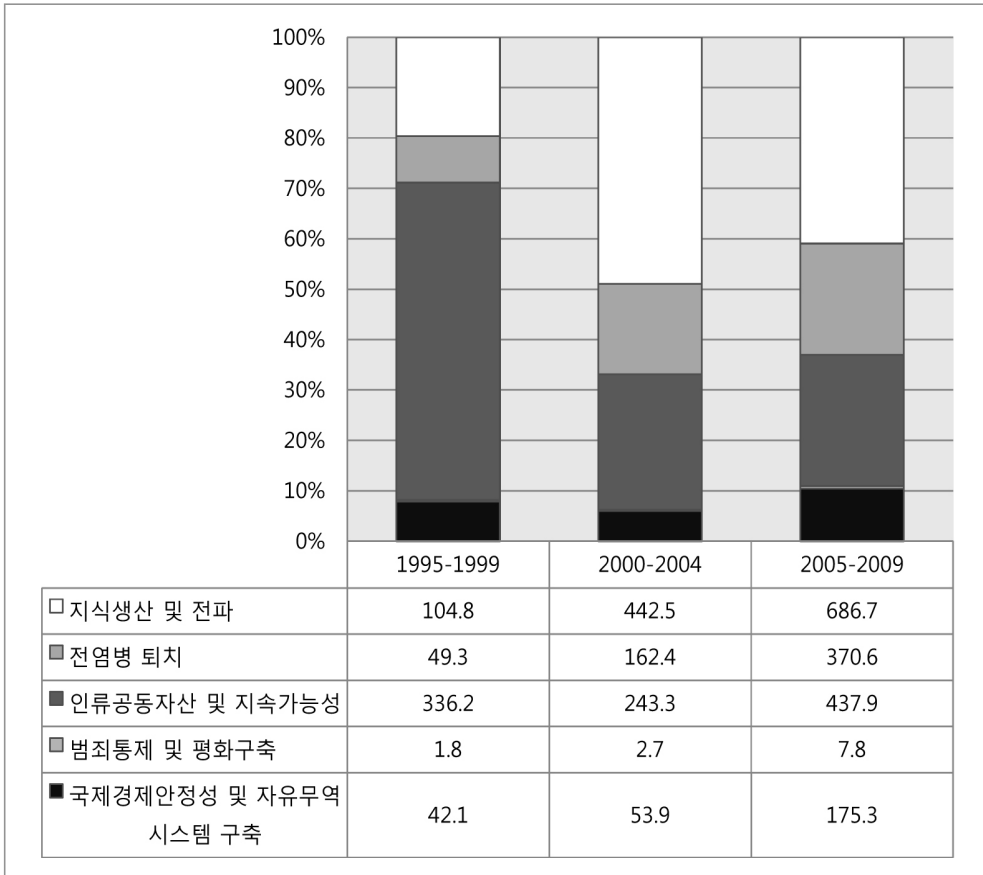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12] 스웨덴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2) 글로벌 공공재 정책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스웨덴 외교부는 글로벌 공공재를 개발협력 정책의 중점분야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의 노력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스웨덴은 2003년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을 확보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공공재 국제 전담 팀(International Task Force on Global Public Goods)’을 창설하고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전담팀과 관련하여 스웨덴은 동 년도에 프랑스와 협정 체결을 통해 공동 연구 수행을 합의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이 전담팀은 국제사회의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정책 수립자에게 글로벌 공공재가 어떻게 평가되고 공급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담팀의 연구는 2006년에 종결되었고, 글로벌 공공재 전반에 관한 보고서와 세부 섹터에 관한 보고서 6개를 발간하였다. 전담팀의 연구와 스웨덴 외교부가 글로벌 공공재로 선정하고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한 세부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전염병 퇴치
- 기후변화
- 국제경제안정성
- 국제통상시스템
- 평화와 안보
- 지식생산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균형

스웨덴 외교부는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이 부족한 이유로 주권, 국가별 선호와 이해관계 상이성, 무임승차 문제, 가장 약한 연결고리(Weakest link)⁴⁶⁾, 총체적 노력의 필요성 이렇게 5가지를 뽑고 있다. 주권과 관련하여서, 국제사회는 개별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를 규제하는 규범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 문제의 경우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국가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공공재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한 것과, 무임승차 문제, 가장 약한 연결고리, 모든 국가의 총체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을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공급방법에 따른 글로벌 공공재 분류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앞의 문제를 극복하고 글로벌 공공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스웨덴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및 활용을 관리,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할 국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46) 가장 약한 연결고리(weakest link)는 전염병 퇴치와 같은 모든 국가의 동시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에서 문제해결에 동참하지 않는 혹은 동참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다.

비용과 정치적 노력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역할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려온 선진국이 담당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확고한 정치적 신념과 글로벌 공공재의 확산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공공재를 원활히 공급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앞서 지적한 개별국가의 정치적 리더십 만에 의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스웨덴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위한 전담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공공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서도 비용이 필요하며,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재정마련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글로벌 공공재 세부 섹터별 주요 정책

가. 전염병 퇴치

스웨덴 외교부는 전염병 퇴치를 위한 지원전략은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다음의 5가지 단계를 통해 글로벌 준비-대응체계(global preparedness-to-response chain)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준비단계: 효과적인 백신 생산 및 배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전염병 발병 초기단계에서 항 바이러스 약품의 전략적 사용방법 마련
- 예방 및 치료단계: 환자에게 동일한 양의 약물 투여

- 감시단계: 지역보건센터와 WHO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감시 시스템 구축
- 보고단계: 투명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보고 시스템 구축
- 응답단계: 새로운 치료법과 약물,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의 역량개발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자금 지원

또한 수원국의 공공보건시스템의 구축하고 전염병을 치료하는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백신 개발과 전염병 치료법에 대한 연구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나. 기후변화

스웨덴 외교부는 기후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탄소세 도입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시에,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새로운 재원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은 탄소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를 주도하는 동시에 다음의 4가지 중점 분야에서 지원전략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및 거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각각 상황에 맞는 목표를 정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청정에너지 기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
- 기후변화 적응기술: 기후변화에 잘 견디는 농작물 종자 제공, 필요한 자금 지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을 지원
- 역량강화: 기후변화 적응, 청정에너지 개발 및 사용, 탄소거래시장 구축 및 활용, 국제규범 적용 등을 위한 인력의 역량강화 지원

다. 국제경제안정성 및 국제통상시스템

스웨덴 외교부는 국제금융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고, 국제경제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을 글로벌 공공재

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웨덴은 위기 예방을 위해 강력한 거시경제정책, 금융정책 및 환율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다자감시기구를 창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환율 모니터링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위기관리와 돈세탁 방지를 위해 OECD, IMF 등의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IMF의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2006년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통상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는 농업분야 협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빈곤국의 수출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무역역량 강화의 차원에서 인프라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라. 평화와 안보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테러 방지, 핵 확산 방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마. 지식생산에서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균형

스웨덴 외교부는 지식은 한번 생산되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글로벌 공공재의 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식도 글로벌 공공재이기 때문에 시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경우 과소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지식생산과 관련된 연구분야에 투자가 어려우며, 현재의 지적재산권 보호법이 기존의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 개발도상국들이 지식의 향유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식생산 및 향유를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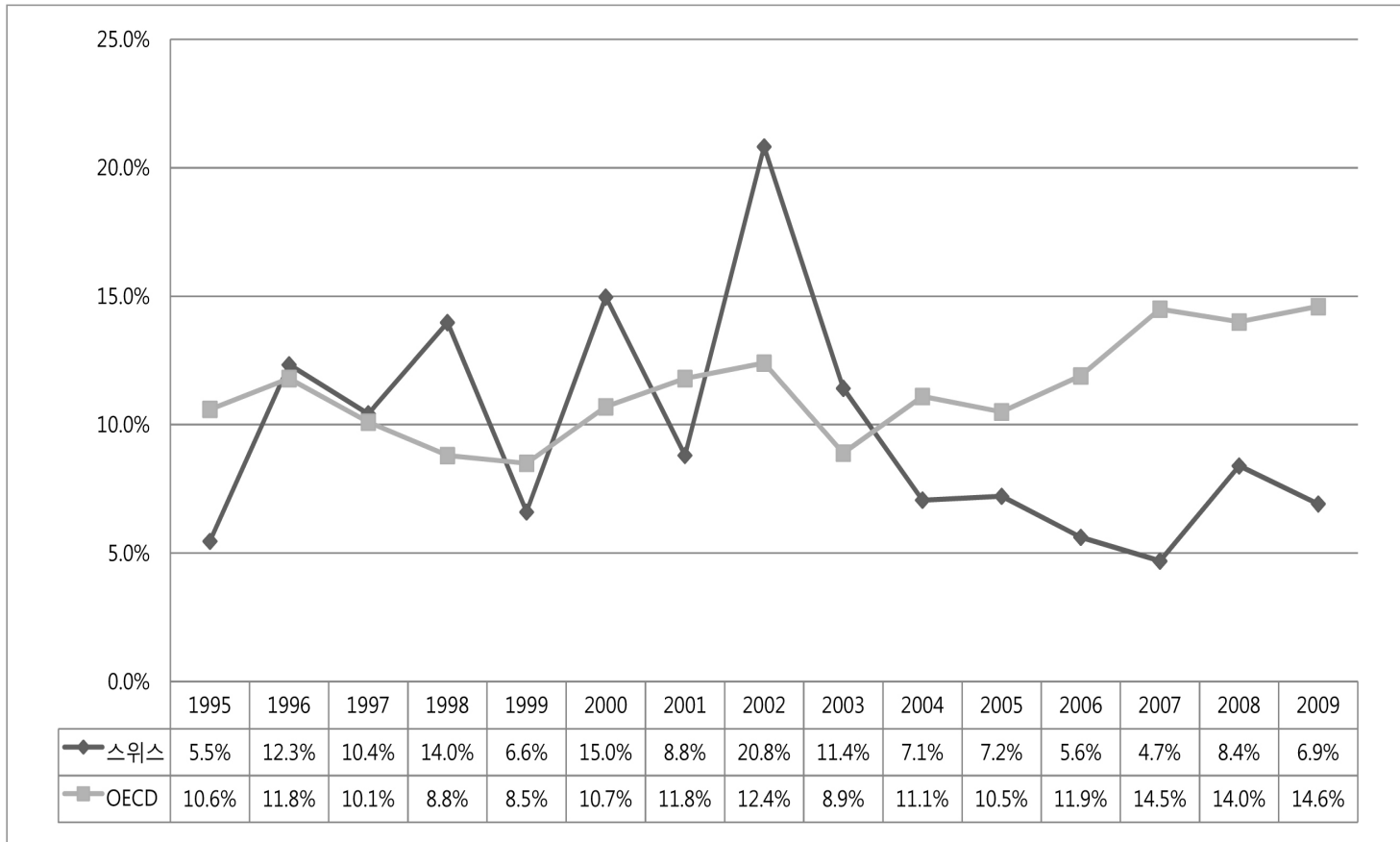
2) 스위스

(1)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스위스는 1998, 2000, 2002년을 제외하고는 OECD DAC 회원국의 평균 지원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ODA를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2002년에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 20.8%를 지원한 이래 지원비중이 점차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6.9%를 기록하였다.([표 13] 참조)

분야별로는 살펴보면, 스위스는 전통적으로 글로벌 공공재 중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다.([표 15] 참조)

[표 13] 스위스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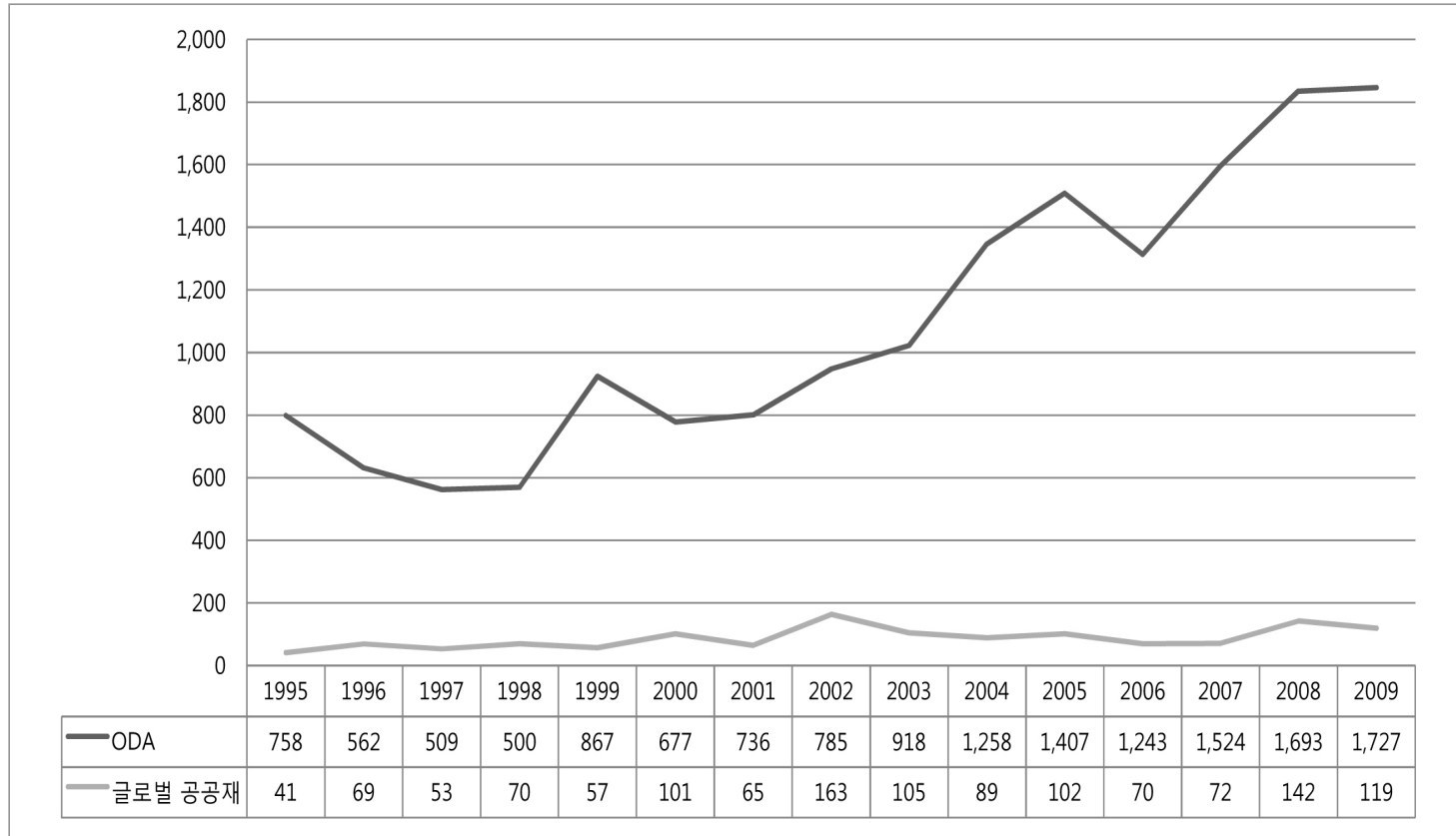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14] 스위스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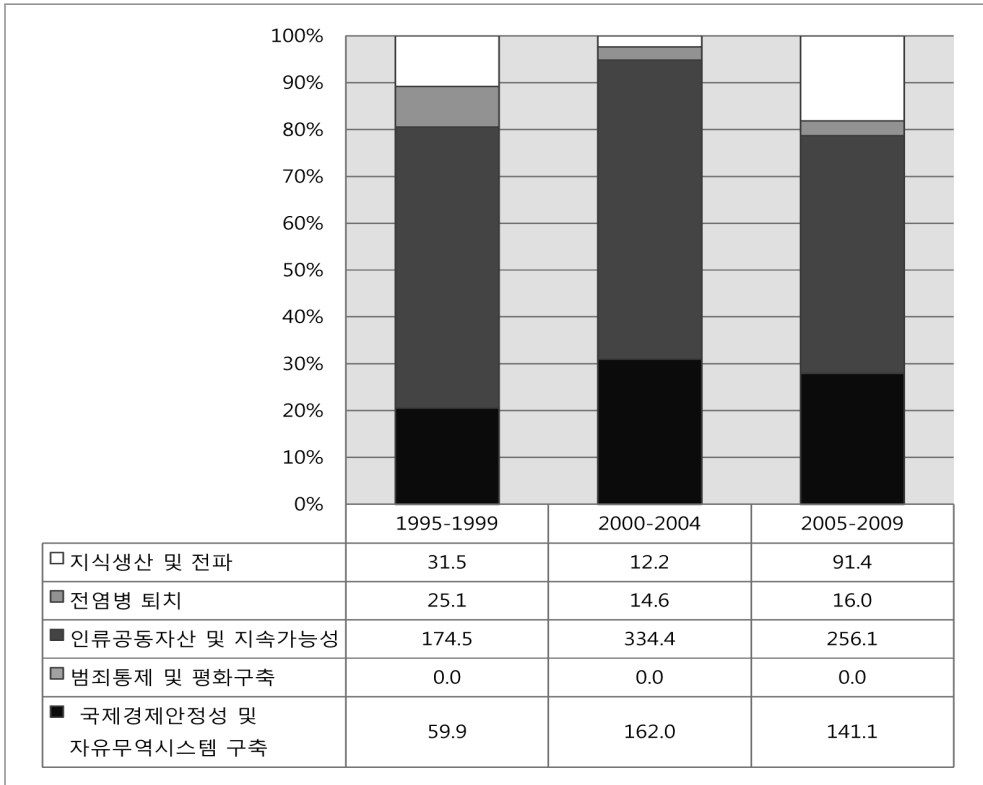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15] 스위스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2) 글로벌 공공재 정책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가. 세계화와 글로벌 이슈의 인식

스위스 경제부 산하 경제사무국(State Secretariat for Economic Affairs, 이하 SECO)과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이하 SDC)⁴⁷⁾는 세계화가 세계적 차원의 이슈와 과제를 다량 발생시켰다는 것을 인

47) 스위스의 원조체제는 분권화되어 있으며, 연방정부의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SDC)과 경제부 산하 경제사무국(SECO)에서 대부분의 원조를 집행하고 있다.

식하고 이에 대한 개발협력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정책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⁴⁸⁾

SECO는 사람, 자본,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에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국가 경제간의 상호 연관성이 세계적 차원의 이슈와 과제를 다량 발생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안들은 교육, 의료, 안보, 문화, 경제, 정치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세계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국가 내 자체적 해결이 어려우며, 국제적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이슈의 개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를 확실하게 정의할 보편적인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글로벌 이슈들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글로벌 이슈는 지역적,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글로벌 이슈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이슈들이 지닌 세계적인 특성 때문에 이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 글로벌 이슈는 지역적 접근보다는 주제에 따른 섹터별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 글로벌 이슈의 해결은 국제적 협력, 그리고 국제적 표준과 기준(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요한다.
- 운영상의 측면에서 글로벌 이슈는 다각적이고 다국가적인 접근을 요한다.

나. SECO 글로벌 공공재 정책의 기본 원칙

개발도상국이 세계화에 수반되는 위험에 굴복하지 않고 세계화로부터 이득을 취하도록 돕기 위하여 SECO는 다음 4개의 주요 영역에서 안정된 경제적 프레임워크 또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고 있다.

- 거시경제적, 재정적 프레임워크 또는 환경
-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금융과 프레임워크 또는 환경

48) SCD와 SECO는 기후변화, 식량안보, 이주, 물 부족, 경제 거버넌스를 5대 글로벌 도전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 무역 촉진, 국제적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의 확대
-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민간 부문의 발전

각각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SECO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위한 자금조달·협조금융 수단과 기술적 보조수단의 조합이다. 구체적인 활동은 모든 개발도상국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적 혹은 세계적 특성을 가진 일반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중점협력국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양자 프로그램으로도 구성되어 있다. 협력 대상 분야와 관련하여 SECO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제적 성격을 가진 사안들에 집중되어 있다.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 중 SECO는 다음의 사안에 집중하고 있다.

- 천연 자원과 환경 문제: 기후변화, 삼림파괴, 생물다양성의 실종,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부족
- 인간 개발: 빈곤, 새천년개발목표(MDGs), 안전하지 않은 물 및 위생 결핍
- 세계 경제: 관세로 인한 무역장벽, 돈세탁, 금융 불안정, 거시경제적 불안정, 지적 재산권의 부족, 투자의 흐름
- 글로벌 거버넌스: 경제적 거버넌스, 국제 금융구조, 세계적 다자 기관, 글로벌 파트너십

(3) 글로벌 공공재 정책 이행 방안

SECO는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가. 양자 프로그램

SECO는 세계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적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자, 우선순위 국가에 집중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양자 지원은 세계적으로 정의된 원칙, 표준, 기준을 국내로 도입하는 데 집중하여 협력국들이 세계 경제로 통합되는 것에 대비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의 조정, 일관적인 국내 정책 개발, 기술 이전, 역량개발, 기관 관리 등을 통해 해당 국가들이 국제적 맥락 속에 통합되는 일을 보조할 수 있다. 운영(Operational) 측면에서 볼 때, 양자 프로그램은 스위스가 제공하는 계획된 수단과 부가가치에 따라 양자나 다자 집행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SECO는 수혜국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특정 지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 프로그램으로 주로 혜택을 보는 국가들은 SECO의 7대 하위 중간소득 국가이다(남아프리카, 콜롬비아, 이집트, 가나, 인도네시아, 페루, 베트남). 양방향 프로그램은 또한 SECO에 중요한 다른 국가에도 도입될 수 있는데, 특히 해당 국가와 스위스의 통상 관계(자유무역협정)나 그 국가가(BRICs의 경우와 같이) 스위스 경제에 제공하는 잠재력과 관련해서, 혹은 SDC가 지정한 중점국가에서의 보완조치로서 시행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개발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저소득, 중소득 국가에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SECO의 양자 개입은 글로벌 이슈의 기원과 대면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로부터 수혜를 입는 인원의 숫자와 그 승수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양자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어 세계적 차원의 사업으로 나아가게 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나. 세계적, 지역적 실행 프로그램

SECO는 세계적, 지역적 실행 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mes of a global and regional nature)을 통해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개발도상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다수의 원조국가를 상징하는 국제 거버넌스 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SECO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의 표준과 기준을 정의하는 국제 정책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SECO가 선정한 7개 중점협력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자 프로그램을 공고히 구축함과 동시에 국제적 표준과 기준이 다수의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적, 지역적 실행 프로그램의 세부

분야는 SECO의 전략과 특화분야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행상의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들은 세계적인 성격을 띠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세계적, 지역적 프로그램을 통해 SECO는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와 양자 공여국과 협력함으로써 지렛대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대로, SECO는 우선국가들과의 양방향 접근을 통해 얻은 기술적 전문지식과 특정한 국가적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한다.

이렇듯 글로벌 이슈의 등장과 부각에 대한 SECO의 대응은 중대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두 가지의 보완적 접근법에 기반하고 있다. 양자 프로그램의 경우 협력국가의 국가 프레임워크 및 환경을 향상시키고 해당 국가가 글로벌 이슈에 더 능숙하게 대처하여 세계 경제에 통합되도록 보조하고자 한다. 한편 세계적, 지역적 프로그램을 통해 SECO는 글로벌 이슈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규칙, 규범을 정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하면서 SECO는 양자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구체적 전략과 지식을 사용하여 글로벌 이슈의 해결과정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3) 영국

(1) 글로벌 공공재 지원현황

선행연구(DFID 2003)에 의하면 DFID의 전체 원조 지원액 중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8~9%가 상승하였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식생산 및 전파와 관련된 분야는 1990년대부터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건과 관련된 분야는 지원 비율이 높아졌다고 밝히고 있다.⁴⁹⁾

49) 이 연구에서 선정한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가 본 연구에서 선정한 글로벌 공공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글로벌 공공재 비율의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표 16] DFID 글로벌 공공재 지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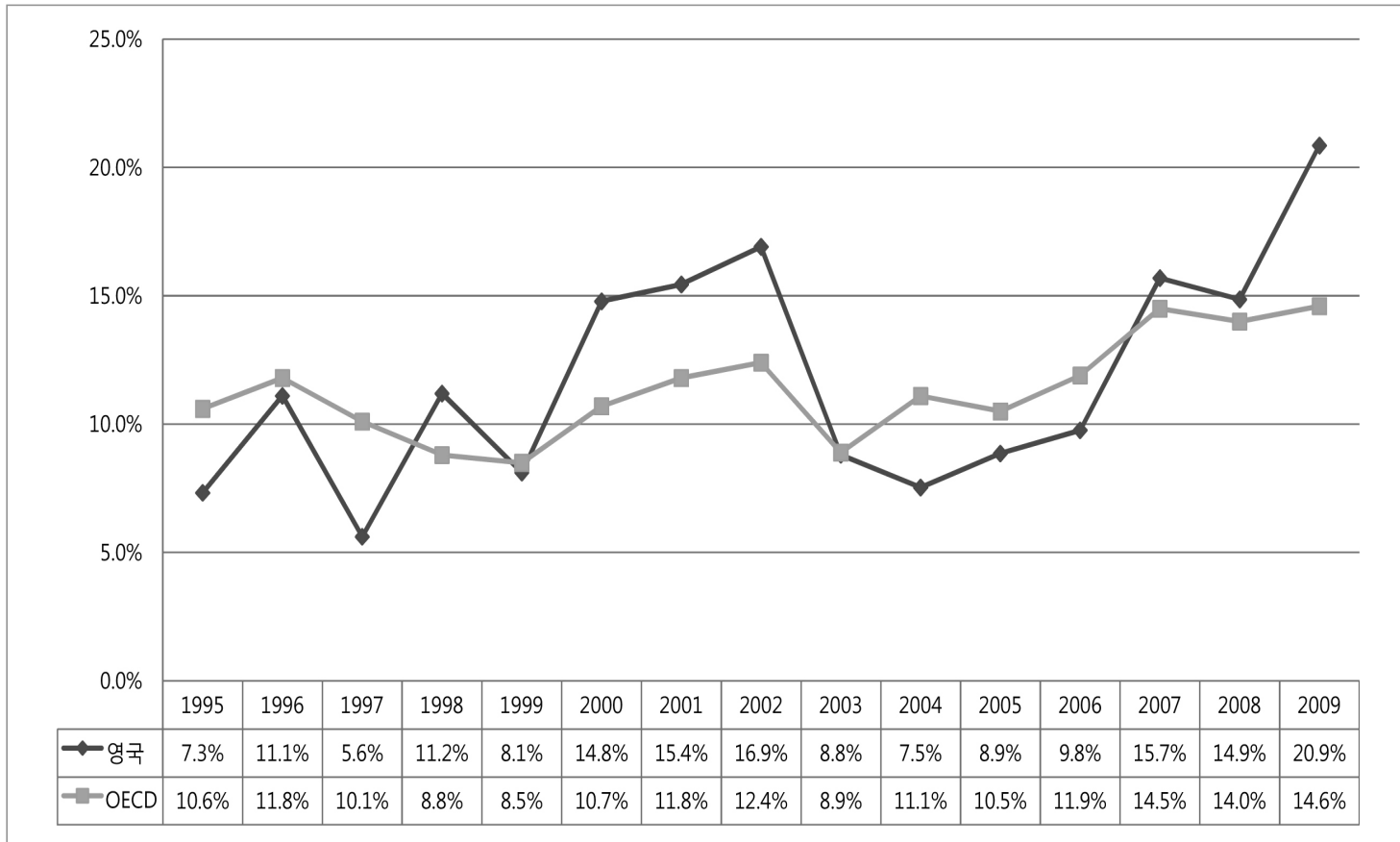
	1997~1998	2001~2002	2003~2004
글로벌 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	6.9	8.3	8.3
- 연구·지식(Research·Knowledge)	4.2	4.4	3.5
- 환경(Environment)	1.4	1.3	1.7
- 무역(Trade)	0.01	0.2	0.3
- 보건(Health)	1.3	2.4	2.6

출처: DFID 2003, p. 8.

[표 17]과 [표 18]은 영국이 제공한 글로벌 공공재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7]과 [표 18]을 보면, 영국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은 1995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에 ODA 전체 지원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47억 4,200만 달러가 줄어들었으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은 1억 2,500만 달러만 감소하여 지원 비율이 9.8%에서 15.7%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2009년에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 비율이 20%까지 증가하였다.

[표 19]의 분야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영국은 전염병 퇴치가 글로벌 공공재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글로벌 공공재 중 전염병 퇴치(약46%),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약 19.5%), 지식생산 및 전파(약 19.4%),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7.8%)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표 17] 영국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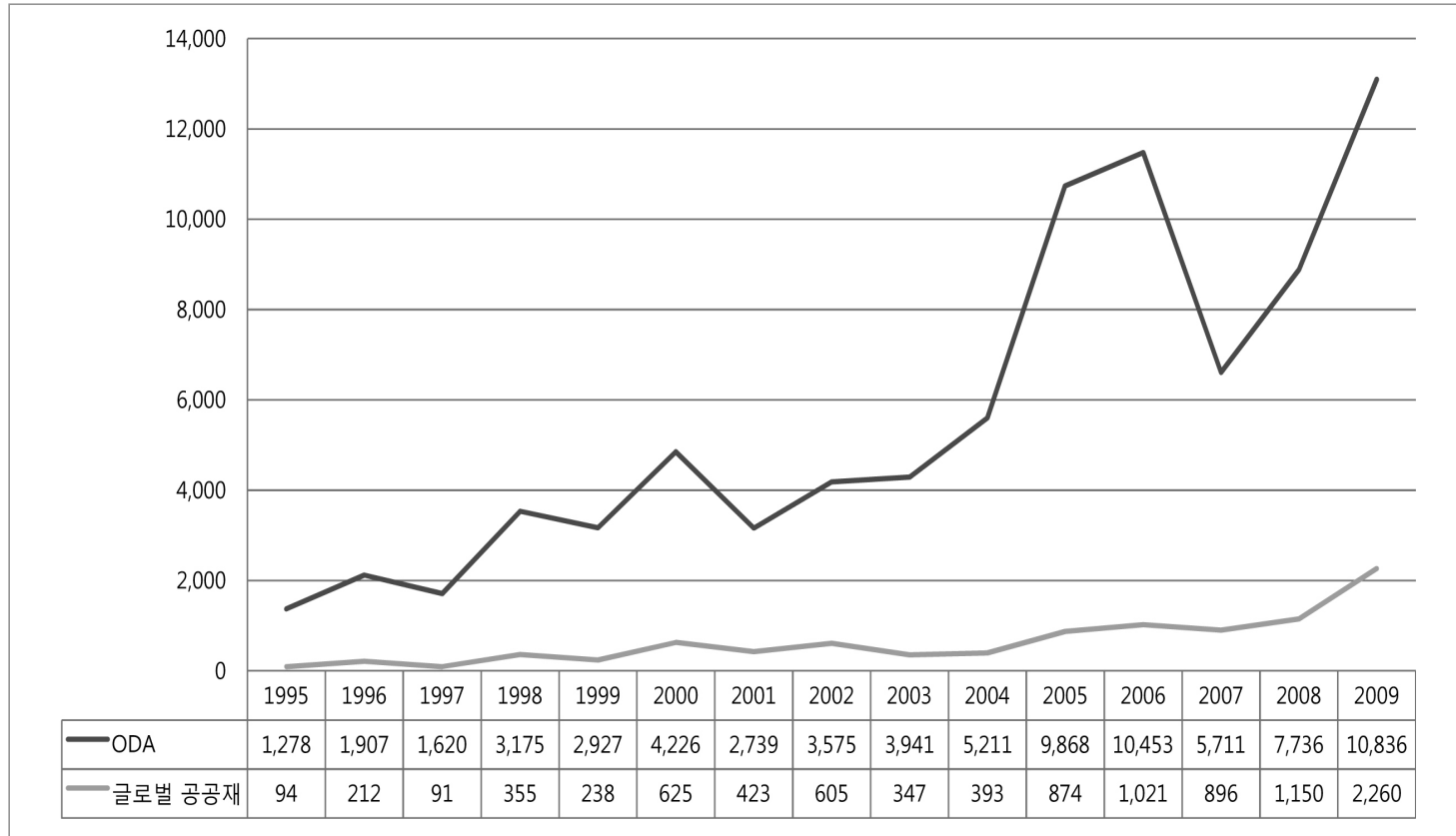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18] 영국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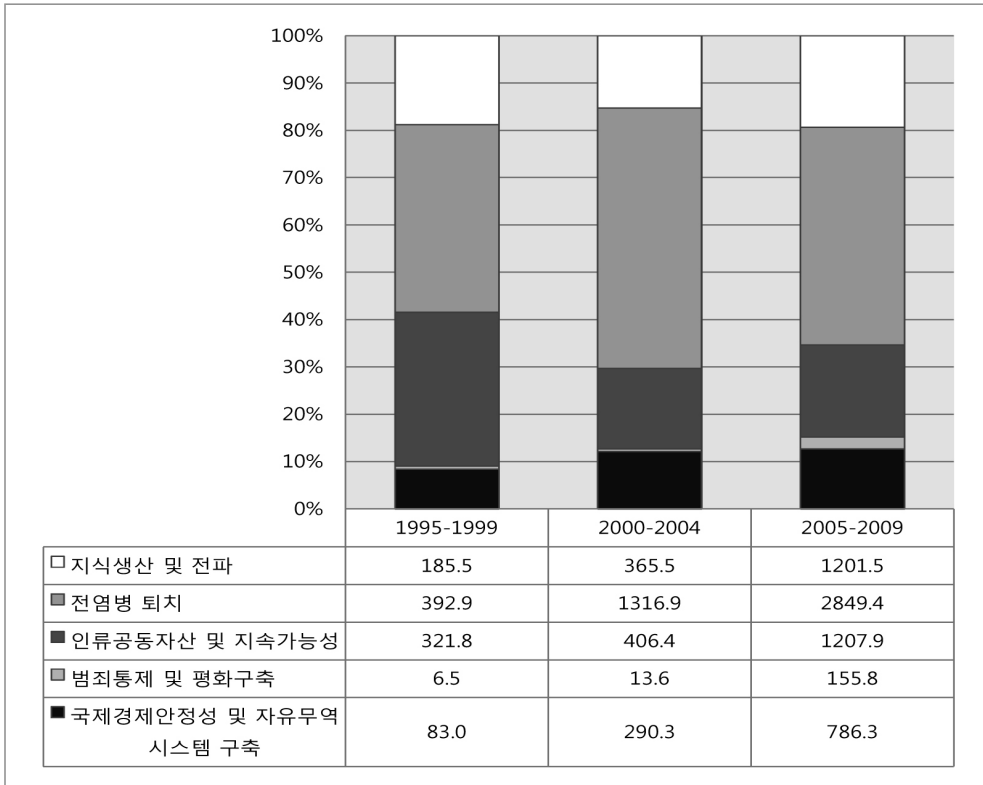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19] 영국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2) 글로벌 공공재 정책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DFID는 오늘날 전세계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 과제는 공정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것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평화구축 이라고 보고 있다. 이 3가지 도전과제의 해결 및 달성이 없이는 MDGs 달성도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글로벌 공공재 문제의 경우 상호의존적인 특징으로 인해 빈곤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009년에 발간한 백서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DFID(2003)와 영국정부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MDGs 달성과 빈곤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개발협력 백서에서 밝히고 있다.

- 빈곤국으로 자원을 이전시키는 방법보다 농업연구를 통해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 한 명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연구가 있다.
-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 한 명을 단 돈 186달러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전염성 질병의 통제가 가능해지면, 2010년 단 1년 동안 330만 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개발도상국 빈곤층 약 20~30%는 자연생태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백서에도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내용이 일부 다루어졌지만, 2009년에 발간한 백서에서는 그 내용이 보다 발전되었으며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백서가 발간되어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은 지속적인 성장, 공동안보, 기후변화 세가지를 주요 글로벌 공동과제로 보고, 개발협력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공공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접근 및 노력이 필요한데, DFID도 지난 10년간 수원국 정부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국제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의 접근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전염병 퇴치, 세계 평화구축 등의 글로벌 공공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협력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DFID는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DFID는 2011년 1월 글로벌 펀드 담당 부서(Global Fund Department, GFD)를 만들었다. GFD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다자원조 검토(Multilateral Aid Review)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영국 정부의 중점 정책과 DFID의 중점 지원분야를 고려하여 글로벌 펀드를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DFID는 글로벌 펀드 등의 글로벌 차원의 재원마련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다음 세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글로벌 차원의 대응이나 재정지원이 있어야만 개발이 가능한 분야인가?
- 지원으로 인해 어떠한 효과 발생이 예상되는가?
- ODA와 DFID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나?

DFID는 글로벌 이슈에 관련된 자금 지원 및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ODA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한 민간기금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DFID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을 결정한 경우,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지식 생산 및 전파와 같이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되는 분야와 빠른 시장진입 등의 이유로 지원의 시기가 중요한 자유무역시스템 관련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액이 급증할 수 있다.
- DFID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을 할 때, 각 국가별로 이행되는 지원이나 대응책들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원조계획 수립 및 이행 시 반드시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한편, DFID는 세계적 차원의 지원 및 대응과 개별 국가의 정책 및 사업 수행 사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적정한 글로벌 거버넌스 및 글로벌 공공재 재정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개발 성과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글로벌 공공재 세부 섹터별 주요 정책

가.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

최근 영국에서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는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이다. 그러나 부실한 경제적 규제,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영향, 조세 도피지와 관련 행동들로 인해 저소득, 중간소득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고통 받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DFID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DFID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꼽고 있다. 첫째, 전세계가 함께 보다 공정한 무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둘째, 개발도상국의 민간분야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정책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하며 셋째, 세계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농업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을 국제적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은 지난 3년 동안 10억 파운드를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및 무역에 지원하여 개발도상국의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향후 3년간 10억 파운드를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및 무역분야 성장을 위해 제공
- WTO 도하 무역협상의 빠른 종결을 위해 노력
- 개발도상국에 견고한 조세시스템 구축을 지원
- 개발도상국이 상업세 징수를 통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지원
- 개발도상국에서 자산이 부당하게 반출,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자산을 추적하여 환수하는데 투자
- 개발도상국의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과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협약(Anti-money Laundering Standards) 가입을 지원
- 기업 등 민간분야의 공정한 경쟁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 구축 지원

-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 지원
- 이주노동자의 고국 송금 수수료 인하 도모
- 농업연구를 위해 10억 파운드를 식량안보 및 영양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New Global Partnership for Agriculture Food Security and Nutrition)을 통해 지원하는 등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나. 공정 무역시스템 구축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지 않고 부국이 된 국가는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개발 정책에서 통상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무역 시장은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호무역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도하 라운드의 종결이 가장 중요하며, DFID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출보조금 등 교역구조를 왜곡시키는 보조금(trade-distorting subsidies)을 제거하고, 농업수입관세 인하를 위한 정책의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개발친화적인 도하 협상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협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기에, DFID는 최빈국의 의견을 WTO 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DFID는 앞으로도 빈곤국의 생산자 및 수출입업자를 위해 수출 비용을 줄이고 기존의 수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에도 2010년 예산의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 무역활성화 기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08년 4월 G20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약30억 달러를 세계은행에서 관리하는 글로벌 무역 유동성 프로그램(Global Trade Liquidity Programme)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개발도상국의 무역금융을 위해 5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영국은 이에 따라 약 12억불의 금액을 제공하였다.

DFID는 공정무역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꾸준히 노력해왔는데, 최근에는 세계공정무역기구와도 협력을 통해 빈곤국가의 생산자들이 생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보다 공정한 수출구조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영국정부는 조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관련부서(Office for Government Commerce)에서 공정무역 제품의 활용을 권고하고 있는 공공 조달 가이드라인을 발간, 배포하였다.

다. 공동 안보

DFID는 영국의 공동 안보가 전 세계에 모든 국가가 안정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가진 국가로 거듭나는 것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취약국에서 발생하게 되는 불안정성과 테러 등의 위험은 이제 해당 국가의 국경을 벗어나 다른 이웃 국가 및 전세계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약은 주로 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어 유럽과 미국사회 등으로 이동되어, 개인의 삶과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라. 기후변화 지식 공유 및 역량강화

기후는 우리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와도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따라서 현재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금 당장 취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게 위협적인 기후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DFID는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된 증거로 2007년 영국에서만 홍수로 인해 3조 파운드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DFID는 빠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기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현재의 불경기로 인한 손실보다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
- 60여 개의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 관련 정책 조언을 위한 기후변화 지식네트

워크(Climate Change Knowledge Network) 구축

- 기후변화 관련 대응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NGO 등 시민단체 지원 확대

〈저탄소 개발을 위한 투자〉

- 환경개선기금(Environmental Transformation Fund) 출자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기술 및 신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 2012년까지 다자개발은행이 청정기술개발을 위한 대출 및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
- 기후변화 혁신센터 시범 건립 및 청정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마련
- 개발도상국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촉진 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투자
- 산림파괴 방지 및 산림자원 관리를 위해 새로운 자금마련 방법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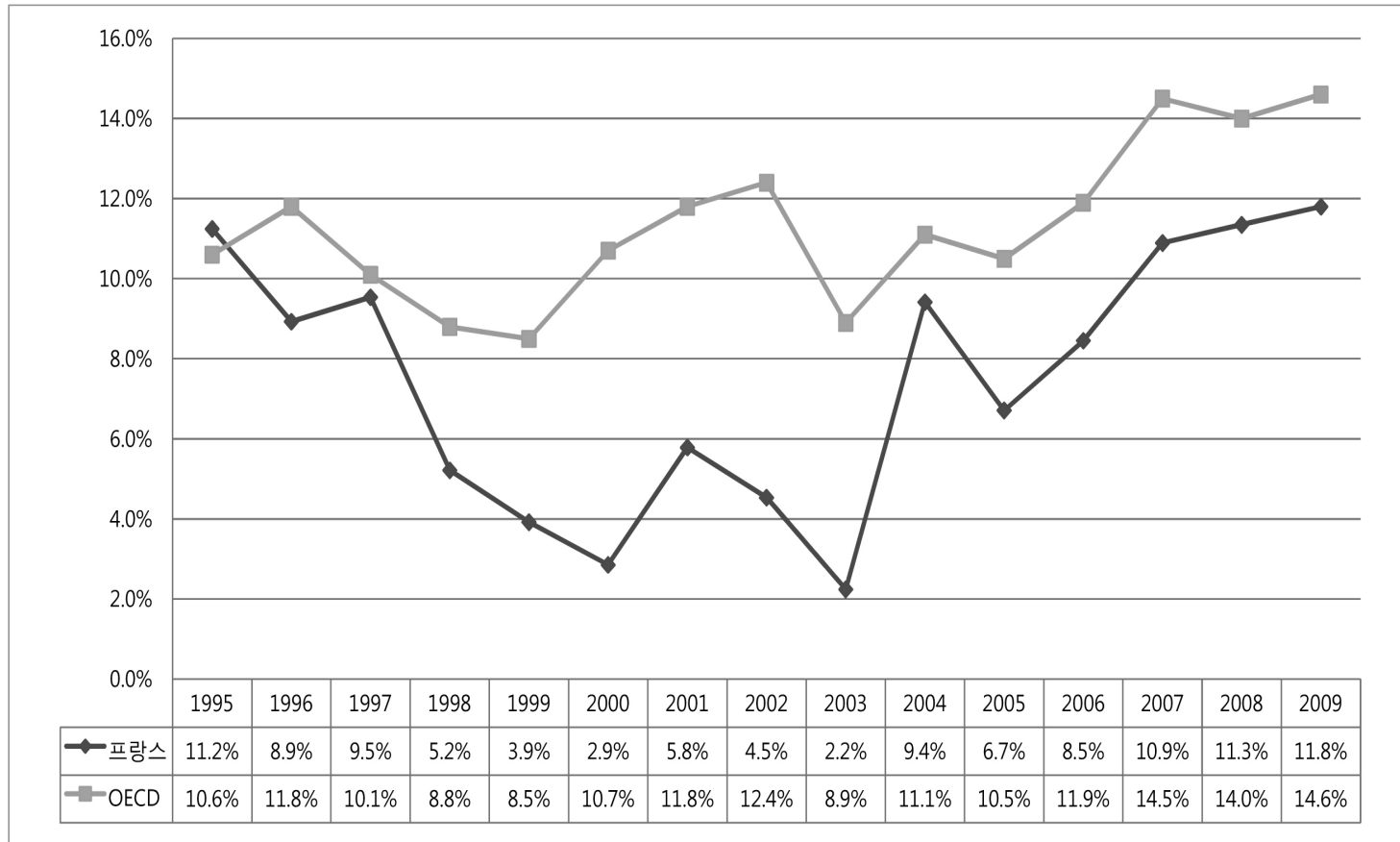
4) 프랑스

(1) 글로벌 공공재 지원현황

프랑스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 ODA 지원 비율이 OECD DAC회원국의 평균 비율보다 낮은 편이다. [표 20]을 보면, 1995년을 제외하고는 프랑스는 OECD DAC 회원국보다 글로벌 공공재 지원 비율이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2.3%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2003년 이후 공공재 지원 비율은 점차 상승하여 2009년에는 총 10억 8,100만 달러를 제공([표 21] 참조), 전체 ODA의 11.8%를 글로벌 공공재에 제공하였으나, 여전히 OECD DAC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표 22]는 프랑스의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지식생산 및 전파와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분야가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0] 프랑스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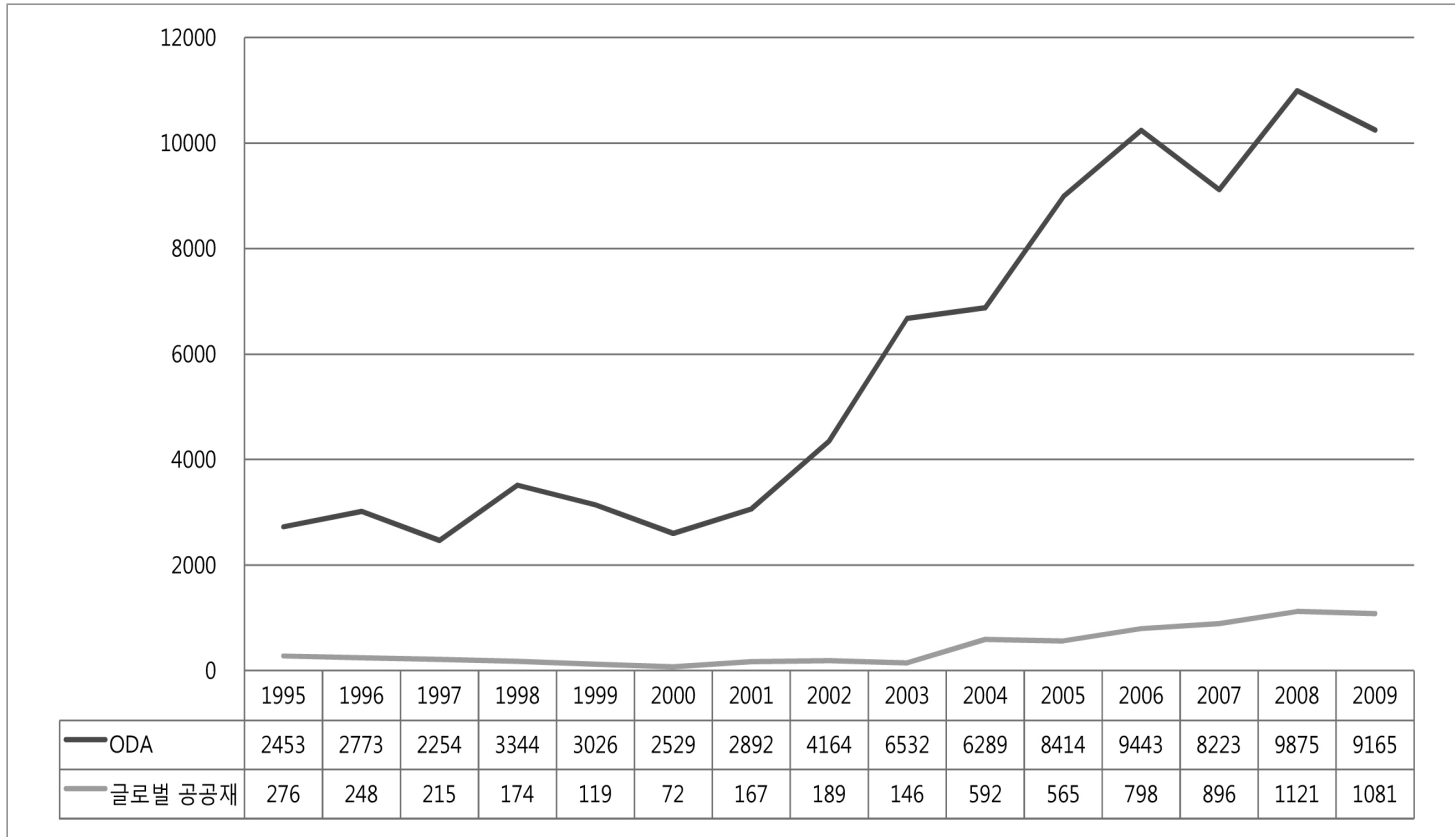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21] 프랑스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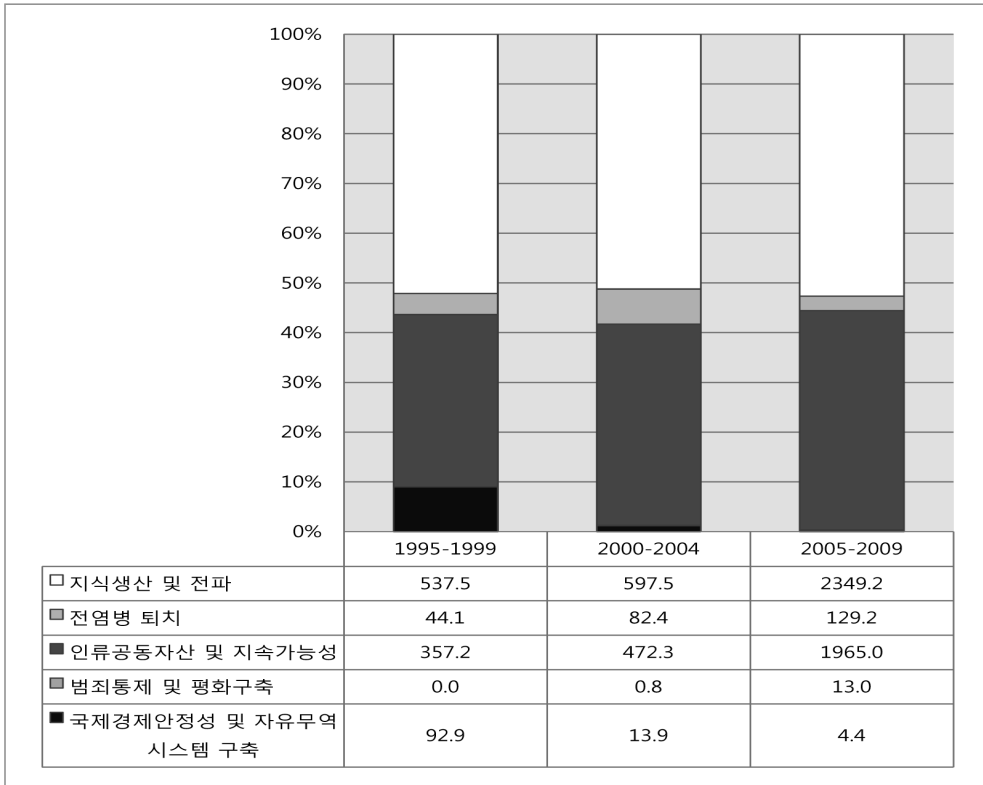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22] 프랑스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2) 글로벌 공공재 정책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프랑스는 스웨덴과 함께 2003년에 전담팀(Task Force Team)을 창설하여 공동으로 글로벌 공공재와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의 정책 수립 및 이행과 관련된 상세한 보고서를 프랑스 주요 원조정책 기구인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및 재정경제산업부(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y)에서 공동으로 발행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프랑스는 글로벌 공공재 관련 정책 수립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프랑스와 EU가 강조,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개발협력 분야(지역통합 지원, 생물다양성 등)
- 국제기구, 공여기관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야를 선정

즉, 글로벌 공공재 분야 중에서도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의 경우, 글로벌 공공재를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공급하는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는 섹터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범분야적 분석(cross-disciplinary theme-based analyses)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⁵⁰⁾

일반적으로 개발원조 공여주체의 경우 어떠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것인지 결정할 때, 공급이 이루어질 대상 국가에 부족한 글로벌 공공재가 어느 것인지 분석하고, 해당 글로벌 공공재 부족으로 인해 다시 세계적 차원의 악영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가진 공공재를 선택해서 공급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빈곤과 관련된 분야와 프랑스의 원조 우선연대국가군(Priority Zone of Solidarity)과의 지리적 근접성, 국제 지역 공공재 생산과의 일관성을 들고 있다.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은 지리적 비전이나 섹터별 정책 등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⁵¹⁾

글로벌 공공재의 경우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글로벌 공공재 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도상국 및 시민사회에서도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의 겨우 지난 2세기 동안 공여국에 의해 만들어진 공공정책 및 규칙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공재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한 포럼이나 회의를 통해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국제사회와 OECD DAC을 중심으로 하는 공여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도록 제시하고 있다.

50)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y, République Française 2002, p. 19.

51)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y, République Française 2002, pp. 19-20.

- 1국 1표를 보장하는 다자기구의 협상과정의 특징을 양자 원조에서도 보장하기 위해 노력
- 정부간회의에서 비정부기구(시민사회)의 참여 및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 토론회·협상 포럼에서 국가간, 공여국과 수원국 간의 보다 공정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

(3) 글로벌 공공재 이행방안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을 적용하여 개발협력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국가는 먼저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외교부와 재정경제산업부는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 이행을 위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해당 분야에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국내 정책에 사업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양자간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함.
- 다자공여기관 원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정지원의 형식으로 참여하며, 공여국과 다자기구 공동으로 사업 집행을 관리, 감독
- 양자원조보다 다자기구를 통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양자원조를 제공할 경우 다수 공여국 사이의 공동의 행동 및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사업이나 원조조화를 위한 조정의 노력이 요구됨.
- 공여국이 양자원조를 통해 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공여국이 국제사회 및 지역기구에서 해당 글로벌 공공재에 관해 주장한 입장과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기획,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4) 글로벌 공공재 세부 섹터별 주요 정책

프랑스 외교부와 재정경제산업부는 2002년 보고서 발간 당시, 시행 초기단계에서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을 적용할 분야를 7개 선정하였는데, 선정분야는 다음과 같다.

- 환경(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 분야와 같이 협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분야와 협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은 물, 산림 분야에 초점)
- 보건의료: 아프리카 지역 에이즈 퇴치에 중점
- 식량안보: 유럽협동정책(European cooperation policy) 중심
- 국제 지역 공공재와 글로벌 공공재 생산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통합 지원
- 개발 중심의 연구 조사
- 세계화로 인한 문화적, 언어적 충돌을 상쇄시키고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다문화주의, 다언어병용주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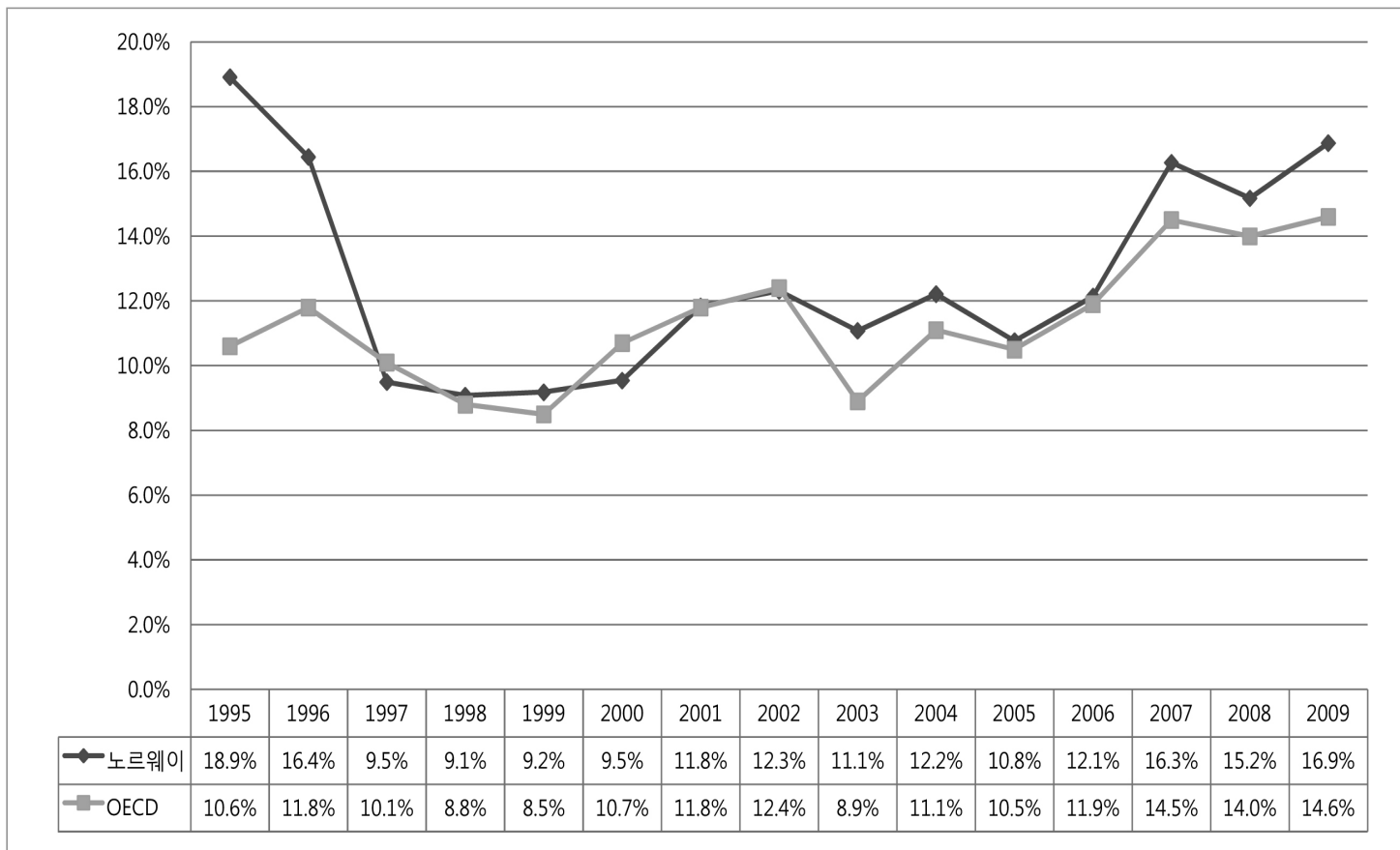
위의 7개 분야에는 정확하게 따지면,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물, 에이즈를 제외한 보건의료 분야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 외교부와 재정경제산업부의 개발협력분야 관심사와 국제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개발협력 분야를 반영하여 선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노르웨이

(1)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노르웨이는 OECD DAC 회원국과 비슷한 비율의 ODA를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노르웨이 ODA 지원액의 16.9%에 해당하는 39억 9,300만 달러를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 지원한 것을 [표 23]와 [표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중 53.6%는 인류공동자신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 21.9%는 지식생산 및 전파에, 19.1%는 전염병 퇴치에, 4.7%는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에, 0.7%는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에 사용되었다.([표 25] 참조)

[표 23] 노르웨이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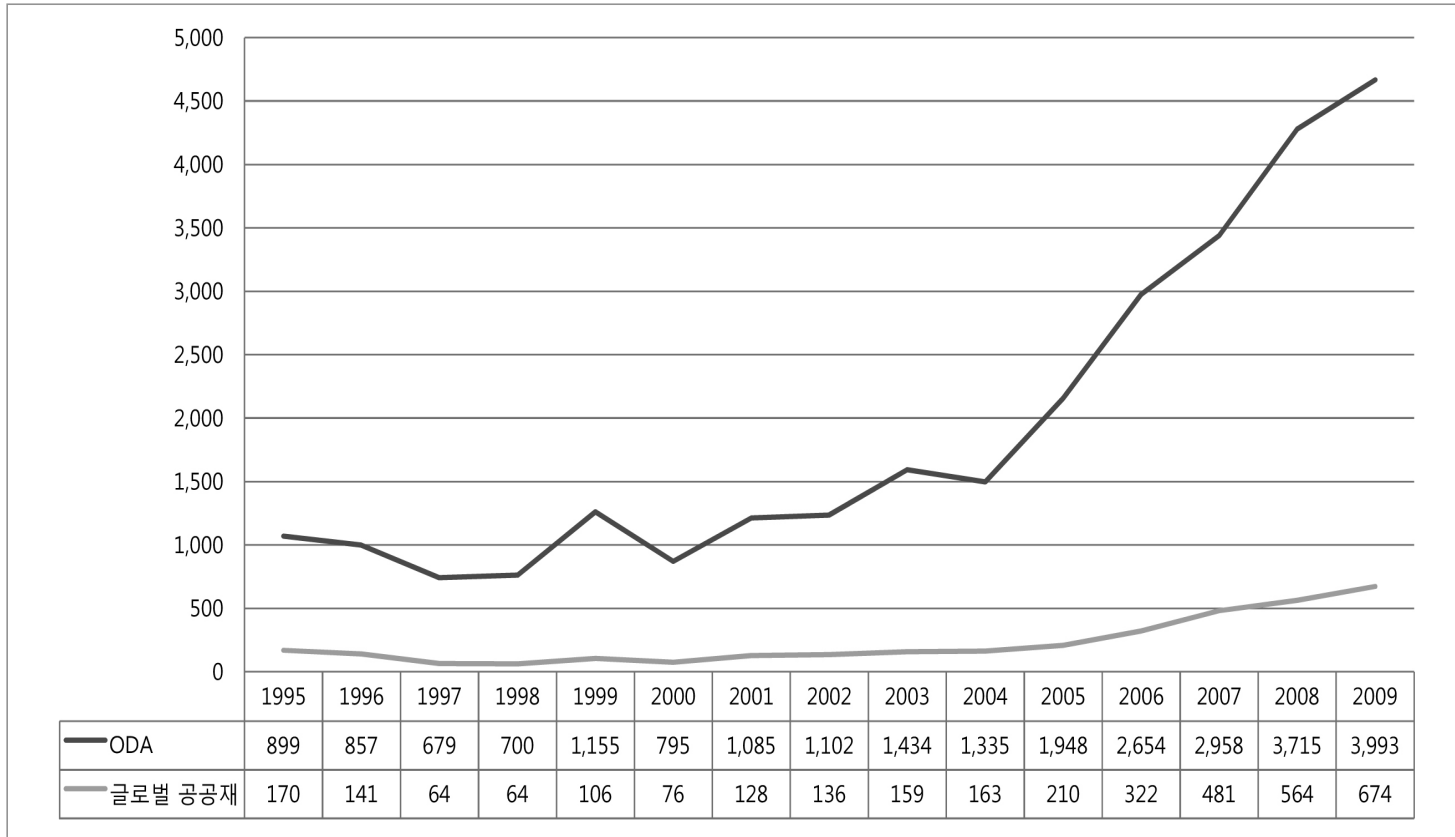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24] 노르웨이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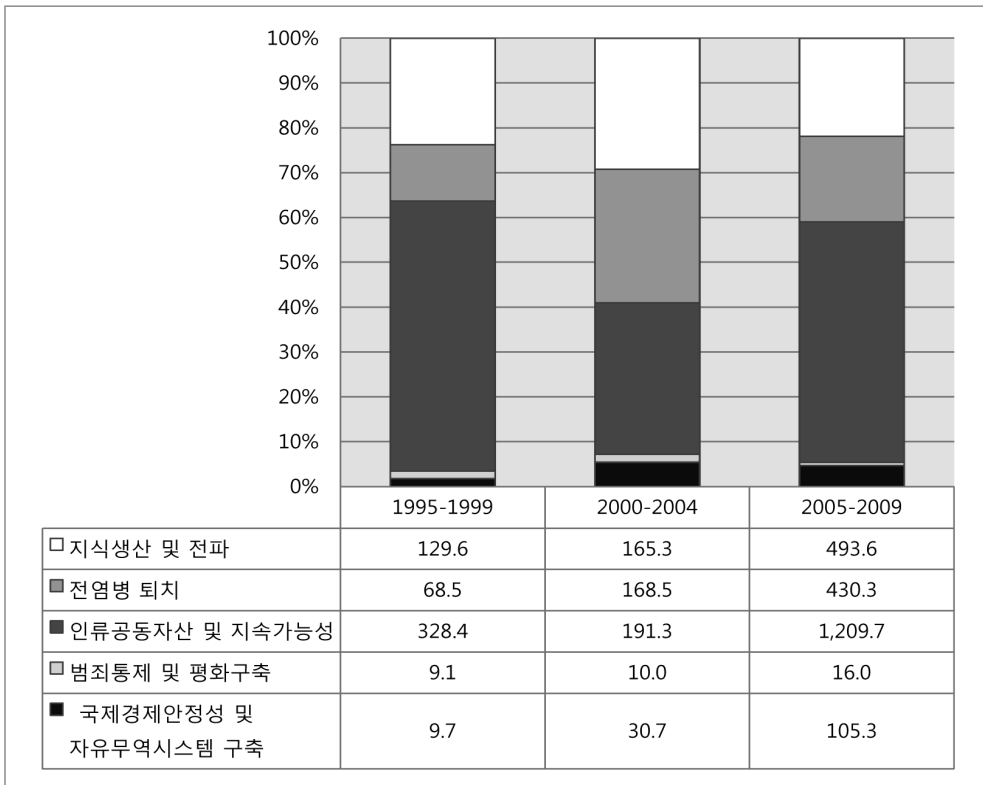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25] 노르웨이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2) 글로벌 공공재 정책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노르웨이 정부(외교부)의 개발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수립되었다. 노르웨이 정부의 개발정책은 현재 심각한 환경 문제의 하나인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훼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르웨이 정부의 노력은 빈곤퇴치라는 개발의 최종적 목표에 일조하는 방향으로 계획, 수립되었다.

노르웨이 개발정책의 두 번째 목표는 글로벌 공공재의 안전장치로서의 역할과 글

로벌 규범(global rules)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유엔은 이미 기후변화의 대응 없이 MDGs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으며, 그 외에 전염병과 같은 글로벌 공공재 관련 문제의 경우, 전지구적 차원의 공동 대응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르웨이 외교부는 글로벌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과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유엔이 전세계의 정치적 결단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모으는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존, 청정 공기, 세계 평화, 전염병 퇴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개발, 국제통상과 금융 안정성 등을 중요한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하고 있다.⁵²⁾ 이러한 글로벌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은 전세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는 개발정책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합의되고 이행되고 있는 국제 규범이 개발도상국의 국내법에 반영되어 이행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는 글로벌 공공재는 모든 국가에게 중요한 공공재이지만, 빈곤국에게는 그 중요성이 특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발협력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공공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각국 정부들은 보다 더 중요하며 이해관계가 더 큰 공공재인 기후변화, 평화, 안보,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등의 공공재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이 어려운 일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국내적으로 오랜 기간 이뤄져 왔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 원조자금(aid funds)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노르웨이는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수단들도 경우에 따라 원조의 정의에 부합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보

52)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8a, pp. 36-40.

건과 지식생산과 관련된 분야의 경우, 글로벌 공공재 강화에 도움이 되는 많은 수단들이 사실상 국가 공공재의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잠비아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노력은 잠비아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동시에 전세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노력에도 일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노르웨이 정부는 원조관련 예산으로 모든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타당하지도 않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어떤 분야의 글로벌 공공재 공급이 원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OECD DAC회원국 차원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되지 않은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마련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고 노르웨이는 주장하고 있다.

(3) 글로벌 공공재 세부분야 관련 주요 정책 소개

가. 글로벌 공공재로서 지식 생산 및 전파

노르웨이 정부는 글로벌 공공재로서 지식 생산 및 전파 분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 기후변화, 환경, 안보, 보건, 지식생산 및 연구와 같이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글로벌 공공재를 중점적으로 지원
- 글로벌 공공재 공급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보건관련 MDGs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보건서비스 통합을 위해 노력
- 공공재로써의 글로벌 지식 개발을 위해 노력
- 주요 국제개발협력분야의 고등교육 및 연구분야 역량 강화
- 기후변화분야의 경우 노르웨이 정부는 인도, 중국과의 협동 연구를 우선적으로 시행
- 수원국의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교육서비스 강화 지원

나. 기후변화

노르웨이 외교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전략은 2007년 발간된 백서(Norwegian climate policy, Report No. 34(2006~2007) to the Storting)와 2008년 1월 통과된 노르웨이 기후 정책 합의문(Agreement on Norwegian climate policy in January 2008)에 근거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노르웨이의 중점분야는 산림파괴 별채 감소, 청정에너지 개발, 탄소 포집·저장 기술 개발(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이다. 이 밖에도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저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 산림파괴 방지, 기후변화 적응 및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르웨이 환경분야 개발 행동강령(Norwegian Action Plan for Environ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은 노르웨이 개발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노력의 대표적인 예로 노르웨이 국제 기후·산림 이니셔티브(Norway's International Climate and Forest Initiative)가 있으며, 이밖에도 노르웨이 정부는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노르웨이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노력은 다음과 같다.

- 지구적으로 중요한 생태계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원
- 원주민(indigenous peoples)의 천연자원 사용 권리와 접근성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에서 천연자원의 투명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 화학약품, 천연자원, 생물다양성, 해양자원 등에 관련된 다자협약의 이행을 지원
- UNEP 천연자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와 관련된 협상에서 유엔패널 구성을 지원
-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수립을 위해 노력
- 빈곤국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기후변화 협상 진행 및 타결을 위해 노력
- 아프리카 기후변화 로드맵(Africa's Climate Roadmap) 이행을 지원

또한 노르웨이는 환경을 고려한 협력국의 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노르웨이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 협력국의 사회계획 및 국가개발 정책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전략을 포함하도록 지원
- 천연자원 관리단계의 여성의 참여 활성화 지원
-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장기재원마련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노력
- 개발도상국 기술이전을 위해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활성화
- 산업을 활용하여 저탄소 사회 구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프레임워크 개발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고 일관성 있는 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
- 탄소 포집·저장 기술 개발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다. 에너지

노르웨이는 글로벌 에너지 효율성 및 신재생 에너지 펀드(Global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Fund, 이하 GEEREF)에 8천만 크로네(노르웨이 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GEEREF는 민관협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펀드이며, EU, 노르웨이, 독일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개발을 위한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Clean Energy for Development Initiative)를 통해 에너지분야 개발정책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도시지역에서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공급, 효율적인 주거용 화목난로 공급 등을 통한 빈곤감소 프로젝트와, 수력, 풍력발전소 건설 등의 대형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양자지원의 경우 노르웨이는 협력국의 수요와 계획을 우선적으로 하여 지원이 이

뤄지며, 주로 수력발전과 관계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에너지 펀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관련 기술 향상 도모
- 에너지 효율 개선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적 에너지 개발협력 계획 수립
- 원조자금과 기타 공공 자금 및 민간자금의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

라. 국제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

노르웨이 정부는 돈세탁 방지 등 국제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엔, OECD 금융 특별팀(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인터폴 등과 공조하여 노력하고 있다.

- 세금관련 입법과 세금 징수 체계 구축과 관련된 기술 및 재정지원을 개발도상국에 제공
- 조세도피처(tax havens)에서의 불법활동을 방지하고 국제금융시스템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규범 도입을 위해 노력
- 불법 국제금융거래(illicit financial flows)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지원
- 불법 국제금융거래(illicit financial flows) 방지를 위해 다른 국가 및 다자기구와 협조
- 개발도상국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된 자산 반환을 위해 노력 및 지원
- 유엔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
-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3개 부속의정서(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불법입국, 불법무기 방지 의정서)의 이행 촉진을 위해 노력

마.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노르웨이 정부가 2007년 발족한 ‘노르웨이 무역을 위한 원조 행동 계획(Norwegian action plan Aid for Trade)’은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부패 방지, 역내무

역, 여성과 무역을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르웨이는 아프리카 지역과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역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수출 무역장벽과 국가 및 지역차원의 인프라시설 부족으로 인해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속가능한 무역으로 인한 개발은 수출품목다변화, 북남무역 이외의 새로운 교역창구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변국가와의 무역증가, 남남무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맞는 국내정책의 시행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진입을 돕는 WTO 규정의 도입 추진 지원
- 노르웨이 정부는 개발도상국과 양자무역협정 체결을 할 경우, 해당국가의 경제 및 정치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협정을 체결
-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가를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 지원을 확대
- 개발도상국의 WTO 분쟁해결기구(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관련 활동을 지원
- 무역 관련 협정에서 환경이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다뤄지도록 지원
- 다자무역기구의 규범과 환경관련 다자조약의 상호지지적인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
-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의 개정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협정이 체결되도록 지원

바. 전염병: 글로벌 펀드(Global funds)

노르웨이 정부는 보건분야에서 여러 개의 글로벌 펀드를 설립하고 운영해왔는데, 최근에는 그 중 두 가지의 펀드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이고, 두 번째는 에이즈와 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 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이하 GFATM)이다.

글로벌 펀드는 원조 분절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받고 있으나, 사실상 WHO와 같은 전통적인 보건기구와 유엔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전염병 퇴치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노르웨이 외교부가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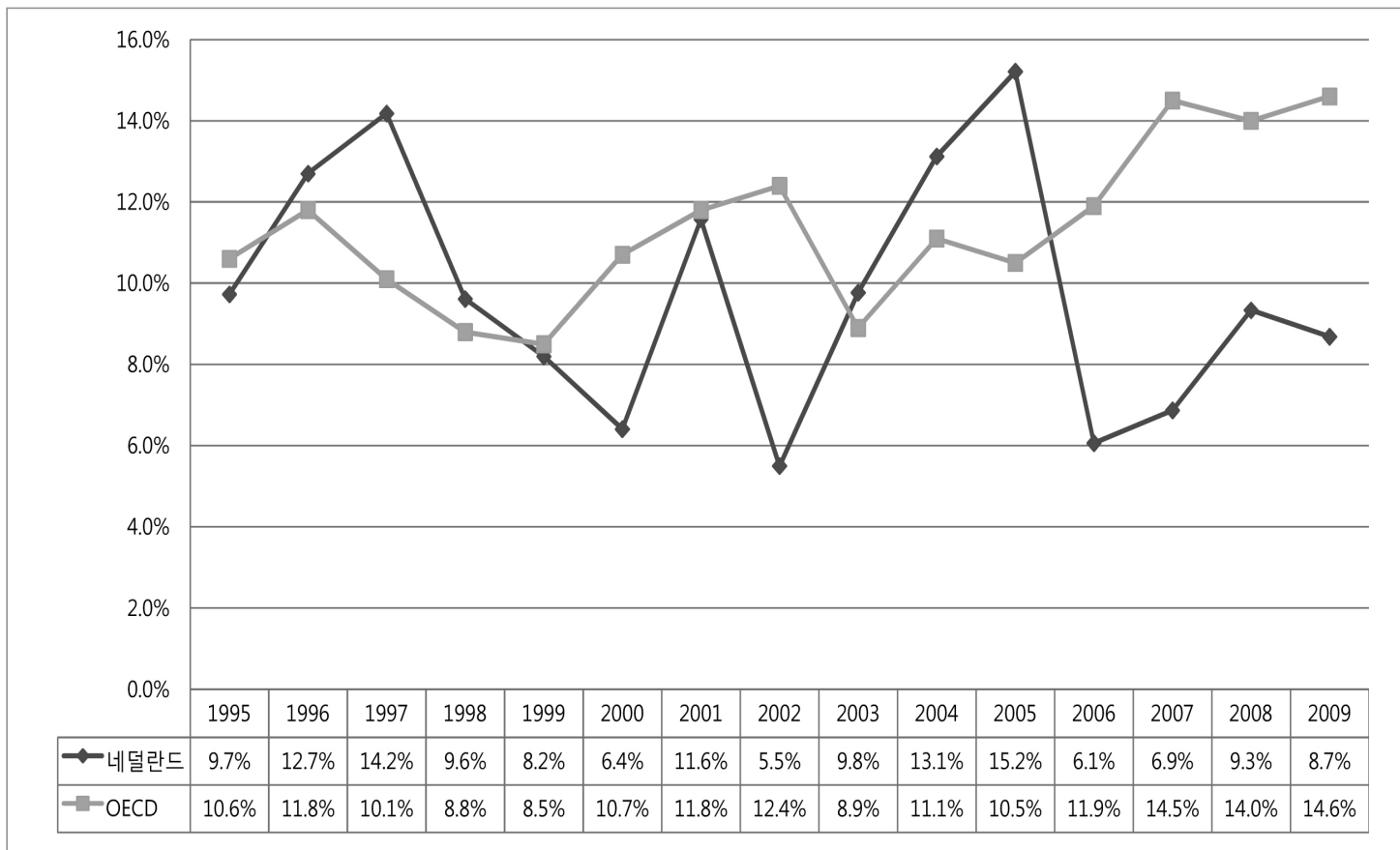
- 보건분야 국제기구 등 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해 재정 지원
- 글로벌 펀드의 강화를 위해 노력 및 지원
- 전통적인 ODA 자원 이외에 새로운 자원 마련을 위해 노력
- 노르웨이 정부가 선정한 중점 분야의 지원에 보다 많은 재정을 지원

6) 네덜란드

(1)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표 26]을 보면 네덜란드는 글로벌 공공재 비율은 2002년에 가장 낮은 5.5%를 기록하였으며, 2005년 가장 높은 15.2%를 기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글로벌 공공재 지원 비율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 중 인류공동자신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 대한 지원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표 28] 참조)

[표 26] 네덜란드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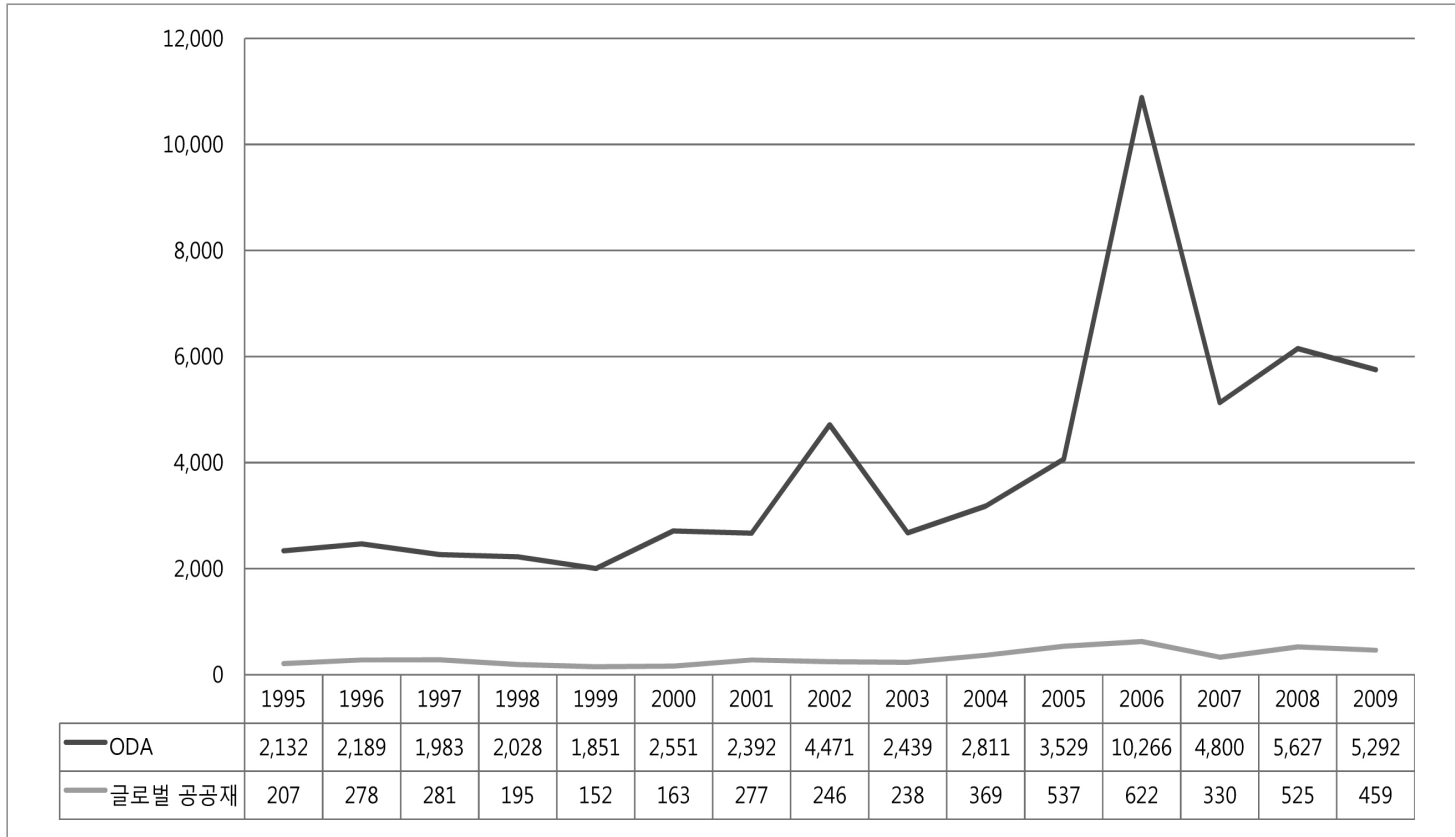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27] 네덜란드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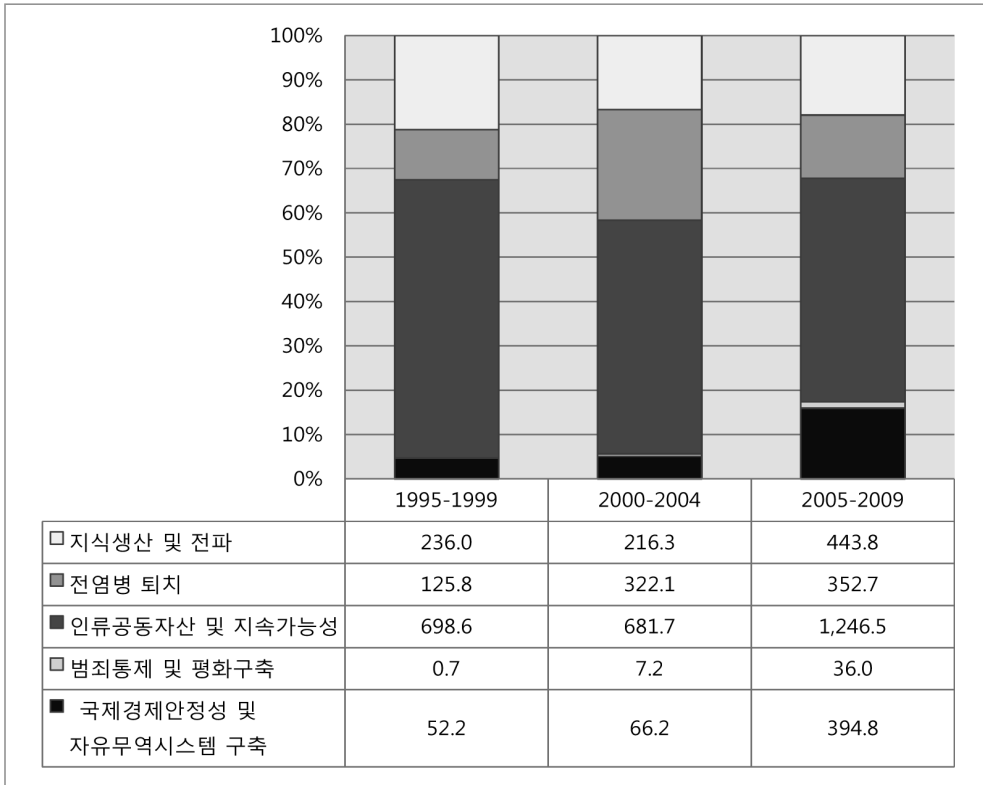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28] 네덜란드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2) 글로벌 공공재 정책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네덜란드 외교부는 세계화에 기초한 일관성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글로벌 도전과제와 글로벌 공공재를 중심으로 한 개발 정책을 수립하였다.

글로벌 공공재를 5개의 분야인 통상과 금융, 기후변화, 식량안보, 이주, 평화·안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중 MDGs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4개의 세부 분야를 개발정책 중점 분야로 선정하였다. 상기 4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안보와 법규명령
- 식량안보
- 물
- 생식보건

또한 네덜란드 외교부는 글로벌 공공재의 경우 양자지원을 통해서는 실질적인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자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3) 글로벌 공공재 세부분야 관련 주요 정책 소개

가. 생식보건

네덜란드 외교부는 정부와 민간분야의 협력 및 조정을 통해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생식보건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식보건 관계자의 역량강화, 생식보건 관련 교육, 관련 시설의 접근성 향상 및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생식보건, 일반 보건, HIV·AIDS 관련 문제들이 상호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이 세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다음 분야에서 다른 공여국과 차별성 있는 원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보건분야에서 차별이나 소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
- 청소년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식보건에 관련된 정보 접근성 확대
- 피임기구 사용 및 공급 확대
- HIV 감염 방지
- 백신 등 다른 의학 약품의 공급 및 접근성 확대
- 안전한 중절 수술을 포함한 생식보건 관련 의료의 수준 향상

상기 정책들의 이행을 위해 네덜란드는 12개 협력국⁵³⁾에 있는 네덜란드 대사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5개의 유엔기구 및 3개의 글로벌 펀드인 GFATM, Gp-RHCS(Global Programme for Reproductive Health Commodity Security, 생식보건 관련 글로벌 프로그램), GAVI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나. 범분야 정책

네덜란드는 환경, 거버넌스, 여성 인권은 크로스커팅 이슈로 삼아, 개발협력 관련 모든 정책 수립 및 이행 시에 고려하고 있다.

7)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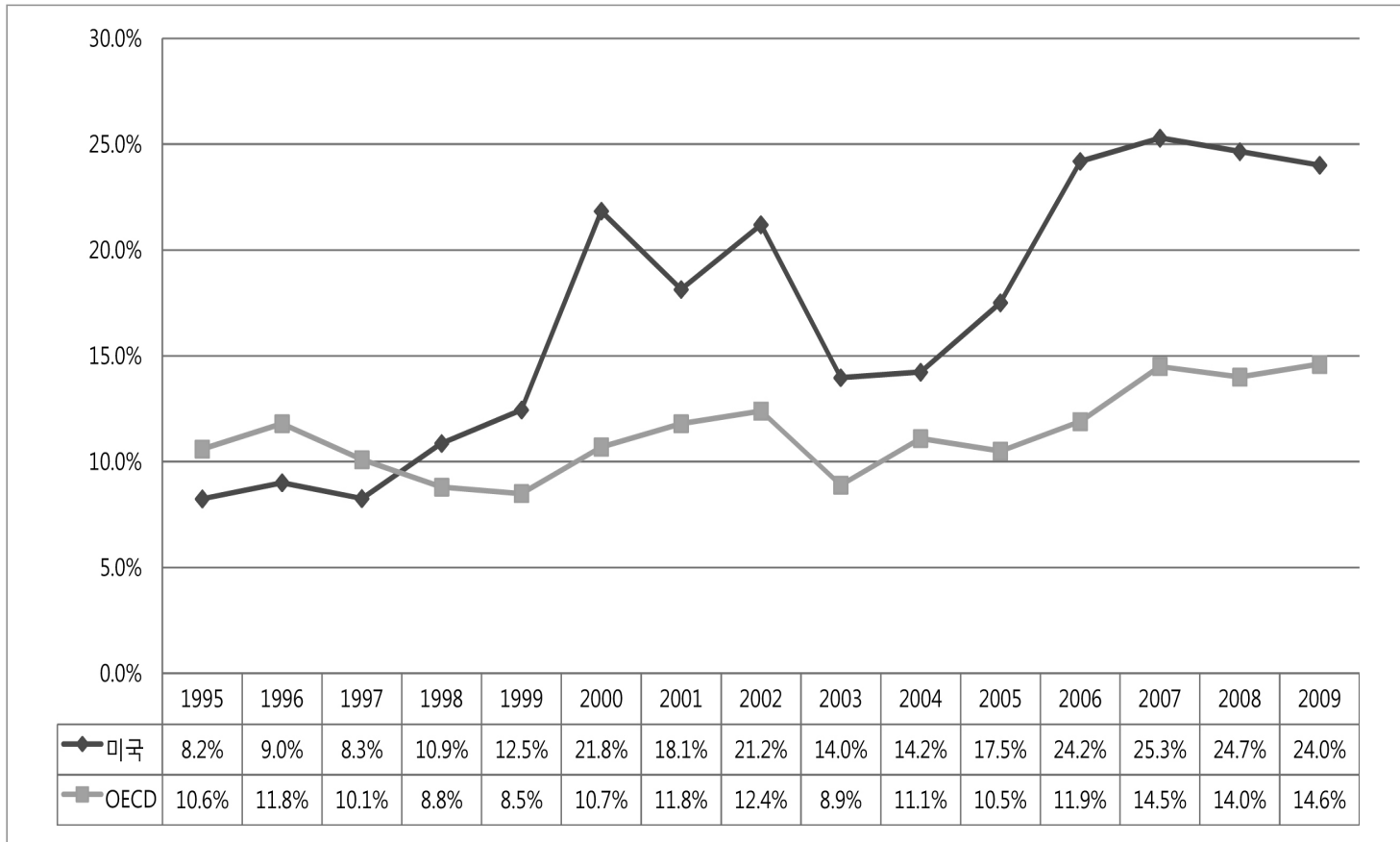
(1)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미국은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표 29]을 보면, 미국은 OECD DAC 회원국 글로벌 공공재 분야 평균 지원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원을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995년에서 1997년을 제외하고는 2009년까지 모두 OECD DAC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지원을 하였으며, 2000년과 2006년 이후에는 약 10%나 높은 비율을 금액을 글로벌 공공재에 지원하였다.

분야별로는 1995~1999년에는 글로벌 공공재 지원액의 30%가 넘는 금액이 지원되었던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분야가 2005~2009년에는 약 5% 정도로 비중이 줄어들었고, 20%가 조금 넘는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던 전염병 퇴치 분야의 비중이 3배 이상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31] 참조)

53)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가나, 니카라과, 탄자니아, 베트남, 잠비아 등

[표 29] 미국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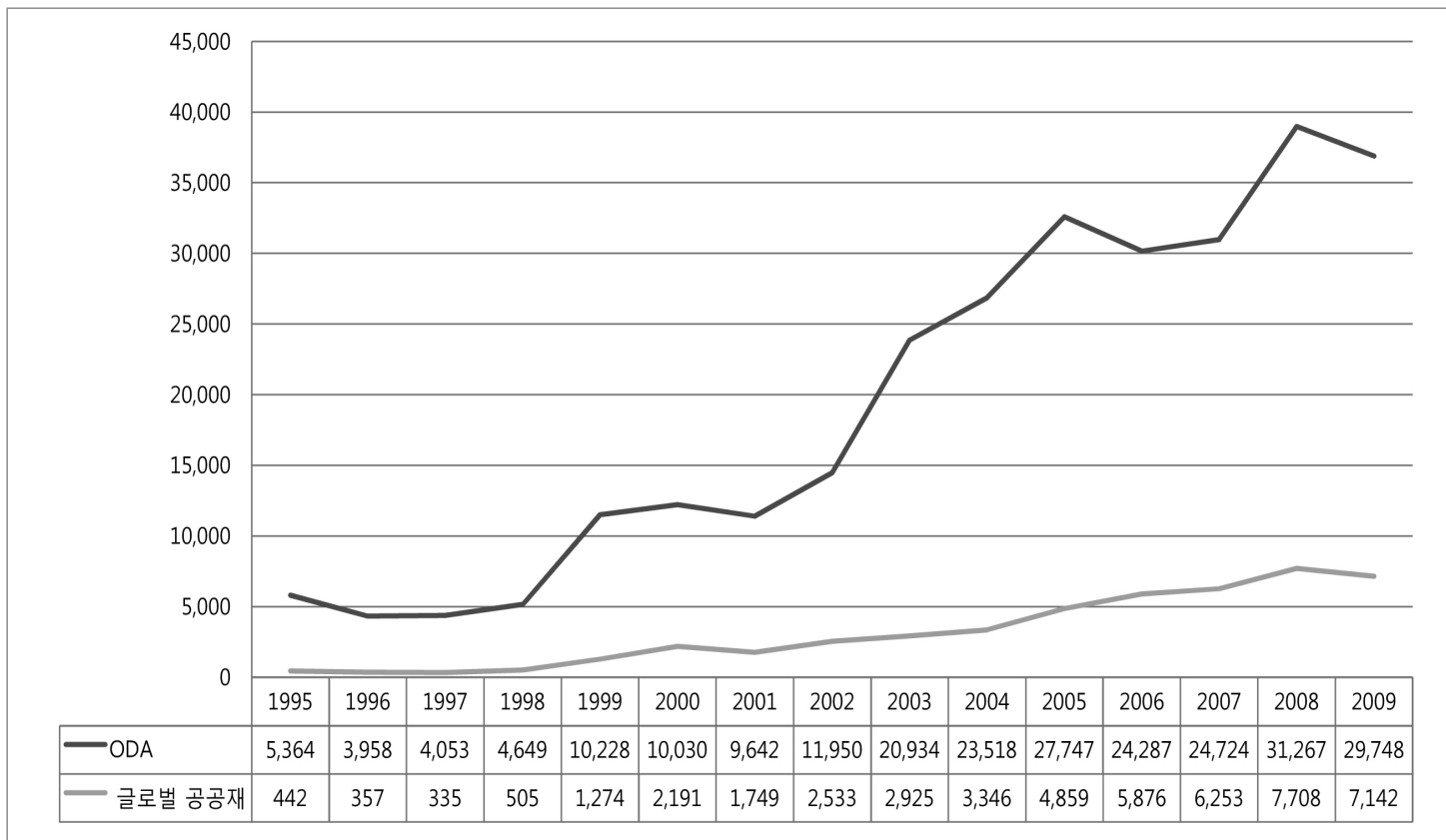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30] 미국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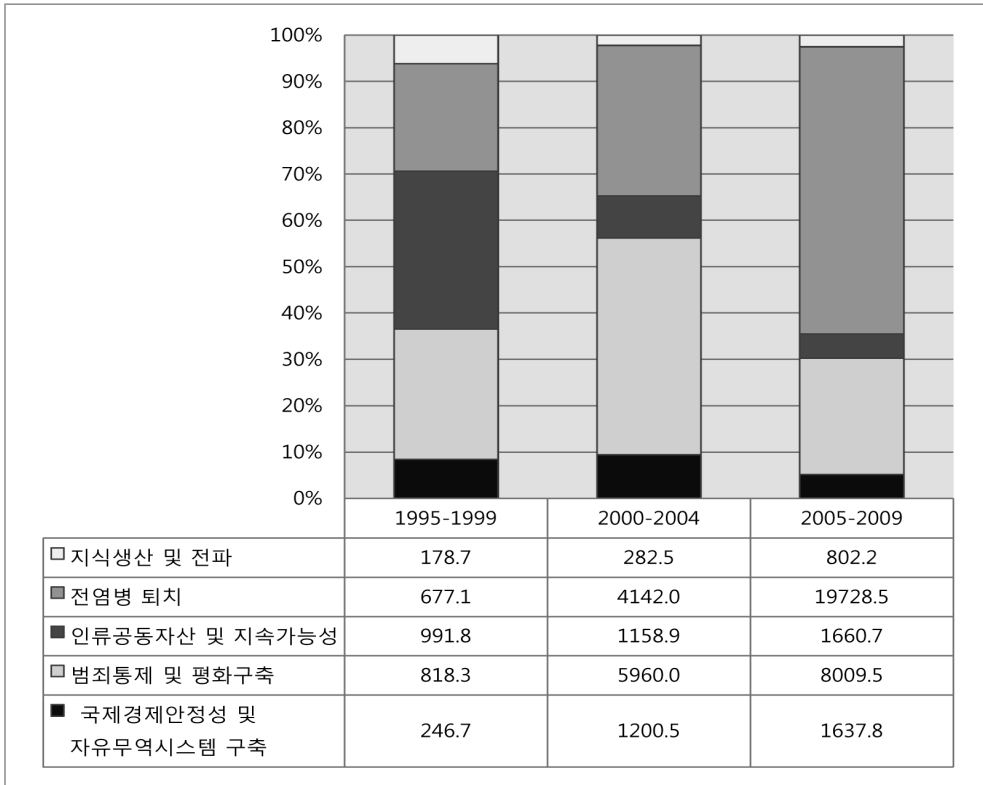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31] 미국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2) 글로벌 공공재 정책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미국정부는 급변하는 세계의 분쟁, 재난 등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관과 개발전문가, 민간전문가들을 결집하여 ‘스마트파워’로 새로운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목표 아래, 사상 첫 ‘4개년외교개발검토보고서(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QDDR)’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와 미국국제개발청(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이 2010년 공동으로 발간된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국

가나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는 지구적 차원의 위협이 등장했음을 밝히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구적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테러, 핵 확산, 경제위기,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국제범죄, 전염병 확산 등을 21세기에 대두된 글로벌 도전과제로 꼽고 있다.

이에 연결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9월 Global Development Policy를 발표했다.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 'Global Food Security', 'Global Health Initiative'에 대한 세부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USAID도 상기 분야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협력 글로벌 구조(architecture)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미국 정부와 USAID는 지역기구 및 다자기구와 장기적으로 개발 효과성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3) 글로벌 공공재 세부분야 관련 주요 정책 소개

가. 글로벌 보건 대책

미국 정부는 '글로벌 보건 대책(Global Health Initiative, 이하 GHI)'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총 630억 달러를 6년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GHI는 특히 모자보건과 전염병 퇴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GHI 사업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GHI 사업 기본 원칙:

- 여성 중심의 접근법 사용
- 사업의 전략적 연계와 통합을 통해 영향력 증대
- 주요 다자기구, 글로벌 보건 파트너십, 민간부분과의 협력 강화 및 연계
- 수원국의 옹호 확대를 위해 지원
- 보건의료시스템 강화를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성 구축

-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 개선 및 강화
- 보건의료 분야 연구 촉진

미국 정부는 HIV·AIDS의 경우 GHI 사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The U.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PEPFAR)’을 통해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1) HIV 감염자 확대 방지를 위한 지원(약 1,200만 명 이상), (2) 약 4백만 명에게 에이즈 치료 제공, (3) 500만 명의 고아와 아동을 포함하여 총 1,200만 명에게 에이즈 치료 보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핵의 경우, 결핵 유병율을 50%대로 줄여서 약 130만 명의 정도의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260만 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와 57,200명의 다재내성 결핵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나. 글로벌 기후변화 대책

글로벌 기후변화 대책(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 이하 GCCI)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림파괴와 토양훼손 방지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기후변화 적응 기술 및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제15차 기후변화 코펜하겐 총회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전수를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돕기 위한 자금으로 총 3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산림파괴 및 토양훼손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1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감축(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이하 REDD+)의 단기재정(fast start financing)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GCCI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GCCI 주요 목표:

- 수원국 오너십 확대를 위한 지원
- 기후변화 대응 기술 및 대책 보급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 거버넌스 강화와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수립 시 포괄적 계획 수립 과정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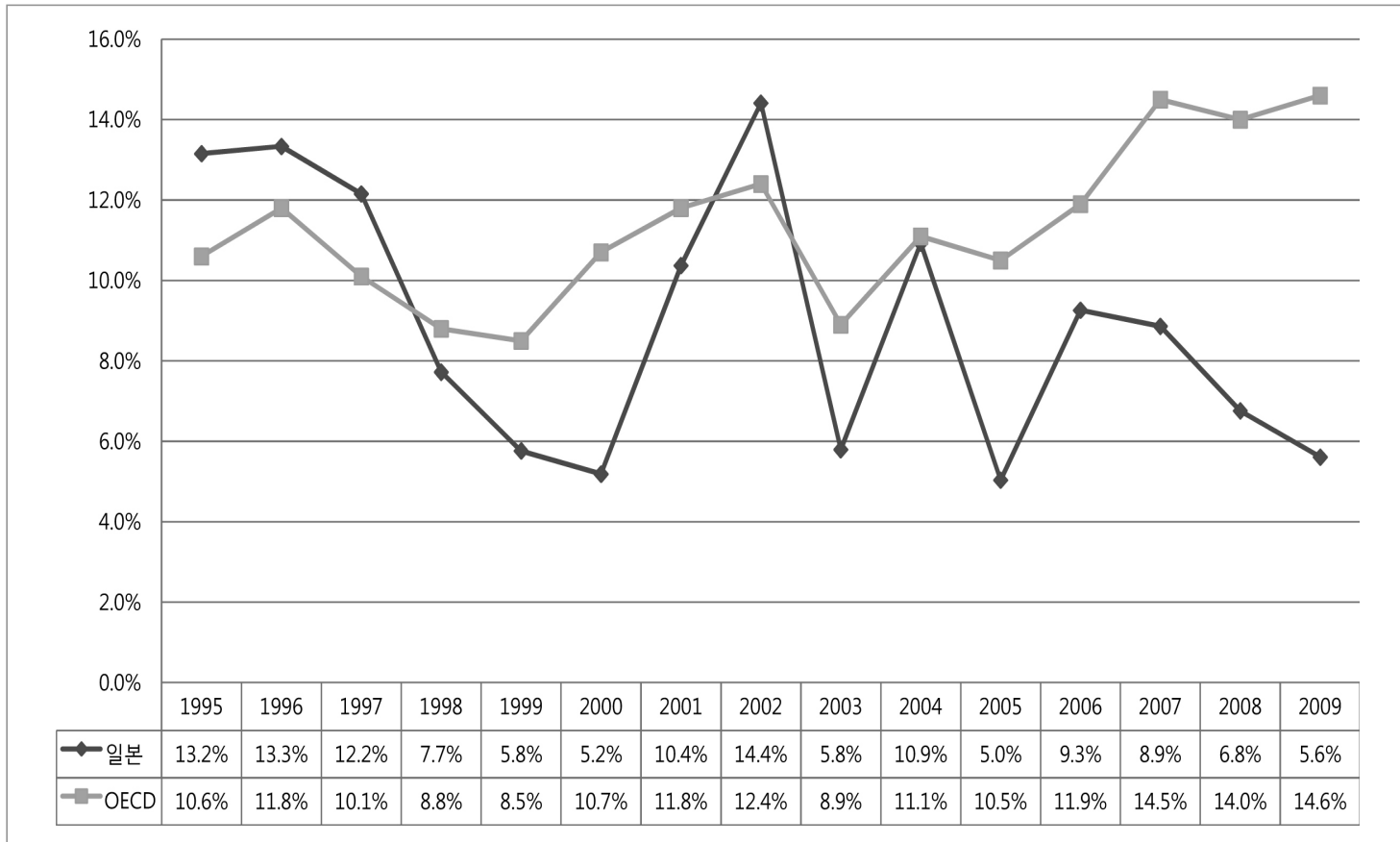
8) 일본

(1)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표 32]에 의하면, 일본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비율은 1995~1997년에는 OECD DAC 평균 비율보다 높았으나, 1998년 이후에는 OECD DAC 평균 비율에는 못 미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2년 제외). 또한 2002년에 14.4%로 가장 높은 글로벌 공공재 지원 비율을 기록한 이후, 지원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2009년에는 5.6%를 기록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 글로벌 공공재 지원의 대부분이 이뤄졌다는 것으로, 1995~1999년에는 약 92%, 2000~2004년에는 약 86%, 2005~2009년에는 약 81%의 지원이 이뤄졌다.([표 34] 참조).

[표 32] 일본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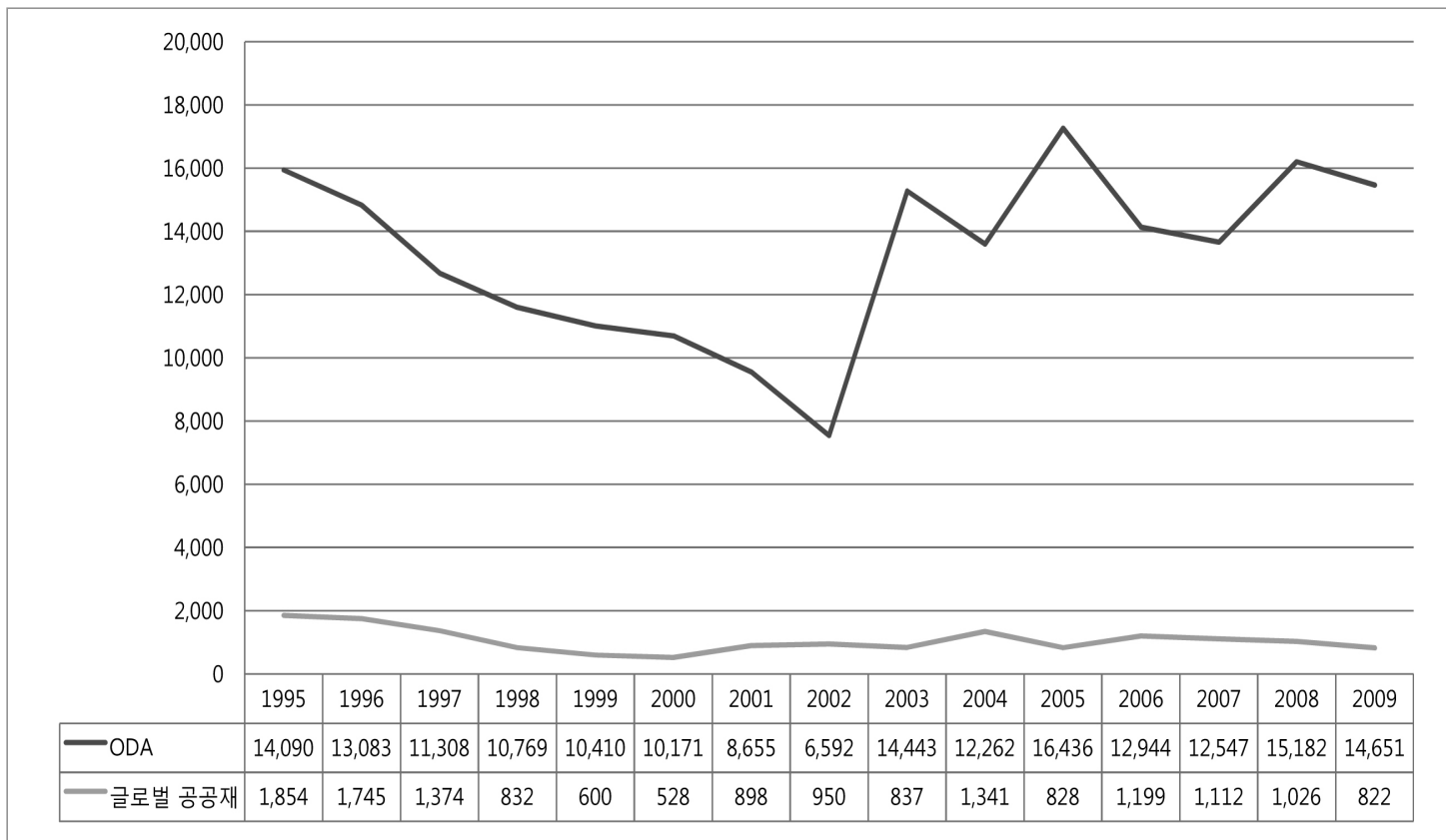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33] 일본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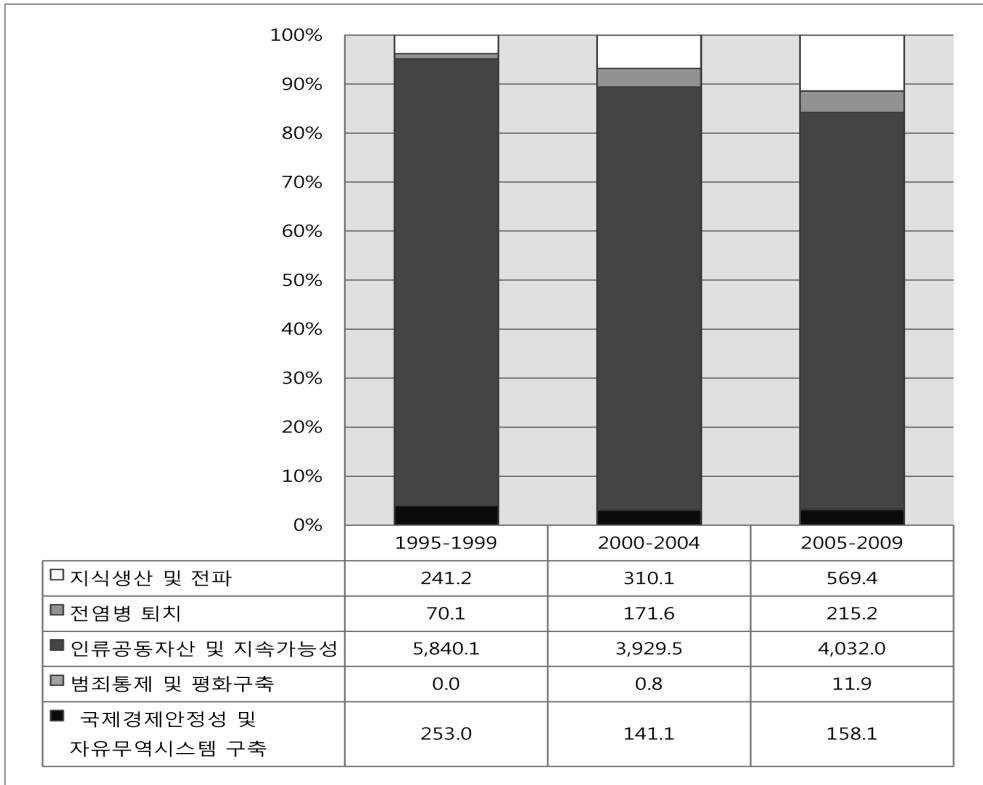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34] 일본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2) 글로벌 공공재 정책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일본 정부(외교부)는 국제적·국내적 ODA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ODA 지원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2011년 일본 국제협력 백서를 발간하였다. 백서에서 일본은 세계화로 인해 대량의 상품과 자산, 정보 더 나아가 사람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것과,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 테러 증가 등 공동의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가 등장한 것으로 인해 일본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외교부는 일본의 ODA 지원 철학의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발휘’를 내세우며, 앞서 말한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국제적 토론을 이끌고,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ODA현장’에서도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이슈 해결, 평화구축을 일본 ODA의 4대 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글로벌 공공재 관련 분야가 일본 ODA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이슈 해결에 관한 일본의 의지는 ‘일본 중기 ODA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 글로벌 공공재 세부분야 관련 주요 정책 소개

일본의 4대 중점 분야 중에서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 있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지속가능한 성장(무역) 분야,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 전염병 퇴치, 자원과 에너지,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와 테러가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하는 분야이다.

가. 지속가능한 성장: 무역

최근 들어 일본을 비롯하여 WTO, OECD 등에서도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은 이와 관련하여 2009년 7월에 개최된 ‘WTO의 AfT 글로벌 검토 회의(WTO’s Second Global Review Meeting on Aid for Trade)’에서 새로운 개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0억 달러를 무역관련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나. 환경 및 기후변화 이슈

2009년 9월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9년 12월에 개최된 제15차 ‘COP15(Conference of Parties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총 150억 달러(공공기금

과 민간기금 포함)을 2012년까지 3년 동안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REDD+와 관련해서 일본은 2012년까지 단기지원으로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 전염병 퇴치

일본 정부는 지난 2000년 G8 규슈-오키나와 회의에서 ‘오키나와 전염병 퇴치계획’ 채택을 주도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보건과 개발 이니셔티브(Health and Development Initiative, 이하 HDI)’를 발표하며 보건분야 M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HDI의 일환으로 일본은 GFATM에 가입하였으며, 2010년 7월 기준, 일본 정부는 총 12억 9천만 달러를 기여하였다.

결핵 퇴치를 위해 일본은 2008년 7월 5개의 공공·민간기업 합동으로 일본 결핵 퇴치 행동계획(Stop TB Japan Action Plan)을 발표하고, 일본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결핵퇴치를 위한 국가대책마련을 지원하였다. 또한 에이즈 감염 여부 자발적 검사 및 상담 서비스(Voluntary Counseling and Testing Services) 도입과 치료약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말라리아, 인플루엔자, 소아마비, 기타 열대병 등의 퇴치를 위해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UNICEF)등과 협력하고 있다.

라. 자원과 에너지

일본 정부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발전을 촉진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보급하는 등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우, 자원개발을 통해 외화벌이를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고 백서에서 밝히고 있다. ODA 재원 이외에 일본국제협력은행(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일본수출투자보험(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NEXI),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JOGMEC) 등의 민간자금도 활용하여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마.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와 테러

마약과 관련된 범죄 방지를 위해서 일본은 유엔 마약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Narcotic Drugs)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이하 UNODC)의 유엔마약통제 프로그램(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이하 UNDCP)을 통해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마약 범죄 방지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의 예로 2009년에는 미얀마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모니터링 및 불법 합성 마약 제조 수사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마약 통제 및 범죄 예방 프로젝트를 이행, UNDCP 펀드 지원을 통해 라오스 마약 통제 주요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였다.

2010년 3월에는 UNODC를 통해 UNDCP 펀드와 범죄예방형사사법 펀드(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Fund, 이하 CPCJF)에 자금을 지원하여 아프가니스탄 마약퇴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국경관리 프로젝트, 형법 시스템 강화 및 관련인 역량강화, 대체작물개발과 청소년 마약사용 방지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한편 CPCJF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였으며, 2009년 미화 6만 7,000달러를 UNODC 테러방지부(Terrorism Prevention Branch)를 지원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의 테러 방기관련 법 조항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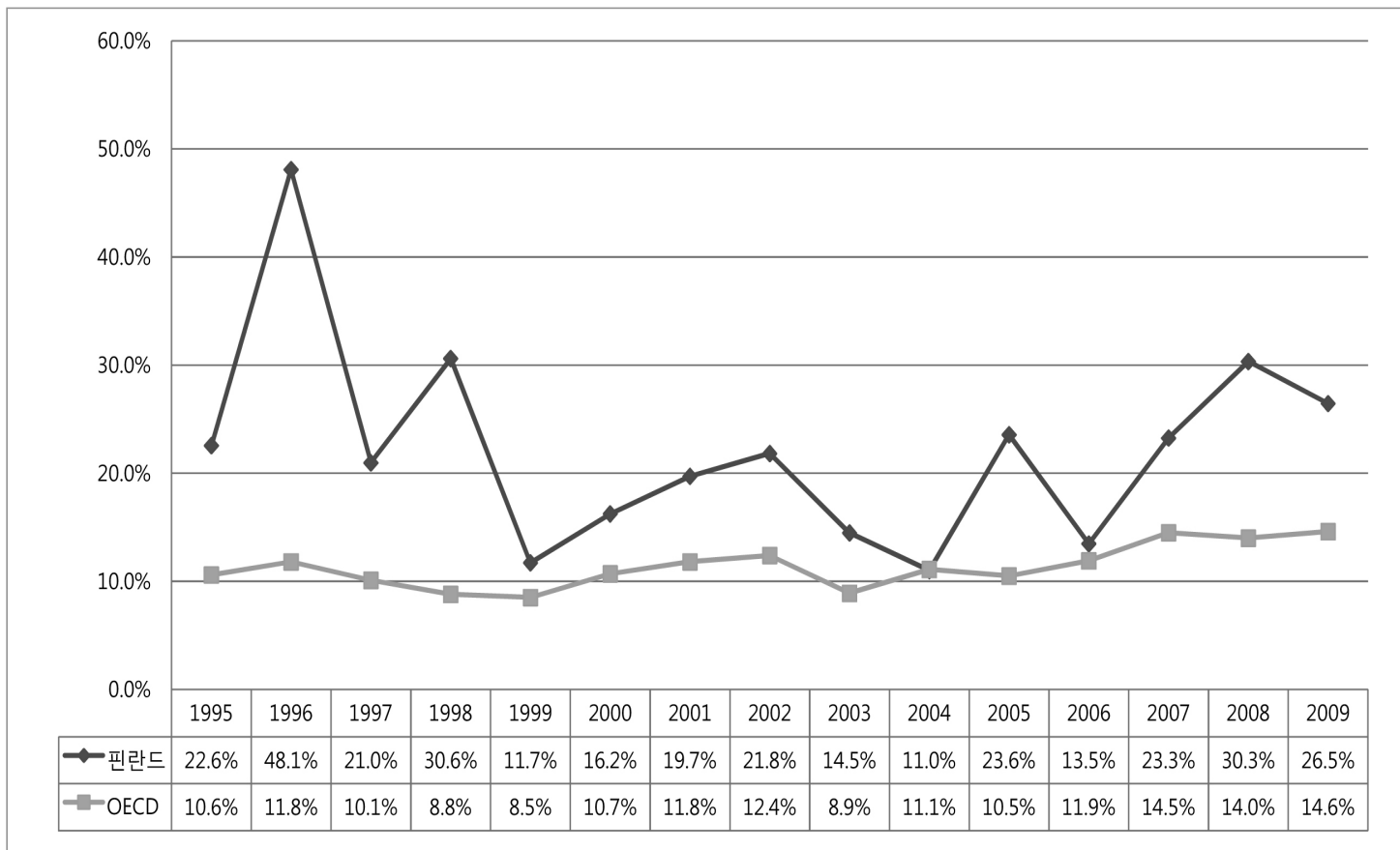
9) 핀란드

(1)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표 35]를 보면, 핀란드는 OECD DAC 회원국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평균 지원 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원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96년에는 OECD DAC 평균 비율인 11.8%의 4배가 넘는 48.1%를 지원하였으며,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 금액도 점차 증가하여 2009년에는 전체 ODA 지원액의 26.5%에 해당하는 3억 3,600만 달러([표 36] 참조)를 제공하였다.

분야별로는 핀란드는 전통적으로 글로벌 공공재 중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005~2009년에는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지식생산 및 전파,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전염병 퇴치 분야 순으로 지원을 했다([표 37] 참조).

[표 35] 핀란드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199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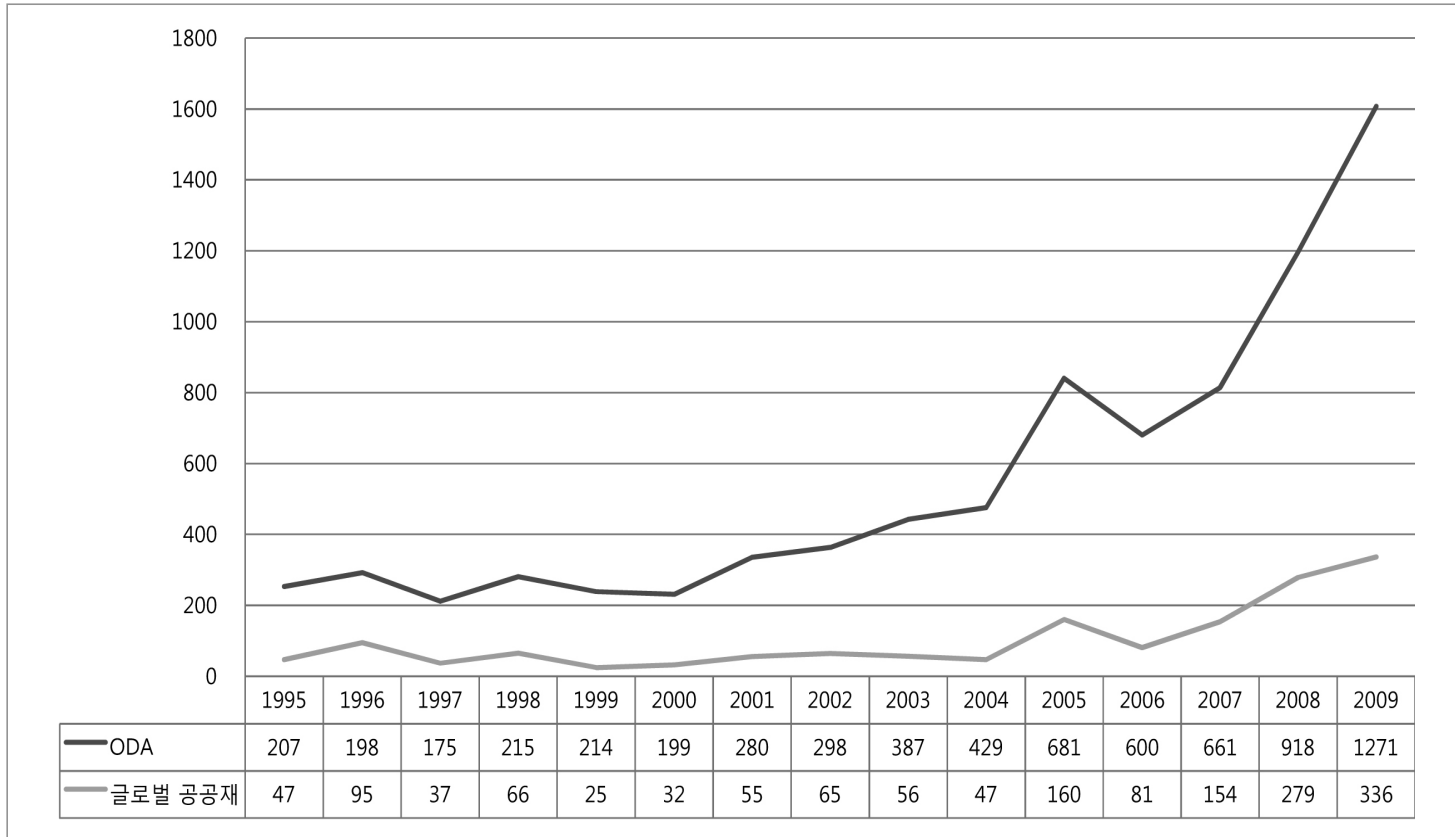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36] 핀란드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1995~2009)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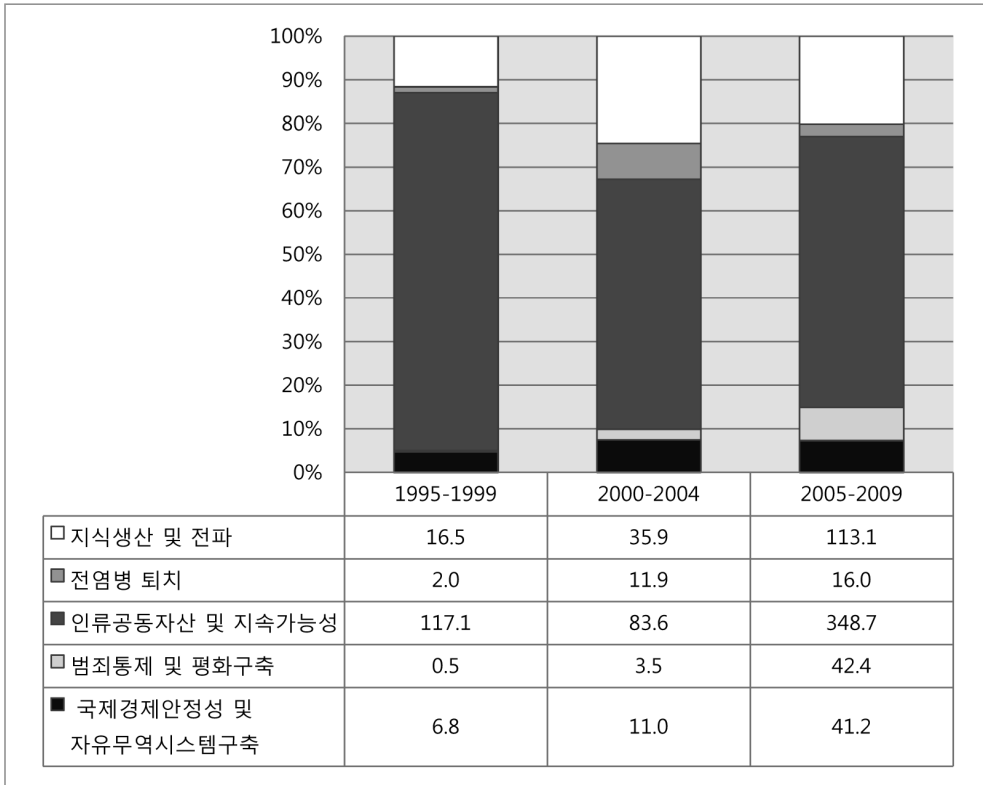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37] 핀란드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2) 글로벌 공공재 정책 수립 배경 및 주요 내용

가. 세계화와 공동 대응 문제의 인식

기존의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2004년에 도입된 이후로 새로운 발전과제들이 대두되었다. 핀란드 외교부는 세계화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2007년 발행한 개발협력 정책 문서에서 밝히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촉진된 여러 개발도상국가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에너지와 천연

자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기초농산물의 상당한 가격 상승을 초래하였다. 또한 대규모의 경제성장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실종, 환경파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비재생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자체를 약화시킨다. 또한 천연자원의 부족과 환경의 악화는 분쟁을 일으켜 그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

핀란드 정부의 새로운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데, 핀란드의 개발정책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재난 예방, 평화 협상 과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세계화가 유발하는 경제성장은 개발정책목표의 달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빈곤은 양호한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국가들에서 특히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나라들을 비롯해 여타 국가들은 더 강화된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류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의 결과로서, 국제적 합의와 협조 체제를 발전시켜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핀란드는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를 통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화를 주도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에 공헌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평화 협상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계속될 것이다. 사실 글로벌 거버넌스란 종합적인 세계 정책, 즉 국제 사회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정책의 기초는 세계적 윤리에 관한 국내외 논의를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국민, 환경, 타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의무의 국제적 이행은 세계의 안전보장과 개발의 기초가 된다.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와 법규, 인권의 강화, 제 기능을 하는 시민 사회는 생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전제조건이다. 개발과 안보의 동시적 강화는 당사자들 간의 대화, 조화, 협력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 핀란드의 개발정책

핀란드 외교부는 유엔, 국제 개발 금융기관, OECD DAC, 그리고 EU에서 국제 개발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 정책을 다루는 다수의 토론에 참여하고 있으며, 핀란드 개발정책의 목표는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것이다.

개발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핀란드는 다양한 토론회에서의 성과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기후변화와 맞서고, 토지의 고갈과 사막화를 방지하고, 환경의 유기적인 형태를 보존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에 의미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분투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의 모든 개발 정책은 다음의 범분야 주제들을 지지하고 있다.

- 여성의 권리 장전과 양성평등 및 사회적 평등 촉진
- 어린이, 장애인, 원주민 및 소수인종 등을 포함하는 소외 계층의 권리 장전과 동등한 사회 참여의 기회 보장
- 의료 문제 및 사회 문제로서의 HIV·AIDS 퇴치

한편, 핀란드는 국제 개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유엔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다. 유엔내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통일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는 개별 국가 내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의 개발 협력에서 유엔이 가지는 강력한 지위를 인정한다. 또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엔내부의 개혁을 지지한다. 또한 핀란드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EU의 모든 대내외적 활동에 통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3) 글로벌 공공재 세부분야 관련 주요 정책 소개

가. 환경

환경 회의의 결정을 준수하는 일은 저소득 국가에게 큰 부담이 되는데 핀란드는 이와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인 행정, 보고 시스템, 모니터링 기법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이 환경에 대한 국제 회의의 결정을 이행하도록 보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국내 개발 정책을 창안할 뿐만 아니라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투자라고 보고 있다.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회의의 목표가 빈곤감소 전략 및 기타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협력국가들은 주인의식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함께 협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 프로젝트는 다양한 범주의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재생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소비, 도시화 모형,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 친환경 기술 도입, 오수 관리, 환경 관리 체계의 수립, 환경의 질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이는 특정 지역의 환경과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생태적 효율성(Ecological Effectiveness)은 개발 협력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한 결정을 함으로써 증가할 수 있다. 이 때 목표는 생애 전주기의 모든 활동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되는 환경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장기적 목표는 탄소중립적인 개발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 에너지

핀란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의 생산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젝트는 특히 빈곤국가와 가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바이오 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의 생산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며, 특히 바이오 에너지 프로젝트는 벌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목재를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임업의 장려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지

역단위 생산과 이를 임업에 연계하는 일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창출해내는 방향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 산림

기후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흡수계(carbon sinks)를 만드는 것은 지속 가능한 생산림(production forests)을 관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핀란드는 혼농임업(agroforestry) 개발을 빈곤의 감소와 생물 다양성 보존을 결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지원을 하고 있다. 임업의 발전과 에너지 생산은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안정과 정립된 토지 소유권 제도, 기능적인 입법은 이러한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또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는 긍정적인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하기 때문에 산림분야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라. 무역

개발 협력에서는 협력국가가 무역 협상에 참여하고 현존하는 협정으로부터 이득을 취할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각종 프로젝트에서는 또한 개발도상국이 자국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 정보(Information society)

지식, 노하우, 혁신을 통한 개발은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지식기반경제는 주로 무형의 재화의 생산과 교역에 관심을 두며, 천연자원을 소비하거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다. 정보통신기술은 빈곤 감소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경제적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데 결정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정보사회의 구축은 단순히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여건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 38] OECD DAC 회원국 글로벌 공공재 지원 비율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그리스	-	-	-	-	-	-	-	5.5%	3.6%	6.5%	1.3%	5.9%	9.0%	6.1%	5.7%
네덜란드	9.7%	12.7%	14.2%	9.6%	8.2%	6.4%	11.6%	5.5%	9.8%	13.1%	15.2%	6.1%	6.9%	9.3%	8.7%
노르웨이	18.9%	16.4%	9.5%	9.1%	9.2%	9.5%	11.8%	12.3%	11.1%	12.2%	10.8%	12.1%	16.3%	15.2%	16.9%
뉴질랜드	4.8%	-	-	-	-	-	-	6.4%	5.2%	4.1%	5.0%	9.2%	2.8%	5.8%	3.7%
덴마크	9.1%	6.2%	12.0%	14.5%	12.5%	3.9%	5.4%	10.4%	16.7%	7.1%	14.4%	9.7%	15.2%	8.6%	10.6%
독일	6.6%	9.1%	11.9%	14.8%	12.0%	7.1%	11.3%	5.4%	6.3%	10.4%	7.8%	7.3%	10.4%	12.5%	12.4%
룩셈부르크	-	-	-	-	-	-	9.2%	2.9%	6.3%	7.0%	6.2%	4.8%	5.5%	8.3%	7.4%
미국	8.2%	9.0%	8.3%	10.9%	12.5%	21.8%	18.1%	21.2%	14.0%	14.2%	17.5%	24.2%	25.3%	24.7%	24.0%
벨기에	5.3%	5.6%	6.3%	6.2%	4.7%	7.4%	4.7%	4.1%	3.0%	5.0%	4.3%	4.4%	7.5%	6.3%	6.4%
스웨덴	12.0%	13.0%	5.8%	9.6%	10.6%	8.7%	11.2%	17.3%	11.2%	14.5%	9.4%	13.2%	14.0%	11.1%	12.2%
스위스	5.5%	12.3%	10.4%	14.0%	6.6%	15.0%	8.8%	20.8%	11.4%	7.1%	7.2%	5.6%	4.7%	8.4%	6.9%
스페인	1.9%	2.8%	7.7%	8.0%	5.3%	6.8%	3.4%	5.8%	8.5%	9.2%	4.7%	7.1%	11.4%	12.8%	12.7%
아일랜드	-	-	-	-	-	3.5%	4.5%	12.4%	8.2%	10.3%	7.1%	14.6%	12.6%	8.9%	7.5%
영국	7.3%	11.1%	5.6%	11.2%	8.1%	14.8%	15.4%	16.9%	8.8%	7.5%	8.9%	9.8%	15.7%	14.9%	20.9%
오스트리아	33.1%	2.0%	1.5%	1.6%	1.6%	2.5%	1.1%	5.5%	1.5%	2.0%	1.1%	1.2%	1.1%	1.1%	4.4%
이탈리아	10.1%	2.5%	7.4%	2.4%	3.2%	2.4%	5.1%	1.8%	3.8%	10.3%	10.7%	1.6%	12.4%	2.5%	3.5%
일본	13.2%	13.3%	12.2%	7.7%	5.8%	5.2%	10.4%	14.4%	5.8%	10.9%	5.0%	9.3%	8.9%	6.8%	5.6%
캐나다	10.9%	9.0%	6.0%	3.3%	5.8%	8.4%	7.5%	7.9%	13.8%	9.8%	10.2%	7.6%	10.2%	5.4%	9.1%
포르투갈	0.3%	0.2%	-	0.0%	1.7%	1.0%	3.0%	4.3%	3.5%	0.8%	2.9%	2.8%	4.0%	5.1%	2.5%
프랑스	11.2%	8.9%	9.5%	5.2%	3.9%	2.9%	5.8%	4.5%	2.2%	9.4%	6.7%	8.5%	10.9%	11.3%	11.8%
핀란드	11.7%	24.9%	11.3%	15.9%	7.3%	9.5%	10.7%	12.2%	8.7%	6.3%	12.5%	7.4%	12.6%	16.3%	15.6%
한국	-	-	-	-	-	-	-	-	-	-	-	2.8%	5.6%	7.3%	3.6%
호주	3.3%	35.2%	4.0%	8.7%	10.7%	8.3%	9.9%	6.9%	5.5%	2.9%	7.0%	5.8%	11.1%	7.4%	4.1%
OECD DAC	10.6%	11.8%	10.1%	8.8%	8.5%	10.7%	11.8%	12.4%	8.9%	11.1%	10.5%	11.9%	14.5%	14.0%	14.6%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2. 평가 및 시사점

지금까지 OECD DAC 22개 회원국 중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발협력 정책을 가지고 있는 9개 국가의 정책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9개국이 모두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전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기 9개국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에서 크게 4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글로벌 거버넌스 또는 글로벌 공공재 전담 국제기구 창설의 필요성 강조, 다자원조와 글로벌 펀드를 통한 지원 확대, 정책일관성 확보, 재원마련 메커니즘 구축이 그것이다.

9개 국가의 글로벌 공공재 세부 섹터 정책 및 실행현황 분석 결과, 각 세부분야의 지원 비중의 차이가 국가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이 각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해관계에 의해 선정되고 사업이 이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자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다자기구 등 개발협력 분야에서 자국의 입지 강화 등을 위해 전략적인 지원을 한다고 밝힌 것에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개발협력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 단계에서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고려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국가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공공재가 주목 받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말로, 아직까지는 새로운 이슈라서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고려가 개발정책 전반으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고려나 관련 조치가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⁵⁴⁾

OECD DAC 22개 회원국 중 글로벌 공공재 정책을 가진 국가는 9개국뿐이나,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하는 5개의 세부 섹터를 중점지원분야로 선정하고 있는 국가는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하는 5개의 세부 섹터를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분야별 정책이나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공공재적인 시각 없이도 전염병 퇴치 사업, 기후변화 사업 등 관련

54)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세부사항 조사와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해서는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분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공공재 전략을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나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글로벌 공공재 지표나 가이드라인이 개발되면, 이미 기존에 글로벌 공공재 관련 세부 섹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에 글로벌 공공재 시각을 접목시키는 것이 가능해져 해당 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및 관련 문제해결에도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새로운 개발협력 정책 수립 및 사업 이행의 전단계에서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체계적인 고려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9] 국가별 주요 글로벌 공공재 정책

국가	주요정책
스웨덴	•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선진국이 노력과 정치적 리더십 강조 • 글로벌 공공재 전담 국제기구 창설 •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재정 마련 필요성 강조
스위스	• 섹터별 접근의 필요성 강조 • 국제적 표준과 기준(가이드라인)의 시행 필요 • 글로벌 거버넌스 창설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조 • 다자지원 강조 및 전략적 활용
영국	• 다자지원(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통한 협력 강조 • 글로벌 펀드 담당 부서 창설 •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재정 마련 필요 • 공공-민간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한 민간기금의 중요성 강조 • 정책일관성 확보 • 글로벌 거버넌스 창설 필요 • 정책 수립 및 사업 이행의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에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
프랑스	• 섹터중심의 정책 수립 •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논의 및 지원 • 관련 논의에 개발도상국 및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 정책일관성 확보
노르웨이	• 글로벌 공공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유엔의 효과적 운영과 정치적 리더십 강조 • 글로벌 공공재 관련 OECD DAC회원국 차원의 논의와 합의 필요 •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위한 별도의 재정마련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 필요 • 보건분야 글로벌 펀드 활용
네덜란드	•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정책의 수립과 정책일관성 필요 • 다자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원
미국	• 새로운 개발협력 글로벌 구조(architecture) 필요 • 주요 다자기구, 글로벌 보건 파트너십, 민간부분과의 협력 강화 및 연계
일본	• 글로벌 펀드 및 다자지원 활용
핀란드	•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강조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원칙과 정책일관성 유지 강조 • 글로벌 공공재 관련 유엔의 역할을 지지

출처: 저자작성

끝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글로벌 공공재 또는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가 2008~2010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가별 글로벌 공공재 정책의 도입이 실제 지원으로 연결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는 힘들다. 다만 글로벌 공공재 정책 도입이 상대적으로 먼저 진행되었던 스웨덴,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글로벌 공공재 지원 비율, 현황과 연계하여 보았을 때에는 글로벌 공공재 관련 정책의 도입이 해당분야 지원 증가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웨덴과는 달리 프랑스는 2002년 자체적으로 글로벌 공공재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액과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2009년에는 2002년의 5배가 넘는 금액을 글로벌 공공재에 지원한 것을 미루어 볼 때, 글로벌 공공재 정책의 반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도 2007년에 글로벌 공공재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정책 문서를 발간한 이후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액이 2배 이상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ODA 실행에 글로벌 공공재 정책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9개국 중 2개국만이 정책과 사업지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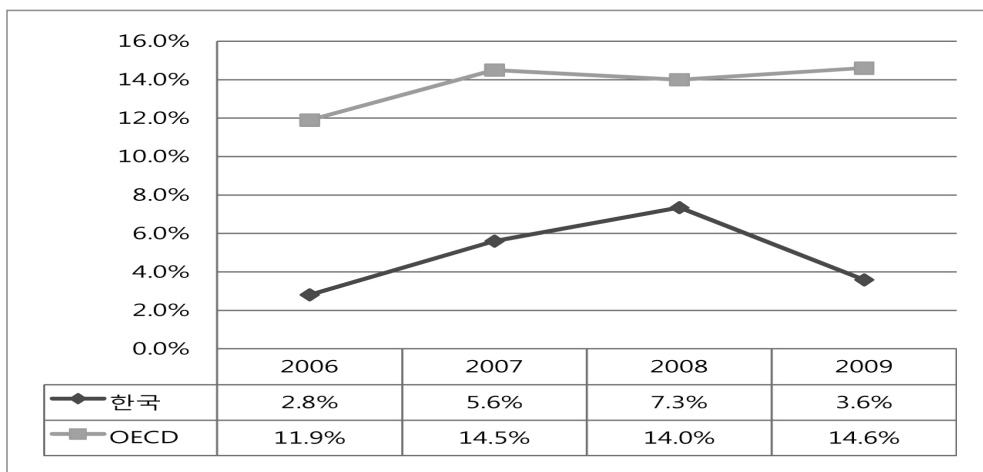
제6장. 한국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 및 현황

1.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분석

이 장에서는 한국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한국은 2006년 이후부터 OECD DAC의 원조 목적 코드별 통계 시스템인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데이터 통계를 제공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 현황을 CRS 코드에 근거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범위는 2006년 이후의 자료만 대상으로 하였다.

[표 40]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 지원된 ODA 금액이 전체 ODA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한 그래프이다. [표 40]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 비율이 2006년 2.8%에서 2007년에는 5.6%, 2008년에는 7.3%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다시 3.6%로 하락하였다.

[표 40] 한국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 비율(2006~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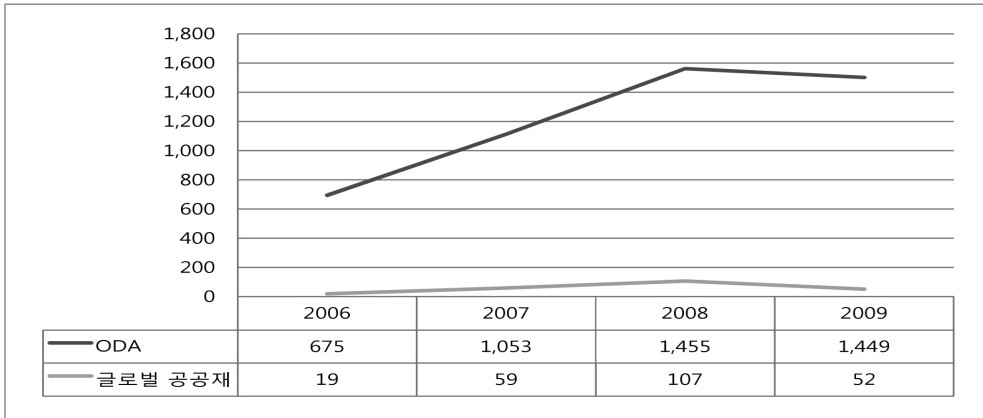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41] 한국 글로벌 공공재 관련 ODA 지원금액 추이(2006~2009)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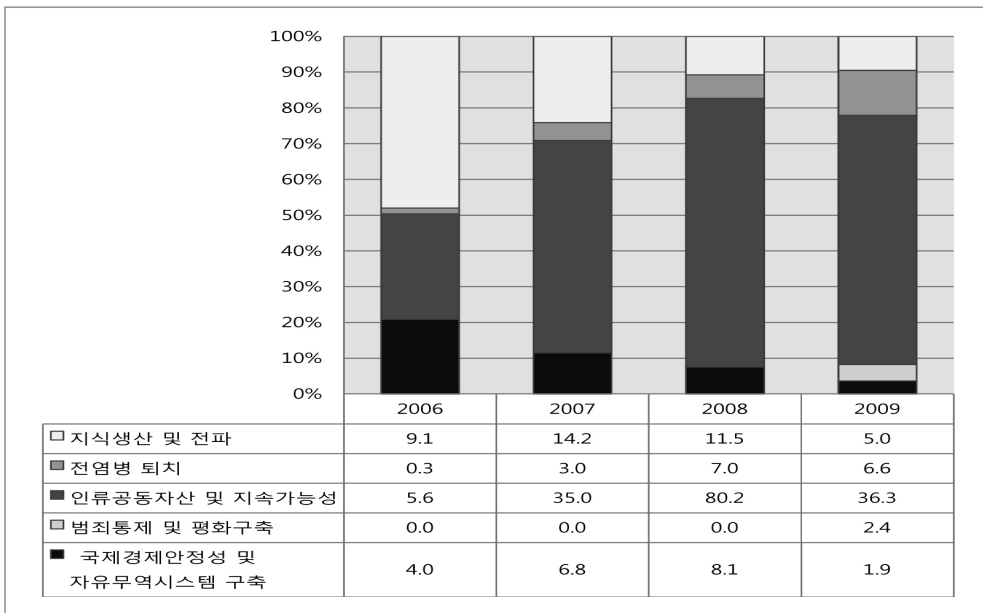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42] 한국 시대별·분야별 글로벌 공공재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주: 약정액 기준

출처: 저자작성

(OECD. Stat Extracts, Creditor Reporting System Full, data extracted on 24 Oct 2011)

[표 42]는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전체 글로벌 공공재 지원액 중에서 세부 섹터별 비율을 표시한 그래프이다. 2006년에는 지원이 제일 많이 이뤄진 분야가 지식생산 및 전파였으나, 2009년에는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분야가 가장 글로벌 공공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의 강조에서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2. 글로벌 공공재 정책 분석

한국은 2010년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2항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록 범지구적 문제는 글로벌 공공재뿐만 아니라 국제 지역 공공재와 같은 다른 종류의 문제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세계적 차원의 문제를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추구해야 할 기본정신에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 2011.7.25 법률 제10919호]

-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 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 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러나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사항이 상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만 간략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과 KOICA의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에도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⁵⁵⁾ 글로벌 공공재와 관

련이 있는 경제, 보건의료, 환경 분야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8대 중점분야⁵⁶⁾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KOICA에서는 보건의 5대 중점지원분야의 하나로, 환경이 범분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비록 중점분야로 선정되었다고는 하나,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특별한 인식 없이, 경제, 보건 등이 하나의 중점분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공공재에 기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글로벌 공공재 정책의 수립 및 도입을 위한 조치가 정책기관과 실행기관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효과적인 면에서 다자원조는 글로벌 공공재 관련 지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다자원조 전략 수립 시 글로벌 공공재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 다자원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 글로벌 공공재 측면에서 다자원조 예산배분 전략 및 우선순위화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담당기관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경우 그 동안은 다자개발협력에 관한 공식적인 정책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⁵⁷⁾ 2010년 12월 제8차 국제개발협력 위원회에 제출한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서 다자원조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주요 다자원조 추진 전략은 국제금융기구 내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과 국가전체의 ODA 전략에 맞게 종합적인 체계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다자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협력적 목표 제시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고려는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 외교부는 동 계획에서 다자원조의 목표 중 하나로 개발 관련 범지구적 문제 대처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⁵⁸⁾ 또한 단순한

55)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2011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양허성 차관(EDCF) 분야’에도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다만 녹색성장 사업을 글로벌 이슈 지원으로 분류하여 강조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1)

56)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선정한 8대 분야는 경제, 보건의료, 인적자원, 행정·ICT, 농어업,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환경이다.

57) 다자원조와 관련하여서도 한국은 분산된 다자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2008년 시행된 OECD DAC의 특별동료평가(Special Review of Korea)에서 다자원조 관련 전략 마련을 권고 받은바 있으며, 별도의 다자지원 전략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정지원 외 2010, pp. 167-168.)

58) 외교부의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다자원조의 목표로 1) 양자원조와 함께 개발협력의 한 축으로서 MDGs 달성에 최우선 순위, 2) 개발관련 범지구적 문제 대처, 3) 인도적 지원과 평화구축노력 강화, 4) 국제기구 정책 수립 및 다자규범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기구 효율성 제고 노력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 4가지를 꼽고 있다.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규재원 지원계획을 같이 제시하여,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이번 계획은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⁵⁹⁾ 그러나 범지구적 개발문제 지원 계획에는 보건,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환경, 인주, 반부패 등 글로벌 공공재와 비글로벌 공공재가 혼재되어 있고,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글로벌 공공재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교부의 범지구적 개발문제에 대한 다자원조 계획이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었는가의 여부도 추후 통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앞장의 분석과 문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공공재의 측면에서 다자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가나 글로벌 공공재와는 관계 없이 자국의 이해관계 등의 반영을 위한 다자원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⁶⁰⁾, 글로벌 공공재 측면의 체계적인 다자원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가 범지구적 개발문제 지원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제고하고, 유·무상을 아우르는 국가차원의 글로벌 공공재 관련 다자지원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9) 외교부는 UN 및 기타 국제기구 정규재원의 38-55%를 범지구적 문제 해결분야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60) 정지원 외 2010 참조.

제7장. 효과적인 글로벌 공공재 정책 도입 및 이행을 위한 과제

1. 국제사회의 과제

효과적인 글로벌 공공재 정책의 도입 및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제로는 먼저, 앞장에서 소개한 분석대상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4가지 사항에 대한 이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 전략 마련과 분석의 기초가 될 글로벌 공공재 관련 통계 구축 및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글로벌 공공재 전담 국제체제 마련

만일 국제사회에 초국가적인 중앙정부가 존재한다면 글로벌 공공재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공급과 수요는 그것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글로벌 거버넌스가 초국가적 정부의 기능을 대체해야 할 것이다. 이미 유엔과 OECD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OECD는 글로벌 공공재에 관한 태스크팀(Task Team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 Global Public Goods)을 창설하여 보고서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현실적으로 초국가적 중앙정부(글로벌 거버넌스) 건립이나 별도의 국제기구 창설은 어려우므로, 기존의 OECD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팀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글로벌 공공재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OECD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 가이드라인의 채택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재원마련 메커니즘 구축

ODA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에까지 효과가 수렴되는 글로벌 공공재를 ODA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공공재의 개념 및 성격, ODA재원 배분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공공재 분야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금융거래세, 탄소세 등의 도입 논의가 진전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국제적 차원의 도입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2012년 9월 국제빈곤퇴치기여금⁶¹⁾의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통한 글로벌 공공재 재원 마련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공적기금 이외에 민간기금 등의 유치 및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별도의 재원이 마련될 경우, 지금까지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및 재정지원은 주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지원이 이루어져 일회성 지원에 끝나는 경우가 많거나, HIV·AIDS와 같은 가시적인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었던 문제점⁶²⁾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OECD와 여타 공여국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별도의 재원을 글로벌 공공재 공급 및 관리에 개별 국가들의 참가를 촉진시키는 인센티브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글로벌 공공재를 모두 아우르는 별도의 재원마련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재원 마련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동시에, 다자지원 또는 글로벌 공공재 각 세부 분야별 글로벌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61) 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및 질병 퇴치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에게 1천원씩 부과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2007년 9월부터 5년 시한으로 부과된 이 기여금으로 지금까지 조성된 재원은 2011년 9월 기준 약 642억 원이다.

62) Reisen et al. 2004, p. 8.

3) 다자원조와 글로벌 펀드를 통한 지원 확대

글로벌 공공재의 특성상 국지적 대응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 관련 지원은 각기 공여국의 개별적 원조 제공으로 인한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기구를 통한 개발협력 사업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앞 장의 분석 결과 많은 국가들이 다자원조를 통한 글로벌 공공재 공급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다자원조 지원 전략 및 정책 수립 시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공공재를 고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가 많았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다자원조 지원 정책 및 전략 수립 시에 글로벌 공공재를 고려하는 정책 심의 방안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다국가 기금으로 특정 목적, 주제 또는 분야에 지원되는 글로벌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전통적인 양자 또는 다자원조의 대상이 다양한 개발 이슈를 포괄하는 반면, 글로벌 펀드의 경우 특정 이슈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수직적인(vertical) 접근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cross-border), 지역간 또는 전지구적인 문제인 국제무역, 금융, 기후변화, 보건과 같은 부문에 있어 글로벌 펀드를 활용한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⁶³⁾ 실제로 세계은행을 비롯한 학자들도 글로벌 펀드가 공공재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형태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⁶⁴⁾

현재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된 대표적인 글로벌 펀드로 GFATM, GEF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12월에 개최된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 선언문에서 글로벌 공공재의 하나인 기후변화 재원에 관한 내용⁶⁵⁾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다만 글로벌 펀드의 경우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다수의 글로벌 펀드 신설 시 원조 조화 및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⁶⁶⁾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63) 글로벌 펀드가 특정 분야에 집중될 경우, 지원이 필요한 다른 분야가 소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64) 정지원 외 2010; Isenman & Shakow 2010.

65) 동 선언문에서 기후변화 재원을 확보하고, 보다 포괄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접근법 전반에서 일관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66) 정지원 외 2010; Isenman & Shakow 2010.

4) 정책일관성 확보

OECD는 개발협력 정책의 정책일관성 확보가 글로벌 공공재 공급 촉진 및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⁶⁷⁾ 전염병, 기후변화 등의 개발협력 정책이 공여국 및 수원국의 개발협력 정책 및 타 분야 정부정책과 일관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전지구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및 문제해결이 가능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 관련 개발협력 정책 또는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서 적용하는 것보다, 현재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글로벌 공공재 세부 분야의 정책의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평가를 이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다.

글로벌 공공재의 특성상 공여국의 개별적, 국지적 접근을 통한 원조가 제공될 경우, 해당 원조 활동은 특정 지역에 단기적인 효과만을 가져왔을 뿐, 지구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의미한 원조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각국 정부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여국 내 개발정책간, 공여국 내 개발정책과 다른 정책 간, 공여국 간의 개발정책 간의 정책일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 세부 분야(지식생산 및 전파,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전염병 퇴치,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정책의 정책일관성을 확보하고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통계 개선

글로벌 공공재 분야에 사용되는 자금만을 별도로 추적하는 통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글로벌 공공재 관련 통계는 글로벌 공공재에 해당하는 CRS코드를 따로 분류하여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각기 개별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과대산정 될 가능성이 있다. 즉, 통계에 잡힌 개발협력 사업이 글로벌 공공재의 공급 및 활용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정확

67) OECD 2010b, p. 2.

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통계상의 문제점은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진행되어 왔던 선행연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러나 통계 개선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글로벌 공공재 정책 도입 및 이행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최근에는 OECD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글로벌 공공재 관련 통계 개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ODA 이외의 재원으로 도 공급되고 있는 글로벌 공공재의 특성과, 전세계적인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특성을 반영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통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의 과제

1) 정책기관

한국 ODA는 현재 관련 정책과 세부 전략이 미비한 것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며, 글로벌 공공재가 주요 ODA 이슈로 고려된다면 다음 사항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가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이 도입 및 논의가 2010년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한국도 지금부터 글로벌 공공재 정책을 마련한다면, 국제적 논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한편, 글로벌 공공재는 다자원조 지원 정책과 정책일관성 이슈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바, 관련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글로벌 공공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문서로 활용하여 한국의 다자지원 전략이나 우선순위 선정 시에 반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가 중요 외교정책 이슈로 판단된다면,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통계 개선, 재정마련,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여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2) 실행기관: KOICA를 중심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기관 및 실행기관 모두 아직 글로벌 공공재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글로벌 공공재 관련 세부 섹터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미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2010년에 글로벌 공공재와 관련되어 KOICA에서 시행된 사업만도 200여건이 넘는다.(2010년 KOICA 시행 전체 사업 목록은 [별첨 1]을 참조)

[표 43] 2010년 KOICA 시행 글로벌 공공재 주요 사업

분야별	국가	사업/건/인원	금액	
			원	달러
국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방글라데시	무역진흥	10,269,445	8,888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베트남	베트남 마약통제 행정역량강화 2차사업(2009~2011 / 239만불)	1,262,419,190	1,092,625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캄보디아	캄보디아 태양열 열병합 발전소 건립사업(2009~2011 / 220만불)	2,130,187,291	1,843,680
	에티오피아	LANA 에티오피아 태양광 지원사업	3,266,732,796	2,827,36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청정식수 공급 및 녹색마을 조성사업	260,440,627	225,412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13,844,644	11,983
	튀니지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숲 식재원인 분석 및 지속가능개발사업	15,330,972	13,269
전염병 퇴치	이라크	이라크 전염병 관리	146,687,198	126,958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전염병 관리 역량강화사업 (2009~2010 / 300만불)	2,186,340,027	1,892,280
	UNDP	HIV/AIDS 퇴치 지원 (2008~2010 / 1,840백만원)	229,800,000	198,892
지식생산 및 전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에너지·환경·천연물질 연구소 건립사업	1,583,887,498	1,370,856

출처: 저작작성(KOICA ODA통계시스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글로벌 공공재 정책의 부재로 인해 해당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시에 글로벌 공공재의 차원에서 기획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즉, 글로벌 공공재적인 관점 없이 국별, 지역별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KOICA도 글로벌 공공재 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지표와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전 사업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고려, 사업간의 정책일관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공공재에는 국별 접근보다 주제별 또는 범분야적 접근이 더 효과적인데, 현재의 CPS 체제에서는 인권, 여성, 환경만이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범분야 이슈의 확대를 통해 CPS 전략 수립단계에서부터 앞서 언급한 글로벌 공공재 지표나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글로벌 공공재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공재의 공급으로 인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수원국내 인프라 시설이나 역량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때, 해당 공공재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다른 분야의 ODA 지원을 동시에 제공해 효과를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8장. 결론

본 연구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범위연구로서 현재까지 축적된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국제적 개발담론, 개발협력 접근법 및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계획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공공재 분야 범위연구로 기획된 연구로 국제사회의 글로벌 공공재 분야 개발협력 접근법 및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 본 후, 글로벌 공공재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OECD DAC 회원국의 글로벌 공공재 정책 및 현황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글로벌 공공재 정책 도입을 및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범위연구의 기획 목표 중 하나인 향후 연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며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정립한 글로벌 공공재 5대 세부 섹터인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전염병 퇴치, 지식 생산 및 전파에서 글로벌 공공재 접근법을 활용한 개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범위연구의 특성상 글로벌 공공재의 세부 섹터별 구체적 정책 제안 및 사업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대 분야 중에서는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의 시각을 반영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예를 들어 공정무역체제 구축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상대적으로 파급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분야 관련 연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식 생산 및 전파 분야는 부산총회에서 다뤄진 지식공유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시의성이 있는 연구 주제로 보인다.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전염병 퇴치 분야의 경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이뤄진 분야이나, 글로벌 공공재의 측면에서 상기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글로벌 공공재의 세부 섹터별 연구와는 별도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다루지 않은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공공재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물 부족, 분쟁 취약국 등의 국제 지역 공공재나 글로벌 도전과제⁶⁸⁾에 해당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도 지구적 차원에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로 타 공여국 및 국제사회에서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글로벌 도전과제로서의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물 부족, 분쟁 취약국 관련 연구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68) 국제 지역 공공재이면서 글로벌 도전과제에 해당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국제 지역 공공재 보다 글로벌 도전과제가 더 포괄적인 상위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3장을 참조.

참고문헌

-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7-1호, 2010.10.25.
- 기획재정부.(2011). 『2011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양허성 차관(EDCF) 분야』. 2011년 2월
-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011~2015년』, 제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8-1호, 2010.12.21.
- 김옥.(1995). 「공공재 이론과 세계정부의 효율성」. 『국제정치논총(國際政治論叢)』 1995년 12월(제35집 1호): 5~26면.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준현.(2005). 「경제적 세계화와 빈곤문제」. 『담론 201』 2004년 가을호(통권 17호): 164~190면. 한국사회역사학회
- 심승진·김진.(2011). 「국제지역공공재의 국가간·세대간 적정 공급과 정책협조」. 『무역학회지(貿易學會誌)』 2011년 6월(제36권 3호): 107~127면. 한국무역학회
- 심승진.(2008). 「국제 지역 공공재의 적정공급과 지역경제협조」. 『무역학회지』 2008년 11월호(통권 79호). 85~109면. 한국무역학회
- 오충현.(2010). 「섹터별 주요이슈: 보건」. 『국제개발협력 실천전략: 일반교육 중급과정』. ODA교육원, 한국국제협력단.
- 윤선영.(2011). 「국제개발협력 신패러다임의 등장과 전개에 관한 연구: 다자협력과 양자협력의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 이상환.(2008). 「전염병과 인간안보, 그리고 국가안보」. 『국제지역연구』 2008년 10월 (제12권 3호): 229~246면.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 이태주.(2011). 원조의 독점 카르텔을 깨라. 『Economy Insight』 2011년 3월 1일 (11호),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
- 임소영.(2011).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기후변화대응 지원」. 『외교정책과 ODA(제2차 KOICA-세종 콜로키엄 결과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세종연구소

- 최영한.(2004).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한 재정학 이론 핵심 총정리: -공공재와 외부성」. 『월간회계』 2004년(12권 11호): 229~238면.
- 정지원·권율·한바란·정지선·박수경·이계우.(2010). 『우리나라 다자원조 추진 전략과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태인.(2009). 「세계금융위기와 G20, 그리고 우리의 미래(2)-1 G20는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금융을 중심으로」. 경향신문,
<http://mojiry.khan.kr/15>.
- 한국국제협력단.(2010). 『KOICA 선진화 계획 2010-2015 - 글로벌 ODA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 2010년 3월
- 황의서.(2011). 「세계화시대 환경의제의 해법 모색」. 『대한정치학회보』 2011년 6월 (19집 1호): 47~61면. 서울: 대한정치학회
- 황준성·윤여협.(2009).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경상논총』 2009년 9월(제27권 3호): 21~45면. 한독경상학회
- AECID.(2009). *2009~2012 The Master Plan of the Spanish Cooperation Main Guidelines*.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Madrid, Spain
- AECID.(2011a). *Economic Growth to Reduce Poverty*. available at
<http://www.aecid.es/en/que-hacemos/crecimiento-economico>.
- AECID.(2011b).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available at
<http://www.aecid.es/en/que-hacemos/medio-ambiente-cambio-climatico/>
- AECID.(n.d.). *AECID brochure NIPO:502-09-058-9*.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Madrid, Spain
- Anand, P. B.(2002). “Financing the Provision of Global Public Goods”. *UN University Discussion paper No. 2002/110*,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and Economic Research (WIDER).
- AusAID.(2006). *Australian Aid: Promoting Growth and Stability*. AusAID, Canberra, Australia.
- AusAID.(2011a). *An Effective Aid Program for Australia Making a real difference-Delivering real results*. AusAID, Canberra, Australia.

- AusAID.(2011b). *Annual Report 2010~2011*. AusAID, Canberra, Australia.
- Austrian Federal Chancellery.(2003). *Federal Act on Development Cooperation(2002), including its Amendment(2003)*. available at <http://www.oeeb.at/en/osn/DownloadCenter/legal-framework/Development-Cooperation-Act.pdf>.
- Barrett, Scott.(2007). "Why Cooperate? The Incentive to Supply Global Public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Belgian Development Agency.(2011). *Annual Report 2010*. Belgian Development Agency(BTC), Brussels, Belgium.
- Belgian Technical Cooperation(BTC).(n.d.). *Belgian Development Cooperation takes up the challenge: 8 Projects of Belgian Technical Cooperation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Belgian Technical Cooperation(BTC), Brussels, Belgium.
- BMZ.(2001). *Poverty Reduction- a Global Responsibility Program of Action 2015 The German Government's Contribution Towards Halving Extreme Poverty Worldwid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ivision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Information, Bonn, Germany.
- BMZ.(2004). *Towards Halving Poverty Second Interim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Action 2015*.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ivision of Development Education and Information, Bonn, Germany.
- BMZ.(2011). *German development policy at a glance*. Bonifatius Druck und Verlag, Paderborn, Germany
- Booth, David.(2011). *Working with the gain and swimming against the tide: Barriers to uptake of research findings on governance and public services in low-income Africa*.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London, the United Kingdom.
- Caballero–Anthony, Mely.(2005). "SARS in Asia: Crisis, Vulnerabilities, and Regional Responses", *Asian Survey*, 45(3), 475~495.

- Cepparulo, Alessandra and Luisa Giuriato.(2009). “Aid Financing of Global Public Goods: an Update”. Department of Economia Punnlica, Sapienza University of Rome, Italy.
- CIDA.(2002). *Canada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A policy statement on strengthening and effectiveness*. CIDA, Quebec, Canada.
- CIDA.(2007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2007~2009*. CIDA, Quebec, Canada.
- CIDA.(2007b). *Notes for a Speech by the Honorable Josee Verner, Minister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Globalization and Economic Solidarity: Seeking a Better Balance for the Opening Luncheon of the Conference of Montreal*, available at <http://www.acdi-cida.gc.ca/acdi-cida/ACDI-CIDA.nsf/eng/ANI-619131>
- CIDA.(2010). *Report to Parliament on the Government of Canad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09~2010*. CIDA, Quebec, Canada.
- CIDA.(2011a). *Report to Parliament on the Government of Canad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10~2011*. CIDA, Quebec, Canada.
- CIDA.(2011b). *2010~2011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CIDA, Quebec, Canada.
- CIDA.(n.d.). *Securing the Future of Children and Youth: CIDA's Children and Youth Strategy*. CIDA, Quebec, Canada.
- CIDA.(n.d.). *Increasing Food Security: CIDA's Food Security Strategy*. CIDA, Quebec, Canada.
- CIDA.(n.d.). *Stimulating Sustainable Economic Growth: CIDA's Sustainable Economic Growth Strategy*. CIDA, Quebec, Canada.
- DFID.(2003). *Strategic Review of Resource Allocation Priorities*. London, the United Kingdom.
- DFID.(2008). *Research Strategy 2008~2013*. London, the United Kingdom.
- DFID.(2009). *Eliminating World Poverty: Building our Common Future*. The Stationery Office(TSO): Norwich, the United Kingdom.
- DFID.(2011a). *Operational Plan 2011~2015*. DFID Global Funds Department, London, the United Kingdom

- DFID.(2011b). *Operational Plan 2011~2015*. DFID Research and Evidence Division. London, the United Kingdom
- Department of State and USAID.(2010). *Leading Through Civilian Power* (The First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able at www.state.gov/qddr
-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FDFA) of Swiss Confederation.(2011). *Information Sheet SDC–SNSF Fund for Research on Global Issues*.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FDFA): Berne, Swiss Confederation.
-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ustria.(2010). *Three–Year Programme on Austrian Development Policy 2010~2012*.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Vienna, Austria.
-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DA.(2011). *Accra Agenda for Action Report on the Austrian Action and Implementation Plan 2009~2011*.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Vienna, Austria.
-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ADA.(2011). Report 2009 Austri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ederal Ministry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Directorate–General for Development Cooperation, Vienna, Austria.
- Government of Ireland.(2006). *White Paper on Irish Aid*.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ublin, Ireland.
-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05). *Government Communication 2005/06:204 – Sweden’s Global Development Policy*.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tockholm, Sweden.

-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06). *Together towards 2015 – Sweden’s Report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006*.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tockholm, Sweden.
-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08). *Global Challenges – Our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on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tockholm, Sweden.
-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10). *Meeting Global Challenges – Government communication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2010*.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Stockholm, Sweden.
-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11a). *Sweden’s policy for global development*. (홈페이지). available at <http://www.sweden.gov.se/sb/d/14232>
- Government Office of Sweden.(2011b). *Global Public Goods*.(홈페이지). available at <http://www.sweden.gov.se/sb/d/158647>
- Harmeling, Sven. (2009). *Global Climate Risk Index 2010*. Germanwatch, Bonn, Germany
- Hewitt, Adrian.(2002). “A Heretical View of Aid for Global Public Goods”.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London, UK..
- Hewitt, Adrian., Oliver Morrissey and Simon Mawell.(2000). “Pro-poor International Public goods”. available at <http://www.odi.org.uk/events/details.asp?id=2227&title>.
- Held, David and Anthony McGrew.(2000). *The Global Transformation Reader*. Polity Press, Cambridge, UK.
- Isenman, Paul and Alexander Shakow.(2010). *Donor Schizophrenia and Aid Effectiveness: The Role of Global Funds*.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IDS) Practice Paper Volume 2010 Number 5. IDS, Brighton UK.
- Italy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1). *Italian Development Cooperation*. available at <http://www.cooperazioneallosviluppo.esteri.it/pdgcs/inglese/intro>.
- International Task Force on Global Public Goods.(2006). *Meeting Global challeng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National Interest*. Final Report. Stockholm, Sweden.

- Kim, Jinhee.(2000). “Revitaliz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 Global Public Goods Approach to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uppl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Kydd, Jonathan and Anne Thomson.(2001). *Global Public Goods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Agencies*. FAO, Rome, Italy.
- Luxembourg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Lux-Development).(n.d.). *Lux-Development brochure*. Luxembourg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Luxembourg.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uropean Affairs, République Française.(2011). *Development Cooperation: a French Vis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European Affairs, Paris, France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inistry of the Economy, Finance and Industry, République Française.(2002). *Global Public Goods*. Paris, France. available at http://www.diplomatie.gouv.fr/en/IMG/pdf/biens_publ_gb.pdf
- Ministry of Foreign Affairs(MOFA) of Japan.(2010).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ite Paper 2010). Tokyo, Japan. available at <http://www.mofa.go.jp/policy/oda/index.html>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2010a). *Freedom from Poverty Freedom to Change: Strategy for Denmark’s Development Cooperati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Copenhagen, Denmark.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2010b). *Priorities of the Danish Government for Danish Development Assistance: Overview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2011~201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Copenhagen, Denmark.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2011). *Priorities of the Danish Government for Danish Development Assistance: Overview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Budget 2012~201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Denmark, Copenhagen, Denmark.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2007). *Development Policy Programme 2007: Towards a Sustainable and Just World Community*. Helsinki, Finland.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Finland.(2011). *Finland's Development Cooperation 2010*. Helsinki, Finland.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0). *Dutch international support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The Hague, The Netherland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1a). *Policy Agenda 2012*. The Hague, The Netherlands. available at <http://www.minbuza.nl/en/appendices/the-ministry/policy-agenda-2012.html>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1b). *Result in Development 2009~2010*. Vandejoing, Amsterdam.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1c). *Letter to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presenting the spearheads of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The Hague, The Netherlands. available at <http://www.minbuza.nl/en/appendices/news/newsflashes/2011/04/senate-approves-development-budget/letter-to-the-house-of-representatives-presenting-the-spearheads-of-development-cooperation-policy.html>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Netherlands.(2011d). *Letter to parliament of 10 June 2011 from the Minister for Europea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and Asylum Policy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development*. The Hague, The Netherlands.
- Morrissey, Oliver., Dirk Willem te Velde and Adrian Hewitt.(2002). "Defining international public goods: Conceptual issues" in Marco Feroni and Ashoka Mody(eds) *International Public Goods: Incentives, Measurement, and Financing*. World Bank and Kluwer Academic Publishers,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0). *Currents: The Year in Review*.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Wellington, New Zealand.

-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11).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Statement: Supporting Sustainable Development*. Wellington, New Zealand.
-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08a). *Climate, Conflict and Capital: Norwegian Development Policy Adapting to Change, No. 13*.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slo, Norway.
-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08b). *Norwegian Development Assistance in 2008 – Priority Areas*.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slo, Norway
-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09). *A more ambitious Norwegian development policy*.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slo, Norway
-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1a). Meld, St, 14(2010~2011) Towards greener development.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slo, Norway
-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11b). *Towards greener development: A coherent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policy*. Norweg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slo, Norway
- OECD DAC.(2008). *Special Review of Korea*. OECD, Paris.
- OECD DAC.(2010a). *DAC Report on Multilateral Aid*. DCD/DAC(2010)32/FINAL. OECD, Paris.
- OECD DAC. (2010b). *Task Team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 Global Public Goods(TT1)*. DCD/DAC(2010)5. OECD, Paris.
-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2011a). *Fact Sheet: U.S. Global Development Policy*(2010). Washington D.C.,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able at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0/09/22/fact-sheet-us-global-development-policy>

-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2011b). *President Obama's Development Policy and the Global Climate Change Initiative*. Available at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Climate_Fact_Sheet.pdf
-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2011c). *President Obama's Development Policy and Global Food Security*. Available at <http://www.whitehouse.gov>
-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White House.(2011d). *President Obama's Global Development Policy and the Global Health Initiative*. Available at <http://www.usaid.gov/ghi/factsheet.html>.
- Raffer, Kunibert.(1999). "ODA and Global Public Goods: A Trend Analysis of Past and Present Spending Patterns". Office of Development Studies, New York,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Reisen, Helmut., Marcelo Soto and Thomas Weithoner.(2004). *Financing Global and Regional Public Goods through ODA: Analysis and Evidence from The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Head of Publication Service, OECD, Paris, France.
- Sagasti, Francisco and Bezanson, Keith.(2001). "Financing and Providing Global Public Goods: Expectations and Prospects". Report prepared on behalf of th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Sweden, Stockholm.
- Sagasti, Francisco.(2005).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Background, context, issues and prospects*. 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CIGI), Waterloo, Canada.
- Sandler, Todd M.(2001). "On financing global and international public good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2638., World Bank,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vailable at <http://ssrn.com/abstract=632706>
- Schelling, Thomas C.(2002), "What Makes Greenhouse Sense?". *Foreign Affairs*. University of Cambridge, 81(3) May~June.

- SDC and SECO.(2011a). *Annual Report 2010: Switzerland's International Cooperation*.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FDEA): Berne, Swiss Confederation.
- SDC and SECO.(2011b). *Statics 2010: Switzerland's International Cooperation*.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FDEA): Berne, Swiss Confederation.
- SDC.(2011). *Questions and answers regarding development policy*.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erne, Swiss Confederation.
- SDC.(n.d). *Global public goods and development cooperation*. Available at http://www.deza.admin.ch/ressources/resource_en_24330.pdf
- SECO.(2010). *Globalization and Global Issues: The Contribution of SECO*. Federal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FDEA): Berne, Swiss Confederation.
- Speight, Melanie. (2002), "How Much Should DFID Allocate to Global Actions and Funding?",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London, UK.
- te Velde, Dirk Willem., Oliver Morrissey and Adiran Hewitt.(2002). "Allocating Aid to International Public Goods" in Marco Feroni and Ashoka Mody(eds) *International Public Goods: Incentives, Measurement, and Financing*. World Bank and Kluwer Academic Publishers,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UN.(2001). Letter dated 25 June 2001 from the Secretary-General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Fifty-Fifth session Agenda item 101 High-level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consideration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United Nation, New York.
- USAID.(2011a). *USAID and the President's Global Development Policy*. Available at <http://www.usaid.gov/unga/ppd/html>
- USAID.(2011b). *USAID and the President's Global Development Policy*.(홈페이지). Available at <http://www.usaid.gov/policy/>
- USAID.(2011c). *USAID POLICY FRAMEWORK 2011~2015*.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World Bank.(2001). “Effective Use of Development Finance for International Public Goods”. *Global Development Finance: Building Coalition for Effective Development Finance*. World Bank,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World Bank.(2008). *Global Program Funds at Country Level: What Have We Learned?* World Bank, Washington, DC,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별첨

별첨 1. 글로벌 공공재 관련 CRS 코드

글로벌 공공재 분야	CRS 코드	분야	상세 설명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24010	금융 정책 및 행정 관리	금융 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금융 시장과 시스템
	24020	중앙금융기관	중앙은행
	33110	통상정책, 행정 관리	통상 정책과 계획; 통상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에 대한 지원; 통상관 관련된 법률 및 규제 개혁; 정책 분석과 다자 통상 협정 이행(무역 기술 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지역 수준이면 33130 사용); 국가 개발 전략에서의 무역 주류화(예: 빈곤 퇴치 전략 연구논문); 도소매 무역; 통상과 무역 촉진과 관련된 비특정 활동
	33140	다자간 무역협상	개발도상국의 다자 무역 협상의 효율적인 참여에 대한 지원 (협상이 교육, 협상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 포함); 세계무역기구(WTO) 및 기타 다자 무역 관련 기구 가입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16063	마약 관리	경찰 대상 훈련 등을 포함한 국내외 마약통제; 마약 운반 및 배포를 제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식 캠페인
	31165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	대체 농업 소득원을 통한 불법 마약 재배 감소 프로젝트 (농업 외의 대체 소득원 개발은 43050 해당)
	43050	비농업분야 마약대체 개발	농업 외의 대체 소득원 또는 사회적 물리적 인프라를 통한 불법 마약 재배 감소 프로젝트 (대체 농업 개발은 31165 사용)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23030	전력 생산 / 재생가능 자원 사용	정책, 계획 및 개발 프로그램; 조사와 장려 (장작, 숯 생산은 31261에 해당함)
	23065	수력 발전소	전력 생산하는 강의 바지선 포함
	23066	지열 발전소	
	23067	태양 에너지	태양광전지; 태양열 시스템과 태양열 난방
	23068	풍력 발전	발전과 양수를 위한 풍력에너지
	23069	조력 발전	해양 온도차 발전; 조력과 파력 에너지
	23070	생물자원 에너지	전략생산을 위한 고밀도 기술과 생물자원 (생물가스, 사탕수수 또는 기타 식물 잔재에서 얻어낸 가스, 혐기성 분해 포함)
	31210	임업 정책 / 행정 / 관리	임업 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삼림조사; 임업과 식림업 관련 비특정 활동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31220	임업 개발	산업소비와 농촌소비를 위한 조림; 개발과 활용; 침식과 사막화 관리; 통합적 임업 프로젝트
	31310	어업 정책 / 행정 / 관리	어업 분야 정책, 계획 및 프로그램; 관련기관 역량강화 및 조언; 심해와 해안 어업; 해수어와 담수어 조사 및 관찰; 어선 / 장비; 어업과 관련된 비 특정 활동
	31320	어업 개발	어업개발과 활용; 어종 보호; 수산양식; 통합적 어업 프로젝트
	41010	환경 정책 / 행정 / 관리	환경정책, 법, 규정과 경제 기구; 행정 제도 및 관습; 환경적 토지 이용 계획과 의사결정과정; 세미나와 미팅; 기타 보존과 보호 방법
	41020	생물권역 보호	공기오염 통제; 오존층 보호; 해양오염 통제
	41030	생물 다양성	주변 지역의 자연 보존 활동; 멸종위기의 종과 그들의 서식지 보호(예: 습지대 보호)
	41040	자연문화유산 보호	특별 문화 유산 보호(역사적, 고고학적, 미학적, 과학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장소나 대상 포함)
전염병 퇴치	12250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 전염병과 기생충에 의한 병의 예방 및 관리; 설사병, 매개체 질병(예: 사상충증과 기니벌레), 바이러스성 질병, 사상균병, 기생충병, 동물원성 감염증, 이 기생충, 기타 세균 및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등(말라리아 12262, 결핵 12263, 에이즈와 기타 성병 13040 코드에 해당함)
	13040	성병 대책 (HIV / AIDS 포함)	성병과 에이즈 관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 (예: 정보, 교육, 교환 활동, 검사, 예방, 치료, 간호 등)
지식생산 및 전파	11182	교육 연구	교육의 효과성과 연관성, 교육의 질에 관한 연구; 조직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12182	의료 연구	일반적인 의료 연구(기초 보건 연구 제외)
	16062	통계능력 강화	통계청 또는 기타 정부부처의 통계 능력 강화
	23082	에너지 연구	일반적인 천연자원조사
	31182	농업 연구	식물육종, 생리학, 유전자원, 생태학, 분류학, 병충해 관리, 농업 생물 공학; 축산 연구(동물건강, 사육 및 유전, 영양, 생리)
	31282	임업 연구	인공 재생; 유전자 개량; 생산방법; 비료; 수확
	31382	어업 연구	시험적 수산 양식; 해수 / 담수 생물학 연구
	32182	기술연구 개발	산업 표준; 품질 관리; 도량형학; 검사; 인가; 보증
	41082	환경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천연자원 목록, 특정분야에 속하지 않는 환경적 분석표과 영향력 연구
	43082	연구/ 과학기관	분야가 정해지지 않을 시
	15153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유통	공공의제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검열 없는) 흐름을 지원하는 활동; 편집 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 인쇄 및 방송 미디어의 정직함을 강화시키는 활동(예: 저널리스트 대상 교육) (미디어에 대한 장비지원이나 자금지원은 22010-22040 코드 사용)

출처: 저자작성

별첨 2. KOICA 2010년도 글로벌 공공재 사업

글로벌 공공재 분야별	CRS 코드	사업형태	국가	사업/건/인원	금액	
					원	달러
국제안정성 및 자유무역 시스템 구축	금융 정책 및 행정 관리 (24010)	전문가	인도네시아	금융정책 및 행정관리	30,571,960	26,460
		연수생 초청	라오스	라오스 증권거래 시스템 지원	84,116,162	72,803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증권거래시스템 운용 지원	73,804,958	63,878
	통상 정책 / 행정 / 관리 (33110)	연수생 초청	방글라데시	아시아 특별연수 - 국제통상과 WTO	10,788,459	9,337
				무역진흥	10,269,445	8,888
			캄보디아	아시아 특별연수 - 국제통상과 WTO	7,901,223	6,839
			중국	아시아 특별연수 - 국제통상과 WTO	7,235,694	6,262
			미얀마	아시아 특별연수 - 국제통상과 WTO	9,644,707	8,348
			네팔	아시아 특별연수 - 국제통상과 WTO	12,404,888	10,736
			라오스	아시아 특별연수 - 국제통상과 WTO	9,603,616	8,312
			파키스탄	파키스탄 무역 진흥	66,101,069	57,210
			스리랑카	스리랑카 무역 진흥	74,468,593	64,453
			베트남	아시아 특별연수 - 국제통상과 WTO	7,826,351	6,774
			코트디부아르	무역진흥	12,743,246	11,029
			온두라스	무역진흥	7,748,310	6,706
			이집트	무역진흥	9,579,715	8,291
			가나	무역진흥	6,770,688	5,860
			케냐	무역진흥	12,910,889	11,174
			세네갈	무역진흥	7,636,380	6,609
			탄자니아	무역진흥	6,777,999	5,866
			콩고 민주공화국	무역진흥	12,938,871	11,199
		전문가	에콰도르	수출진흥	34,505,140	29,864

국제안정성 및 자유무역 시스템 구축	통상 정책 / 행정 / 관리 (33110)	연수생 초청	파라과이	무역진흥	7,740,747	6,700
			파푸아뉴기니	무역진흥	12,627,787	10,929
		프로젝트- 일반사업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사업	412,698,913	357,191
	다자간 무역 협상 (33140)	연수생 초청	아프가니스탄	COLOMBO PLAN 공동연수 - 국제무역과 WTO	6,159,874	5,331
			방글라데시	COLOMBO PLAN 공동연수 - 국제무역과 WTO	3,079,937	2,666
			캄보디아	한신 공동연수(10~12) - 무역투자정책과 FTA 추진 전략	9,878,573	8,550
			인도	COLOMBO PLAN 공동연수 - 국제무역과 WTO	3,079,937	2,666
			인도네시아	COLOMBO PLAN 공동연수 - 국제무역과 WTO	3,079,937	2,666
			라오스	COLOMBO PLAN 공동연수 - 국제무역과 WTO	3,079,937	2,666
				한신 공동연수(10~12) - 무역투자정책과 FTA 추진 전략	7,408,929	6,412
			말레이시아	COLOMBO PLAN 공동연수 - 국제무역과 WTO	3,079,937	2,666
			몰디브	COLOMBO PLAN 공동연수 - 국제무역과 WTO	3,079,937	2,666
			몽골	한신 공동연수(10~12) - 무역투자정책과 FTA 추진 전략	2,469,643	2,137
			파키스탄	COLOMBO PLAN 공동연수 - 국제무역과 WTO	6,159,874	5,331
			스리랑카	COLOMBO PLAN 공동연수 - 국제무역과 WTO	3,079,937	2,666
				한신 공동연수(10~12) - 무역투자정책과 FTA 추진 전략	14,817,859	12,825
			베트남	COLOMBO PLAN 공동연수 - 국제무역과 WTO	3,079,937	2,666
				한신 공동연수(10~12) - 무역투자정책과 FTA 추진 전략	7,408,929	6,412
			이란	COLOMBO PLAN 공동연수 - 국제무역과 WTO	3,079,937	2,666
			르완다	한신 공동연수(10~12) - 무역투자정책과 FTA 추진 전략	2,469,643	2,137
			피지	COLOMBO PLAN 공동연수 - 국제무역과 WTO	3,079,937	2,666
범죄통제 및 평화구축	마약 관리 (16063)	프로젝트- 일반사업	베트남	베트남 마약통제 행정역량강화 2차사업(09~11/239만불)	1,262,419,190	1,092,625
인류공동 자산 및 지속가능성	전력 생산 / 재생가능 자원 사용 (23030)	프로젝트- 일반사업	필리핀	필리핀 보홀지역 조류 바이오 에탄올 연구센터 건립사업 (‘09~’11/290만불)	30,664,914	26,541

인류공동 자산 및 지속가능성	수력 발전소 (23065)	연수생 초청	이라크	이라크 중앙 수력발전 계획 수립 및 운영	108,115,282	93,574
		프로젝트- 일반사업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흐름식 수력발전소 타당성조사 및 설치사업 (‘09~’11/280만불)	2,517,730,108	2,179,098
	태양 에너지 (23067)	프로젝트- 일반사업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태양광 관개시설 펌프 및 태양광 흡시스템 개발사업 (‘09~’11/250만불)	2,416,899,621	2,091,829
		연수생 초청		방글라데시 태양광 에너지 활용기술	178,012,096	154,070
		프로젝트- 일반사업	캄보디아	캄보디아 태양열 열병합 발전소 건립사업(‘09~’11/220만불)	2,130,187,291	1,843,680
		NGO	동티모르	커뮤니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자족형 태양광 에너지 공급사업	165,379,798	143,136
		프로젝트- 일반사업	몽골	몽골 바룬우트시 난방 및 온수공급시스템 구축사업 (‘09~’11/500만불)	4,523,094,841	3,914,744
			스리랑카	스리랑카 500k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09~’10/300만불)	2,955,122,240	2,557,662
			지부티	지부티 태양열 발전설비 지원 사업(‘10-11/100만불)	302,157,973	261,518
			에티오피아	LANA 에티오피아 태양광 지원사업	3,266,732,796	2,827,361
			에콰도르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	39,172,568	33,904
			피지	피지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09~’12/200만불)	1,809,266,414	1,565,922
		NGO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청정식수 공급 및 녹색마을 조성사업(대구도시가스)	260,440,627	225,412
	생물자원 에너지 (23070)	프로젝트- 일반사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팜오일 폐잔재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및 부산물 생산사업(‘09~’10/250만불)	1,726,401,242	1,494,202
				인도네시아 한-인니 산림바이오매스 개발모델 협력사업 (‘09~’11/400만불)	4,028,166,036	3,486,382
	임업 정책 / 행정 / 관리 (31210)	연수생 초청	캄보디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12,869,833	11,139
		프로젝트- 일반사업	중국	내몽고 바안누르시 우란부허사막 확산 방지 및 생태복원사업	54,998,543	47,601

인류공동 자산 및 지속가능성	임업 정책 / 행정 / 관리 (31210)	연수생 초청	중국	중국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산림관리	50,163,553	43,417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13,844,644	11,983
			몽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4,571,672	3,957
		프로젝트- 일반사업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산림녹화(양곤 북부 바간 양후 지역)	291,665,613	252,437
		연수생 초청	미얀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15,792,677	13,669
			필리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12,923,907	11,186
			에콰도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9,044,745	7,828
			아이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16,104,652	13,939
			페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16,908,429	14,634
	임업 개발 (31220)	프로젝트- 일반사업	중국	중국 섬서성 옌안시 우치현 사막화퇴치사업	771,443,827	667,686
		NGO	중국	중국 서북부지역 황사·사막화방지 “한중우호녹색생태원” 조성시범 사업	91,154,219	78,894
		프로젝트- 일반사업	인도네시아	열대림 임목종자 관리 및 개발(보고르 롬핀, 소텍)	25,544,112	22,108
		프로젝트- 일반사업	몽골	몽골 바얀누르 지역 조림 및 수자원 개발사업('09~'11/150만불)	1,568,457,272	1,357,502
		연수생 초청		몽골 산림 및 사막화 방지	59,779,355	51,739
		NGO		몽골 바양노르습 사막화·황사방지를 위한 조림사업	91,154,219	78,894
		프로젝트- 일반사업	필리핀	필리핀 목재펠릿가공 및 지속적인 상업조림지 조성사업	4,809,042,581	4,162,232
	어업 정책/ 행정/ 관리 (31310)	연수생 초청	알제리	알제리 수산정책 수립 역량강화	153,069,901	132,482
			앙골라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	17,233,708	14,916
			카메룬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	19,162,985	16,586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	34,728,585	30,058
			가봉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	18,072,929	15,642
			가나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	34,728,837	30,058

인류공동 자산 및 지속가능성	어업 정책/ 행정/ 관리 (31310)	연수생 초청	케냐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	34,931,269	30,233
			모로코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	16,249,152	14,064
			나미비아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	17,335,678	15,004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	35,105,967	30,384
			세네갈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	38,561,676	33,375
			수단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	33,098,036	28,646
			탄자니아	아프리카 수산기술정책	35,049,498	30,335
	어업 개발 (31320)	연수생 초청	방글라데시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16,600,029	14,367
			캄보디아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20,880,400	18,072
			파키스탄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16,594,231	14,362
			필리핀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13,871,613	12,006
		프로젝트- 일반사업	알제리	알제리 보리새우양식장 건설 및 기술이전사업	1,062,556,116	919,644
				알제리 사하라사막 새우양식센터 건립 및 양식기술 이전사업 (2010-2014/600만불)	813,679,781	704,241
		연수생 초청	세네갈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22,489,961	19,465
			수단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16,742,463	14,491
			도미니카공화국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17,923,651	15,513
			페루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21,752,333	18,827
			투르크메니스탄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8,942,099	7,739
			아이티	수산물 가공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9,130,035	7,902
			파푸아뉴기니	환경보호정책	7,211,947	6,242
	환경정책 / 행정 / 관리 (41010)	연수생 초청	캄보디아	한성공동연수(10~12) -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관리(심층)	2,914,230	2,522
			중국	중국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관리	138,275,366	119,678
			인도	SAARC 특별연수 - 환경영향평가	5,706,630	4,939
			아프가니스탄	SAARC 특별연수 - 환경영향평가	13,225,061	11,446

인류공동 자산 및 지속가능성	환경정책 / 행정 / 관리 (41010)	연수생 초청	방글라데시	환경보호정책	11,087,829	9,597
				한싱공동연수(10~12) -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관리(심측)	1,942,820	1,682
			부탄	SAARC 특별연수 - 환경영향평가	16,438,760	14,228
			인도네시아	저탄소 녹색성장	13,266,100	11,482
			동티모르	환경보호정책	5,512,264	4,771
			라오스	한싱공동연수(10~12) -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관리(심측)	4,857,051	4,204
			몰디브	SAARC 특별연수 - 환경영향평가	12,475,081	10,797
		프로젝트- 일반사업	몽골	몽골 광해실태조사 및 광해정보화구축사업	4,600,721,894	3,981,930
		연수생 초청	몽골	저탄소 녹색성장	6,333,561	5,482
			미얀마	환경보호정책	13,432,911	11,626
			네팔	SAARC 특별연수 - 환경영향평가	14,480,239	12,533
			파키스탄	SAARC 특별연수 - 환경영향평가	13,059,940	11,303
			필리핀	환경보호정책	4,796,127	4,151
				한싱공동연수(10~12) -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관리(심측)	2,914,230	2,522
		프로젝트- 일반사업	스리랑카	통신해양기상위성 수신분석 시스템 개발사업	2,576,404,260	2,229,881
		연수생 초청	스리랑카	한싱공동연수(10~12) -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관리(심측)	1,942,820	1,682
				SAARC 특별연수 - 환경영향평가	12,096,687	10,470
			베트남	베트남 환경관리	71,736,895	62,088
				환경보호정책	9,724,099	8,416
				저탄소 녹색성장	13,021,818	11,270
				한싱공동연수(10~12) -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관리(심측)	2,914,243	2,522
			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7,595,798	6,574
			요르단	저탄소 녹색성장	7,473,907	6,469
			카메룬	아프리카 특별연수(불어권) - 환경보호정책	26,952,229	23,327
			코트디부아르	환경보호정책	14,349,778	12,420
				아프리카 특별연수(불어권) - 환경보호정책	18,433,267	15,954

인류공동 자산 및 지속가능성	환경정책 / 행정 / 관리 (41010)	연수생 초청	이집트	환경보호정책	13,090,239	11,330
				저탄소 녹색성장	15,116,598	13,083
			케냐	저탄소 녹색성장	17,194,735	14,882
			모로코	아프리카 특별연수(불어권) - 환경보호정책	24,219,023	20,962
			튀니지	환경보호정책	6,320,415	5,470
				저탄소 녹색성장	14,222,543	12,310
			우간다	환경보호정책	14,154,657	12,251
				저탄소 녹색성장	16,931,549	14,654
			에콰도르	환경보호정책	31,586,406	27,338
			피지	저탄소 녹색성장	14,407,583	12,470
			파푸아뉴기니	저탄소 녹색성장	8,629,005	7,468
			세네갈	아프리카 특별연수(불어권)-환경보호정책	28,429,628	24,606
			캄보디아	한일공동연수 - 대기오염방지기술	9,993,530	8,649
	생물권역 보호 (41020)	연수생 초청	중국	한일공동연수 - 대기오염방지기술	4,740,385	4,103
			인도네시아	한일공동연수 - 대기오염방지기술	10,256,969	8,877
			라오스	한일공동연수 - 대기오염방지기술	14,228,966	12,315
			몽골	한일공동연수 - 대기오염방지기술	10,581,162	9,158
			미얀마	한일공동연수 - 대기오염방지기술	7,404,392	6,409
			필리핀	한일공동연수 - 대기오염방지기술	11,181,903	9,678
		개발조사- 일반사업	베트남	베트남 호치민시 간선급행버스(BRT)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사업 ('09~'11/200만불)	1,887,691,522	1,633,799
		연수생 초청	베트남	한일공동연수 - 대기오염방지기술	10,796,198	9,344
			튀니지	대기오염 모니터링 능력강화(튀니스시 외)	32,600,096	28,215
	생물 다양성 (41030)	프로젝트- 일반사업	튀니지	튀니지 코르크 참나무숲 쇠퇴원인 분석 및 지속가능개발사업	15,330,972	13,269
전염병 퇴치	전염병 관리 (12250)	프로젝트- 일반사업	네팔	네팔 티미시지역 보건의료지원사업	65,110,157	56,353
		NGO	이라크	이라크 전염병 관리	146,687,198	126,958

전염병 퇴치	전염병 관리 (12250)	연수생 초청	니제르	니제르 뇌수막염 감시 및 퇴치역량강화/국제빈곤퇴치기여금	1,139,105,596	985,897
		프로젝트- 일반사업	수단	수단 주혈흡충증 퇴치사업/국제빈곤퇴치기여금	744,711,276	644,548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전염병 관리 역량강화사업(2009-2010/300만불)	2,186,340,027	1,892,280
			IVI국제 백신연구소	IVI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발열성 질병 관리사업(2009-2010/미정)	341,850,000	295,872
	성병 대책 (HIV / AIDS 포함) (13040)	국제기구 협력사업	UNDP유엔 개발계획	UNDP 콩고 HIV/AIDS 퇴치사업	229,800,000	198,892
			UNDP유엔 개발계획	HIV/AIDS 퇴치 지원('08-'10/1,840백만원)	229,800,000	198,892
			IPPF국제 가족계획연맹	IPPF 카메룬 HIV/AIDS 보건자 성생식보건 향상 및 감염방지사업 (2009-2010/14.6만불)	84,088,700	72,779
지식생산 및 전파	의료 연구 (12182)	연수생 초청	캄보디아	전통의학의 현대화	10,497,225	9,085
			파키스탄	전통의학의 현대화	14,369,897	12,437
			필리핀	전통의학의 현대화	5,459,615	4,725
			스리랑카	전통의학의 현대화	6,142,034	5,316
			베트남	전통의학의 현대화	5,580,494	4,830
			에티오피아	전통의학의 현대화	14,561,741	12,603
			나이지리아	전통의학의 현대화	15,291,176	13,235
			과테말라	전통의학의 현대화	15,091,895	13,062
			카자흐스탄	전통의학의 현대화	12,086,175	10,461
	통계능력 강화 (16062)	연수생 초청	캄보디아	통계기법	9,574,552	8,287
			인도네시아	통계기법	10,060,363	8,707
			이라크	이라크 KRG 기본공식통계 능력 배양	103,512,620	89,590
			팔레스타인	통계기법	11,665,649	10,097
			이집트	통계기법	11,436,243	9,898
			세네갈	통계기법	7,988,407	6,914
			수단	통계기법	6,003,618	5,196

지식생산 및 전파	통계능력 강화 (16062)	연수생 초청	탄자니아	통계기법	14,221,633	12,309
			자메이카	통계기법	15,873,456	13,738
			카자흐스탄	통계기법	12,015,556	10,399
	에너지 연구 (23082)	연수생 초청	몽골	몽골 자원 및 에너지 개발	78,615,752	68,042
			탄자니아	탄자니아 에너지개발	121,715,734	105,345
	농업 연구 (31182)	연수생 초청	캄보디아	ASEAN 농업유전자원 관리	15,256,507	13,205
			인도네시아	ASEAN 농업유전자원 관리	10,167,979	8,800
			라오스	ASEAN 농업유전자원 관리	11,579,707	10,022
			말레이시아	ASEAN 농업유전자원 관리	9,940,338	8,603
		프로젝트- 일반사업	미얀마	미얀마 농업관계기술센터 역량강화사업	511,220,178	442,462
			미얀마	ASEAN 농업유전자원 관리	11,644,496	10,078
			필리핀	ASEAN 농업유전자원 관리	9,402,873	8,138
			태국	ASEAN 농업유전자원 관리	9,397,075	8,133
			베트남	ASEAN 농업유전자원 관리	9,628,624	8,334
	어업 연구 (31382)	프로젝트- 일반사업	중국	중국 황해유입물 오염측정 및 통제연구 사업	22,857,416	19,783
	기술연구 개발 (32182)	연수생 초청	캄보디아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능력 배양	8,570,702	7,418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기술	10,740,980	9,296
			몽골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기술	5,066,338	4,385
			베트남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기술	10,920,219	9,451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능력 배양	9,034,553	7,819
			이라크	이라크 표준화 및 품질평가 능력 재고	106,686,557	92,337
			요르단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기술	12,271,822	10,621
			팔레스타인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기술	12,281,780	10,630
			에티오피아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기술	14,345,424	12,416
			케냐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능력 배양	13,282,849	11,496

지식생산 및 전파	기술연구 개발 (32182)	연수생 초청	나이지리아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능력 배양	13,557,629	11,734
			에콰도르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기술	9,795,375	8,478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능력 배양	18,440,699	15,960
			파라과이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능력 배양	16,618,810	14,384
			페루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능력 배양	16,334,700	14,138
			아제르바이잔	국가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능력 배양	10,703,167	9,264
			카자흐스탄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기술	11,709,022	10,134
			우즈베키스탄	국가표준제도 및 정밀측정기술	12,022,375	10,405
	환경 연구 (41082)	프로젝트- 일반사업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에너지·환경·천연물질 연구소 건립사업	1,583,887,498	1,370,856
		NGO 봉사단	인도네시아		15,152,459	13,114
		해외 봉사단	몽골		33,752,138	29,213
		해외 봉사단	네팔		34,491,134	29,852
			라오스		24,568,411	21,264
			르완다		26,958,289	23,332
			세네갈		36,233,444	31,360
			탄자니아		29,609,844	25,627
			튀니지		26,032,135	22,531
					38,068,573	32,948
		협력요원	페루		7,033,299	6,087
		해외 봉사단	페루		28,133,198	24,349
			페루		2,344,433	2,029
	연구 / 과학 기관	해외 봉사단	몽골	공공행정	37,903,866	32,806
			요르단	공공행정	36,834,547	31,880

출처: 저자작성(KOICA ODA통계시스템)

연구자료 ODA연구 2012-04-058

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발행 2012년 3월
발행인 박대원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편집인 ODA연구실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우 : 461-833)
전화 031) 740-0493
팩스 031) 740-0681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인쇄 동화인쇄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8-89-6469-102-1 93330

